

SGRA포럼 개요

제 4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예고집》

‘동아시아’의 탄생: - 19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

일 시: 2020년 1월 8일 (수)~12일 (일)

장 소: 필리핀 알라방시 벨레뷰 호텔, 필리핀 대학 로스 바뇨스 캠퍼스

주 최

아쓰미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연구회 (SGRA)

공 최

과학연구비신영역연구 ‘화해학의 창성’
와세다대학 동아시아 국제관계연구소
필리핀대학 로스 바뇨스 캠퍼스





■ 포럼의 취지

19 세기 이전의 동아시아는 지역 내 각 나라의 관계가 비교적 밀접하지 않아, 각 나라가 개별적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 국가들이 글로벌화의 움직임을 북태평양까지 가지고 오자, 한·중·일은 정치·경제·통신, 모든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상상력이 만들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국내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서양이 상업에 대한 강한 관심과 새로운 교통·통신·군사기술을 지니고 이 지역에 다시 나타났을 때, 조선·중국·일본은 서양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리고 이 인식은 전통적인 지(知)의 체계와 어떻게 뒤엎었던 것일까.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양학(洋學)이 학교 교육의 주축으로 자리잡게 된 한편, 천황을 질서의 핵심에 두고, 가족 내에서는 유교적인 남성우위관이 일반화되었다. 이와 같은 서양에 대한 반발과 동경심의 구성형태는 나라별로 달랐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차이를 낳게 되었다.

서양의 진출은 각국의 자기 방위를 재촉하였고, 결과적으로 각국을 “국민국가”로 변화시켰다. 속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국경을 명확화하고 내부의 단결을 촉진하는 내셔널리즘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서양이 도입한 해운망은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유인해내기도 하였다. 중국으로부터는 대량의 노동자가 동남아시아와 미대륙으로 향했고,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나 일본에서도 이민자가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 조선의 경우 이민자는 적었으나, 외국 유학생이나 정치적 망명자가 출현하여, 이윽고 나라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국경을 넘는 이민·유학·망명의 교착은 이후 동아시아의 질서를 국제관계와 국내질서의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불러왔고, 20 세기의 대변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거론하여, 3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 국의 사정을 비교하고 토론할 것이며, 이를 통해 19 세기 동아시아 세계에서 일어난 대전환의 전체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원탁회의의 강연록은 3 개 국어의 SGRA 레포트로 발행하고, SGRA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 포럼의 경위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2015 년 7 월, 제 49 회 SGRA (세키구지 글로벌 연구회) 포럼을 개최하면서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知的 공유공간” 혹은 “知的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만들어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것의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 년 9 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 1 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 개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 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화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찾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미타니 히로시 교수 (동경대학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 (북단대학 교수), 조광 교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세 나라의 여러 “국사” 연구에서 동아시아의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 2 회 대화에서는 자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고침략과 13 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년 8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 명의 국사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발표를 행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행해졌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연구는,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한다면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 주었다.

제 3 회 대화에서는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 년 8 월, 한국·일본·중국에서 9 명의 국사연구자가 서울에서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에 의한 조선침공과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하는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의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3 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면서 다음 단계로 이어가기 위해, 와세다대학이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이라는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다. 본 원탁회의는 2016 년부터 매년 1 회, 총 5 회 개최될 예정이다. 남은 2 회는 근현대사를 테마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3 개 국어로 만들어진 레포트 발간 및 배포, 연속 에세이 매거진 발간 등을 통해, 원탁회의 참가자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 메일 매거진 백넘버는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okushinewsletter.tumblr.com/>

Program & Contents

1월 9일(목)

9 : 00~10 : 30 제1세션: 개회 [사회: 리 엔민(李 恩民, 오비린대학)]

	발표자	소속	주제	
개회 인사	조 광	국사편찬위원회	제4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인사말	p 3
환영 인사	F. 마끼또	필리핀대학 로스파뇨스교	19세기의 필리핀: 마닐라 갤리언 무역을 중심으로	p 5
기조 강연	미타니 히로시	아토미학원여자대학	‘아시아’의 발명: 19세기 리전(region)의 생성	p 9
코멘트	송 지용	남개대학	「‘아시아’의 발명: 19 세기 리전(region)의 생성」 독후감	p17

11 : 00~12 : 30 제2세션 : 서양의 인식 [사회: 남기정(南基正, 서울대학교)]

	발표자	소속	주제	요지/논문
발표 1	일본 오쿠보 다케하루	게이오의숙대학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만국공법』의 수용—일본의 경우—	p19/p27
발표 2	한국 한 승훈	고려대학교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3국의 불평등 조약 극복 가능성과 한계	p20/p38
발표 3	중국 쑨 칭	복단대학	마등경영(魔灯鏡影): 18세기~ 20세기 중국의 매직랜턴 방영(放映)과 제작, 그리고 전파	p21/p47

14 : 00~15 : 30 제3세션 :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사회: 무라 카즈아키(村 和明, 도쿄대학)]

	발표자	소속	주제	요지/논문
발표4	일본 오카와 마코토	쥬오대학	18·19세기의 여성천황·여계(女系)천황론	p21/p62
발표5	한국 남 기현	성균관대학교	일본민법의 형성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적용: 제령 제7호 '조선민사령'을 중심으로	p22/p72
발표6	중국 꾸어 웨이퉁	북경대학	전통과 제도의 창조: 19세기 후기 중국의 양무운동	p23/p82

16 : 00~17 : 30 제4세션 :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 [사회: 평 하오(彭 浩, 오사카시립대)]

	발표자	소속	주제	요지/논문
발표7	일본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학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의 영어 신문·중국어 신문·일본어 신문	p24/p90
발표8	한국 한 성민	대전대학교	김옥균의 망명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대응	p25/p99
발표9	중국 친 광	수도사범대학	근대중국여성의 모빌리티: 경험과 여성 ‘해방’에 관한 재고	p26/p109

1월 10일(금)

14 : 00~15 : 30 제5세션 : 전체토론 [사회: 류 지에(劉 傑, 와세다대학)]

아오야마 하루토시 (아세아대학), 히라야마 노보루 (규슈산업대학)
박 한민 (동국대학교)
쑨 웨이귀 (남개대학)

16 : 00~17 : 30 제6세션 : 전체토론 [류 지에(劉 傑, 와세다대학)]

· 자유토론
· 총괄/미타니 히로시 (아토미학원여자대학)

저자 약력…………… p117

참가자 리스트…………… p120

【개회 인사】

제 4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의 인사말

조 광

먼저 ‘동아시아의 탄생 ;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제 4 회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의 개최를 축하한다. 더욱이 이번 대회가 개최되는 이곳 필리핀은 19 세기 국제질서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은 나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 원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도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지역의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한데 모여 동아시아의 근현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노력은 상당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원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 지역의 공통된 사조였던 내셔널리즘에 관한 문제를 잠깐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아시아 지역은 19 세기 내셔널리즘의 영향 아래 자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국사’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19 세기 유럽의 내셔널리즘은 인종주의적 특성 및 금융자본주의와 결합하여 강력한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이 시기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내셔널리즘은 침략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각국의 역사적 특성에 따라서 그 성격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게 마련이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 국은 그 내셔널리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세 나라는 국사(national history)라는 단어의 개념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성격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국사라는 용어 안에는 자국 역사에 자부심이 공통적으로 전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민족주의적 해석을 통해서 자국과 타국 간에 전개되는 침략이나 저항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일어났다. 국사가 형성되어 나가던 19 세기말에서 20 세기 초반에 이르는 이 시기는 사회진화론이나 지리결정론과 같이 자연과학의 영향이 역사학의 해석과 서술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각국의 국사를 서술하려는 사람들은 각국이 처한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연구자들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그리고 육교적 위치 등과 같이 그 지리적 특성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19 세기의 산물인 결정론의 영향 아래 각국의 지리라는 요소를 역사를 결정하는 동력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정학이란 단어는 1899 년에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프 켈렌(R. Kjellén, 1864~1922)이 새롭게 창안한 단어였다. 그는 당시 발흥하던 지리결정론의 영향을 일정하게 수용하면서 이 단어를 만들어 사용했다. 그래서 지정학이란 단어 자체는 제국주의적 침략 세력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단어가 동아시아에 전래된

시기는 20 세기 초로서, 각국에서 ‘국사’들이 발흥하던 때였다. 특히 20 세기 전반기에 사용되던 지정학이란 용어도 제국주의적 세력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던 단어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의 학계에서는 19 세기적 용어를 차용하여 역사를 서술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역사의 서술에서는 더 이상 국수주의적 해석이나, 인종주의적 해석 또는 지리결정론이나 경제결정론과 같은 이론들은 발붙일 자리를 잃어버렸다. 이를 감안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도 새로운 각도에서 자국의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고자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바는 역사의 민주화현상이다.

원래, 유럽의 내셔널리즘은 민주주의와 동시에 일어나 전개되어 나가며, 동일한 역사의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국사들도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개방적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과거의 사건들을 성찰할 때, ‘국사의 민주화’도 가능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국사의 민주화’를 통해서 동아시아는 지나간 역사를 새롭게 해석해 나가며, 새로운 역사를 열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국사와 국사들의 대화가 더욱 활발하게 진전되어, 자신들의 자부심인 국사를 자신만의 전유물이 아닌 동아시아의 공유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국사들과의 역사적 대화는 아시아의 상호 이해와 발전에 기여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다행히 제4회까지 계속된 이 원탁회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세 나라에서 여러 젊은 연구자들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해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국사와 국사들과의 대화는 역사적 의미를 더욱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다리는 단절된 두 지역을 하나로 엮는 구실을 한다. 그러므로 단절된 두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은 동아시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교문화의 전통 안에서도 중요한 공덕으로 평가해 주고 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국사들과의 대화도 단절된 두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이어주어서 동아시아인의 상호 이해와 공동발전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국사들의 대화는 새로운 공덕을 쌓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화의 성공을 거듭 기원한다. 감사하다.

【환영 인사】

19 세기의 필리핀 ~마닐라 갤리언 무역을 중심으로~

마끼또 · F

[번역: 조수일]

오늘은 ‘일본 · 중국 · 한국의 국사들의 대화의 가능성’이라는 도전적인 원탁회의를 필리핀에서 개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영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서투르지만 일본어로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는 필리핀대학 로스바뇨스교의 마키토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 년 전에 도쿄대학에서 박사논문을 쓰고 있을 때, 아쓰미 재단의 신세를 졌습니다. 그 인연으로 제 5 회 아시아미래회의를 필리핀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의 전문분야는 역사가 아닌 경제학입니다만, 모처럼의 기회이니 19 세기까지의 필리핀 갤리언 무역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회의의 마지막 날에 예정되어 있는 스터디 투어 중에 ‘마닐라 투어 1’을 신청하신 분은 갤리언 박물관에 들르실 겁니다. 이 박물관은 중화계 재벌인 타이판(大班), 헨리 시(Henry Sy) 씨의 재벌이 개발한 ‘몰 오브 아시아’ 내부에 위치하며 2017 년에 소프트오픈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실물 크기의 갤리언선(船)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는 마닐라 갤리언 무역에 대하여 각양각색의 역사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닐라 갤리언 무역은 마닐라항을 출항한 갤리언선이 일이 년에 걸쳐 태평양을 건너, 현재의 멕시코 아카폴코까지 이동하였고, 다시 마닐라에 돌아왔습니다. 항로를 발견한 1565 년부터 멕시코 독립 직전의 1815 년까지의 250 년간 총 110 척의 선박이 왕래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래를 시작한 초기에는 마닐라와 아카폴코에서 매년 각기 3 척 이상의 선박이 출항을 하였는데, 포르투갈의 항의로 제정된 1593 년의 법률에 의해 양 항구에서 연간 2 척만 출항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큰 선박을 건조해야 했습니다. 갤리언선은 평균 1,700 톤에서 2,000 톤으로 필리핀의 목재로 건조되었고, 1,000 명의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필리핀에서 건조되었고, 멕시코에서 건조된 것

은 8 척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당시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항해시대에 있어서 세계의 경계를 확대하는 선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6 세기에 스페인이 파견한 마젤란과 엘카노에 의해 지구는 평면이 아니라 구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마젤란의 원정은 5 척의 선박과 270 명의 승조원으로 구성된 선단으로, 1519 년 9 월 20 일 에 스페인을 출항하여, 남하하면서 대서양을 횡단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최남단을 발견하였을 때, 선단장인 페르디난드 마젤란(저와 같은 이름의 포르투갈인)을 칭송하기 위하여 그 중요한 항로를 마젤란 해협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거기서 태평양을 횡단하였고, 필리핀의 역사가인 레나트 콘스탄티노 씨에 의하면 1521 년 3 월 16 일에 “필리핀의 재발견(re-discovery)” 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필리핀의 재발견”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슬람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7 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난 이슬람교는 확대방침을 취하여 9 세기 초에는 당시의 스페인 대부분을 침략하였습니다. 11 세기가 되면 그리스도교 나라들이 십자군을 결성하여 영토를 되찾으려 하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13 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어느 정도 세력을 되찾고 있었으나, 이슬람의 교리는 동쪽으로 확대되어 인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15 세기가 되면 그리스도교는 스페인을 되찾지만, 이슬람교는 인도네시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달하였을 때 필리핀 내에서도 인도네시아에 가까운 민다나오 섬은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의 역사 선생님께서서는 1521 년에 필리핀 중부에 위치한 세부 섬에 온 스페인 탐험선단이 “십자가를 세워 남쪽에서 온 이슬람의 파도를 멈췄다”고 묘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필리핀인 대다수가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민다나오 섬에서는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 대 이슬람교의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푸라푸가 관장하는 막탄 섬 종족과의 싸움에서 마젤란이 전사하였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스페인으로 돌아간 마지막 한 척은 엘카노 선장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스페인을 출항한 지 약 2 년 후인 1522 년 9 월 6 일에 출발했을 때 겨우 6%의 승조원을 태웠고, 5 척 중 유일하게 남은 빅토리아호가 스페인의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첫 스페인의 본거지는 세부 섬에 있었는데, 아시아 각지로부터의 선박이 별로 기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부 섬에 무역을 위해 찾아오는 것은 주로 마닐라에서 오는 선박이었습니다. 마닐라항에는 아시아 근방으로부터 선박이 기항하였고, 거기에서 내린 물건들 중 일부가 필리핀의 많은 섬들로 운반되었습니다. 스페인에게 재발견되기 전부터 마닐라는 이미 중계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본거지가 세부 섬에서 마닐라로 옮겨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닐라 시내에는 스페인 시대에 세워진 인트라무로스(벽안)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린 스페인 식민지의 다음 문제는 마닐라에서 모은 물건들을 어떤 방법으로 스페인까지 운반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젤란이 태평양 해로를 역방향인 동쪽 방향으로 항해하여도 동풍이 세기 때문에 당시의 선박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실패 후 일본 방향으로 흐르는 쿠로시오를 타고 북상하여, 일본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가까스로 찾아냈고, 1565 년에 마닐라 아카폴코의 갤리언 무역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필리핀은 당시 글로벌 경제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중상주의(머컨틸리즘)의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중상주의대로 갤리언 무역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크게 개입하는 보호주의 하에 실시되었습니다.

마닐라항을 출발한 갤리언선은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도자기, 상아, 칠기, 견제품을 멕시코로 운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산 견직물이 많았기 때문에 아카폴코항 선박은 ‘견선(絹船)’이라 불렸습니다. 아카폴코에 도착한 짐들은 육로로 멕시코를 횡단하여 카리브해에 면한 항구 베라크루스까지 옮겨졌고, 거기서 스페인 국왕의 인디어스함대에 선적되어 스페인으로 향하였습니다.

한편 아카폴코를 경유하여 온 갤리언선의 화물은 동아시아에서 통화로도 쓰이고 있던 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은이 귀중하였기 때문에 ‘차익을 노린 상거래(arbitrage)’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와 마닐라의 은의 가격차로 인해 갤리언 무역은 100%에서 300%까지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필리핀 국내의 경제개발을 게을리하였습니다. 설령 개발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갤리언 무역을 넘어설 수 없는 낮은 이익밖에 약속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그 덕분이라 할까요, 국내 자원이 무역의 대상이 되는 일이 그다지 없었고, 남아메리카에서 실시되었던 아시엔다(대토지소유) 제도가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갤리언 무역은 1815 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영향력이 침체되자 다른 열강들도 태평양무역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닐라 갤리언 무역은 과격한 경쟁 때문에 쇠퇴하여 갔습니다.

1819 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된 싱가포르와 같은 중계무역형 발전모델로 개발되어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허브로서 마닐라 갤리언 무역을 이어받았습니다. 1860 년에는 홍콩 또한 중계무역형 발전모델로 진입하였습니다.

어쨌서 마닐라 갤리언 무역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와 홍콩 수준의 세계무역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를 지적할 수 있는데, 경제역사학의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설이 있습니다. MIT 의 아세모글루 교수 그룹이 제창하는 ‘운명의 역전’ 설입니다. 이 설에 의하면 식민지화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역출(易出)의 식민지화’(colonization of

extraction)와 ‘취락의 식민지화’(colonization of settlement)입니다.

전자는 식민지화 당초의 인구밀도가 높고, 배타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지만, 후자는 인구밀도가 낮고, 포괄적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닐라 깬리언 무역은 어느 쪽이나 하면 전자에 해당하고, 마닐라 깬리언 무역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대체로 사회의 권력자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보호에 의한 독점적인 구조였던 것입니다.

스페인의 이러한 보호주의의 구조는 영국이 취한 자유주의 구조와 정반대였습니다. 18 세기에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은 글로벌 경제를 앞장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취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유주의에서는 재산권이 굳게 지켜지고, 기업가가 우대를 받으며, 엘리트의 과한 힘이 제한되도록 포괄적인 제도를 만듭니다.

‘운명의 역전’ 설에 의하면, ‘역출의 식민지화’는 비교적으로 유복한 곳(=인구밀도가 높음)으로, 그 사회의 부를 추출하기 위해 배타적인 구조가 구축되기 때문에 수 세기 후에 그 사회의 발전이 둔해진다고 합니다. 한편 ‘취락의 식민지화’는 비교적 가난한 곳(=인구밀도가 낮음)으로, 포괄적인 구조가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미진한 설명에 그치지만, 마닐라 깬리언 무역의 쇠퇴와 현 필리핀 경제의 현상이 설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19 세기까지의 필리핀 역사를 소개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

‘아시아’의 발명 - 19 세기 리전(region)의 생성 -

미타니 히로시

[번역: 민동엽]

오늘날 ‘아시아’는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되었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범위는 굉장히 애매하다. 오늘날 일본인에게 있어서 아마도 ‘아시아’는 일본으로부터 시작해 중국을 지나 어딘가까지 확대되는 공간이라는 이미지일 것이다. 거기에는 아마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서양에서 말하는 ‘중동’이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인에게 있어서 시베리아가 ‘아시아’에 포함되는지도 의문이다. 역으로 시점을 지구 반대편, 즉 서유럽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흔히 보스포루스 해협이 언급되지만, 터키 중간에 선을 긋는 것이 타당할까. 또, 러시아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하나의 대륙을 ‘아시아’와 ‘유럽’으로 분할하는 것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 한편, 중국에서는 종종 자신을 ‘아시아’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가 표명되기도 한다.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두면 그 외부는 모두 등가(等價) 존재가 되고 그러면 지구를 리전(region)으로 분할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에서 ‘아시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조직도 자주 보인다. 북미 연구자들이 조직하는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라든지, 아시아에 산다고 자인(自認)하는 운동선수들이 조직하는 ‘아시아 대회’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어디가 ‘아시아’에 속하고, 어디가 속하지 않는가는 항상 애매하고 그 외부와의 경계는 화자의 관심, 청중의 여하,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라는 입각지점에 따라 자주 변화한다.

이 강연에서는 이러한 ‘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리전’의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를 개관(概觀)한다. 요지를 먼저 제시해 두자면, 그것은 1880 년 무렵 일본에서 발명되었다. ‘아시아’는 원래 유럽인이 그들의 거주지역 동쪽에 펼쳐지는 넓고 아득한 공간을 지시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였다. 이하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실속있는 지역개념, 즉 외부와의 차별을 강조하고 또 어떠한 공통성 혹은 내부연관, 나아가서 연대성을 지시하는 단어로써 쓰이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스케치 해나갈 것이다¹.

1. 동아시아 세계의 ‘아시아’ 개념의 도입

유럽의 영향이 세계를 석권한 ‘근대’ 이전에는 지구상에는 적어도 네 개의 ‘세계’가 있었다.

중국적인 세계, 인도 세계, 이슬람 세계, 기독교 세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분절은 후대의 관찰자에 의한 것인데, 각각 내부에서 전근대를 살아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자기완결적인 것으로 보고, 그 외부 세계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시아’라는 말도 이러한 세계관의 일종이다. 중세후기 유럽의 기독교 교도들은 지구세계를 유럽·아시아·아프리카의 세 지역으로 분할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아시아’는 유럽에서 보면 외부에 있는 ‘그 외’ 토지 중에 동쪽에 있는 부분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그것이 지시하는 지역에는 유럽과는 다른, 공유된 종교나 특징이 없고 내부의 연관도 빈약했다. 여기에는 대소 여러 국가들이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다섯 가지의 세계 종교가 있었다. 유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였다. 이렇듯 ‘아시아’라는 말은 원래 거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었다.

이 말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에 도입된 것은 기독교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利瑪竇)가 1602 년에 북경에서 세계지도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를 간행했을 때였다. 그는 ‘아시아(亜細亞)’라는 문자를 북시베리아에서 말레이반도에 걸쳐서 사용했지만, 그 설명은 지리적 범위의 주역에 머무르는 것이었다. 머지않아 일본인은 이 세계지도를 들여왔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아시아’라는 지리명칭을 자신들의 저작에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세계지리서를 저술할 때, ‘아시아’라는 이름의 장을 두었지만 거기에서는 각 나라의 지지(地誌)를 열거하는 데에 그쳤다². 중국에서도 같은 사정이지 않았을까 한다.

당시 유럽인은 동방 지역에 대해서 다른 명칭도 병용하고 있었다. ‘오리엔트’, ‘인도’ 그리고 ‘타타르’이다. 그 중 ‘오리엔트’는 ‘해가 뜨는 땅’이라는 의미로서 고대 로마인이 ‘옥시덴트’, 즉 ‘해가 지는 땅’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와 같이 내용이 빈곤한 이름이었다. 이에 반해 다른 두 개는 좀더 내용이 깊은 것이었다. ‘인도’는 대부분 주민들이 성서를 공유하고 있지 않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 ‘인도’는 동서로 나뉘었다. 1494 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지구를 이분(二分)하여 ‘동인도’와 ‘서인도’라고 부르며 둘 다 기독교인이 정복해야 할 땅이라고 했다. 그 후, 19 세기에 이르기까지 구미의 여러 나라들은 ‘동인도 회사’나 ‘동인도 함대’ 등, ‘동인도’라는 명칭을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조직에 사용했다.

한편, 타타르(韃靼)는 유럽인에게 있어서 예전의 몽골의 정복을 상기시키는 무서운 이름이었다. 유럽인은 만주족의 청나라에 ‘타타르’를 사용했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야만인’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었던 것 같다³.

중국인과 일본인은 ‘동인도’라는 서양의 지리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전부터 ‘인도’(天竺)를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고 불교가 태어난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스로를 그 일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타르’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취했던 것 같다. 청나라는 이것을 종족이라고 파악해 스스로를 ‘타타르’의 일원으로 생각했는데, 인구의 다수인 한족은 스스로를 북방의 만족(蠻族)과는 차별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본인은 스스로를 ‘타타르’의 일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리명으로서의 중국 본부 북쪽에 위치하고 몽골족이나 만주족, 그리고 그 외의 종족이

사는 지역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과 일본인은 스스로가 거주하는 지역명으로서 ‘동인도(東印度)’나 ‘타타르(韃靼)’는 받아들이지 않고 보다 내용이 희박한 ‘아시아(亜細亞)’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현재 ‘동양’이라고 번역되고 ‘아시아’와 거의 동일시되는 ‘오리엔트’에 대해서는 복잡한 역사가 있다.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에는 ‘동양’이라는 문자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오리엔트’가 아니라 전통적인 중국에서의 용법에 따른 것이었다. 일본 근처 바다에 ‘소동양(小東洋)’, 멕시코 근처 바다에 ‘대동양(大東洋)’이 있다. 같은 식으로 페르시아 남쪽에 ‘소서양(小西洋)’, 포르투갈 근처 바다에 ‘대서양(大西洋)’의 문자가 보인다. 그의 세계지도에서 ‘동양’은 글자 그대로 ‘동쪽에 있는 대양(大洋)’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양’이 ‘옥시덴트’의 번역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리치의 선교사 후배인 줄리오 알레니(艾儒略)는 리치의 지도에 대한 지지(地誌)의 주역서 『직방외기(職方外記)』(1623년 간행)에서 ‘서양’을 해양으로서가 아니라 ‘서방’ 혹은 ‘옥시덴트’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다만 이 책에는 그 짝인 ‘동양’은 없다.

일본인도 이 용법을 받아들였다. 18세기 초기 유학자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쇼군(將軍)으로부터 일본에 잠입한 선교사의 심문을 명령받아 그 양상을 쓴 책에 『서양기문(西洋紀聞)』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 책에도 역시 ‘오리엔트’의 번역으로서 ‘동양’은 없다. 이러한 용법은 1802년에 야무무라 사이스케(山村才助)가 아라이의 저서에 대해 풍부한 난학(蘭學)지식에 기초해서 저술한 『정정증역 채람이언(訂正増訳 采覧異言)』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양’의 등장 이래, 100년 가까이 이러한 불균등한 용법이 계속 사용되었던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중국에서도 같았을까.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동아시아 주민은 유럽인이 만들어 낸 각종의 지역명칭 중에 17세기 이후 내용이 부족한 ‘아시아’와 ‘서양’만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리엔트’에 대응하는 말은 중국에서 ‘서양’이 등장한 후에도 200년 가까이 출현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19세기 중엽까지 ‘아시아’라는 지역명칭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2. ‘아시아’ 개념의 실질화: 지정학적 용법으로의 전환

원래 공허했던 ‘아시아’는 1880년, 류큐(琉球)를 둘러싼 중일간의 위기 속에서 일본인에 의해 서양에 대한 공통이해를 갖는 지역이라는 말로 재발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메이지유신 직후에 일어났다. 1870년대 초기 일본에서는 신문이 간행되기

시작했고 거기에는 무역정보와 함께 국제관계에 관한 기사도 게재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일본인은 서양의 세계제패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웃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이다. 그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서양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대국이었는데, 그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긴 국경선 전역에서 터키에서부터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에 이르기까지, 영토팽창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보의 원천은 상해나 요코하마 등 개항지에서 간행되었던 영국신문이었다. 영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그레이트 게임’을 전개하고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의 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은 신문을 통해, 아시아 주권이 공통적으로 서양의 압박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초에는 자신들의 고난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극복수단을 자신들의 서양화(化)에 구했다. 그러나 1870년대 후반에는 서양의 침략을 막고 그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아시아 연대를 주장하는 입장도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이 류큐를 병합한 직후인 1880년에 나타났다. 류큐병합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전쟁발발의 가능성을 낳았고, 그로 인해 쌍방에게 전쟁회피의 노력을 재촉하게 되었다. 그래서 양국은 류큐에서 조선으로 관심을 옮기게 되었고, 러시아를 공통의 잠재적인 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대립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던 것이다.

류큐에는 14세기에 통일왕조가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당초부터 명나라와 조공·책봉관계를 맺고 있었다⁴. 그리고 17세기 초기에는 일본의 다이묘(大名)인 사쓰마(薩摩) 시마즈가(島津家)의 침공을 받아 그 지배하에 놓였다. 그 결과, 수리(首里)의 류큐정부는 중국의 명·청왕조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면서도, 동시에 나하(那覇)에 체류하는 사쓰마 관리의 철주(掣肘)도 받았다. 이른바 ‘이중조공체제’ 안에서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유신으로 인해 생겨난 일본정부는 다이묘국가를 폐지하고 중앙집권국가를 만들고, 그 후 류큐도 역시 서양 국제법의 ‘주권’ 원칙에 준거하는 배타적인 영토로서 바꾸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청나라는 ‘오랑캐(夷狄)’에 의한 ‘번속(藩屬)’국의 병합은 용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이 이를 무시하고 1879년 류큐를 병합해서 ‘오키나와현’으로 바꿨다. 청나라는 강하게 항의를 반복했고 중국신문에는 전쟁을 주장하는 입장도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양국은 전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일본은 서남내란(西南内乱)이 수습된지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었고 정부재정도 부채와 세금수입 저하로 고생을 겪고 있었다. 한편 청나라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심각한 대립을 하고 있었다. 신장(新疆)에서 발생한 야쿵백의 독립운동은 진압되었지만 이리(伊犁)에서 러시아와의 국경분쟁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청나라 내부에는 보다 중요한 조공국이었던 조선을 잃게 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은 류큐를 둘러싸고 발생한 적의를 완화하고 어떻게든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그 방법은 러시아를 공통의 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민간레벨에서는 양국의 신문이 러시아를 공통의 가상적(仮想敵)으로 보고 ‘백인’의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동문동종(同文同種)’을 기초로 해서 양국민이 단결하자는 주장이 나타났다. 동경에서는 1880년에 소네 토시토라(曾根俊虎)가 ‘흥아회(興亜会)’를 설립하고 한중일 삼국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과

교역을 추진할 것을 제창하면서 한문으로 된 잡지를 발행했으며 상해에 학교를 설립했다. 이른바 ‘아시아주의’, 서양에 대한 대항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 연대 주장과 운동이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⁵.

한편 정부레벨에서는 류큐문제를 보류하고 조선으로 초점을 옮겨서 거기에서 협력체제를 만들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러시아를 공통의 가상적으로 보고 러시아의 조선진출을 막기 위해, 조선에 ‘자강’을 권하고 이를 청나라가 지도하고 일본이 지지하겠다는 아이디어였다. 1880년, 재동경청국공사관의 황준씨엔(黃遵憲)은 허루장(何如璋) 공사의 지지를 받아 『조선책략』을 저술했는데 때마침 일본에 와 있던 수신사 김홍집에게 그것을 주었다⁶. 그 내용은 조선에게 ‘친중국(親中國)’·‘결일본(結日本)’·‘연미국(聯美國)’, 즉 ‘종주(宗主)’인 중국과 종래 이상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일본과 제휴하며 미국을 시작으로 서양과의 외교관계를 맺자고 권하는 것이었다. 김홍집은 이것을 국왕에게 봉정했고, 고종은 이를 채용해서 실행에 옮겼다. 1882년, 조선은 리홍장(李鴻章)의 중개로 미국과 조약을 맺음으로써 세계정치의 일원으로서 가담하게 되었다. 일본 측은 이 움직임을 알지 못했지만 실은 이 아이디어는 원래 외무경 데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가 허루장에게 제안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묵인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가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다. 조미조약이 체결된 해에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이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여 구테타를 일으켰는데, 정부는 재한성주재관인 마젠중(馬建忠)의 조언을 받아들여 청나라에게 개입을 요청해서 이를 전복시켰다⁷. 또 2년 뒤에는 조선의 급진개혁파가 일본공사의 지원을 기대하면서 청나라에게 기대는 정부에 반대하여 구테타를 시도했지만 청나라군에 의해 진압됐다. 이때 일본 측은 공사가 습격당했으며 민간인 44명이 살해당했다. 그러나 삼국 정부는 분쟁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힘써서 조선은 일본에게 배상하고 청나라와 일본은 조약을 체결해 서로의 군대를 조선반도로부터 철수할 것을 정함으로써 끝을 맺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청나라에 의한 조선지배가 강화되었다. 특히 한성에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주재하게 되면서 조선정부는 이전에 ‘속국’이면서 ‘자주’였던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⁸.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정책을 펼쳤다. 당시 일본은 군사력도 없었고 경제도 불황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개입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외무성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러시아를 제외한 열강, 즉 영국, 미국, 청나라와 제휴하여 조선반도를 중립화함으로써 청나라와 러시아의 세력신장을 견제하는 정책을 취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조선불개입정책(朝鮮不介入政策)은 1894년 청일전쟁 때 포기하게 된다. 일본은 군사력을 써서 조선반도로부터 중국 세력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힐 것을 선택한 것이다. 1890년 육군 창시자였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은 내각 내에서 조선반도 중립화정책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그 후에 대외정책의 틀이 바뀌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전에 1880년 대에는 프랑스의 베트남 침공과 영국의 거문도 점령과 같은 서양 진출로 인한 소동이 있기는 했지만, 동북아시아 삼국의 관계는 안정적이었다. 일본정부는 강병(強兵)정책이 성공하기 전에는 온화한 정책을 취했고, 청나라도

이웃나라와의 대립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안정이기는 하나 1880 년 대의 동아시아 삼국은 서양의 동향을 의식하면서 국제관계 조정에 힘써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는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다⁹.

3. 20 세기에 대한 전망

일본은 청일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등책을 포기했는데, 그 결과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할취(割取)하고 식민지제국으로 변화했다. 1873 년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와 오오쿠보 도시미쓰(大久保利通)가 정한(征韓)론을 물리쳤던 것은 일본이 조선반도에 손을 댈 경우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간섭을 막을 만한 국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후로 약 20 년이 지난 일본은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해외파병을 위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다져져 있었다. 경제환경의 변화가 외교정책을 수세(守勢)로부터 공세(攻勢)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한편 중일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제창되었던 아시아주의는 그 후에도 이류의 지위에 멈춰 있었다. 청일전쟁 후에 중국 동북지방과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중국, 일본의 대립이 깊어지게 되자 일본과 중국에서는 러시아를 공통의 적으로 하는 청일동맹론이 제창되었고 정치적으로 추구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후 일본은 서양열강과 호각의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정책의 주류로 하여, 아시아 연대는 서양을 싫어하는 소수자의 주장에 머물렀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아시아’ 단위의 정치적 사고는 넓게 퍼지지 않았다. 쑨원(孫文)은 예외적 존재였다. 그는 1924 년에 고베에서 ‘대아시아 주의’를 주장했다는데, 그것은 일본인의 제국주의 지향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인이 좋아하는 아시아 연대관(觀)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일본인이 상상하는 아시아는 서방으로까지 확대되어, 원래 서양인이 상정했던 아시아 전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후, 중동의 무슬림이 일본과의 협력·이용을 목적으로 일본에 방문했는데, 이들과 접촉한 산스크리트 연구자 오카와 슈메(大川周明)는 그의 관심을 이슬람교에까지 확대시켜 『부흥기 아시아의 제 문제』(1922 년) 등, 무슬림을 포함한 아시아 부흥을 주장하는 저서를 지었다. 다만, 그는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한 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조선이나 중국 등 일본제국주의의 대상이었던 지역은 무시했다. 이러한 ‘아시아’의 서방확대에 따라 일본인이 원래 상상했던 ‘아시아’는 종종 ‘동아’라고 불리게 되었다.

일본은 1931 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다시 팽창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을 때, 자신에게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이를 정당화했다. 만주국에서 ‘협화회’를 만들어 ‘오족협화’의 정점에 일본민족을 두었던 것이 그 처음인데, 구미제국을 상대로 세계전쟁을 시작한 후에 1943 년에 동경에서 ‘대동아회의’를 연 것이 그 정점이었다. 여기에는 서양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가들이 모였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수바스

찬드라 보스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방문한 것은 소련과 나치스 독일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후였다. 서양 대신에 일본의 세력하에 들어가는 것은 보류하지만 영국의 적대세력은 무엇이든지 이용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¹⁰.

제 2 차 세계대전 패배 후, 일본인은 아시아 대륙의 식민지로부터 철수했고, 국내에서는 미군 점령하에 다시 서양화에 의한 개혁이 정책의 주류가 되었다. 냉전으로 인해 동아시아가 분단되었던 것도 이러한 경향을 조장하게 되었다. 아시아주의는 후경으로 물러갔지만 미군 점령하의 강제적인 서양화로 인한 굴욕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보완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계속했다¹¹.

맺음말

오늘날 21 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되고 있다. 현재 중미마찰도 이러한 미래 예상에 기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동아시아’는 20 세기의 ‘일본의 세기’를 지나 다시금 19 세기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재현을 바라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있을까. 물론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유럽과 달리 국가들의 사이즈에는 큰 차이가 있다. 거기에 대등한 질서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 20 세기의 일본과 같이 중국은 맹주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것인가.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나 미국, 유럽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번 강연에서는 19 세기의 변화, 즉 동아시아에서 리저널한 상상력이 탄생하고 일본이 전통적인 중화세계상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한 것을 개관하고, 나아가 20 세기 전반에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를 목표로 했지만 실패한 경위에도 언급했다. 이번 참가자들이 다루는 테마는,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 등인데, 직접적으로 이러한 파워밸런스나 질서의 전환에 대해 다루는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배후에는 동아시아의 미래와 연결되는 국제질서의 전환과 같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식해 쫓으면 한다. 좋은 발표를 목표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타자의 발표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문제의식과의 관련에서 생각하고 또 논의에 참가해 쫓으면 한다. 이는 자기자신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국경 저편에 매우 소중한 학우를 발견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¹ 본고의 논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바람. 三谷博『『アジア』概念の受容と変容』, 朴忠錫・渡辺浩編『韓国・日本・「西洋」』慶應義塾大学出版会, 2005 년. 이하 주에서는 이 논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문헌을 인용.

² 新井白石『采覧異言』18세기 초.

³ 馮明珠編『経緯天下』国立故宫博物院, 民国 94 年 (2005 年).

⁴ 赤嶺守『琉球王国：東アジアのコーナーストーン』講談社, 2004 年. 村井章介・三谷博編『琉球からみた世界史』山川出版社, 2011 年.

⁵ 並木頼寿「明治初期の興亜論と曾根俊虎について」, 同著『近現代の日中関係を問う』研文出版, 2012 年.

⁶ 平野健一郎「黄遵憲『朝鮮策略』異本校合一近代初頭東アジア国際政治における三つの文化の交錯について」日本国際政治学会『国際政治』129 号、2002 年.

⁷ 岡本隆司『馬建忠の中国近代』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年.

⁸ Owen Nickerson Denny, China and Korea (Seoul, 1888). Denny was an American Adviser of Korea, 1886-1890. 岡本隆司校訂・訳注『ON.デニー「清韓論」』東北アジア文献研究会 (横浜: 成文社), 2010 年. 일반적으로, 岡本隆司『属国と自主のあいだ 近代清韓関係と東アジアの命運』名古屋大学出版会, 2004 年.

⁹ 三谷博・並木頼寿. 月脚達彦編『大人のための近現代史 19 世紀編』東京大学出版会, 2009 年.

¹⁰ 長崎暢子『インド独立 逆光の中のチャンドラ・ボース』朝日新聞社, 1989 年.

¹¹ 최근에 아시아 각지의 아시아주의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서가 출판되었다. 금후의 연구는 이를 참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松浦正孝編『アジア主義は何を語るのか』ミネルヴァ書房, 2013 年.

【코멘트】

『아시아'의 발명: 19 세기 리전(region)의 생성』

독후감

쑹 지용

[번역: 홍용일]

미타니 히로시 교수님의 『아시아'의 발명: 19 세기 리전(region)의 생성』을 배독하고 많은 계발을 받았습니다. 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평론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논문을 읽은 후의 간단한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 아시아, 아시아인, 아시아주의, 아시아 사상 문화 등 개념은 더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의 근원을 탐구하기란 결코 쉽지 않지요. 미타니 교수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초기의 아시아란 용어는 유럽인들이 제출한 하나의 지리학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 세기에 이르러 무력과 무역을 앞세운 서방의 힘이 아시아를 침식하며, 식민주의자들은 아시아라는 지리학 개념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 사람들 또한 자신들이 서방과는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고 서서히 아시아라는 개념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나날이 발전하여가는 과정에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아시아적인 특색을 갖춘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가게 되죠. 아시아의 연대감, 아시아주의, 아시아 특색을 지닌 사상과 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근대적인 세계관이 과거 천 년 동안 아시아를 지배했던 화이사상(華夷思想)을 대체하게 됩니다.

미타니 교수님은 이 논문에서 19 세기의 아시아 생성에 대해 소개하셨을 뿐만 아니라, 백여 년 동안의 복잡한 변천사도 동시에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근대적인 아시아 관념의 핵심은 동아시아입니다. 다만,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 일본, 조선은 상이한 노선을 취했으므로 그 결과는 물론 각자의 아시아관도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시아주의 또한 국가마다 제각각 부여하는 의미가 달랐으며, 이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질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근대 일본의 대외 침략과 확장은 줄곧 아시아 공동체라는 구호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아시아 미래를 전망하며 미타니 교수님은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19 세기에 아시아가 구상화(具象化)된 이래, 이미

100년이라는 역사가 흘렀습니다. 시대는 아시아에 새로운 함의를 부여했고, 아시아의 활력은 서방의 흥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아시아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아시아의 시대가 지역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공동발전하는 시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국가들이 제로섬 사고(零和思维)를 버리고 아시아의 공동발전과 진보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포럼 또한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연구와 아시아의 아름다운 미래 창조에 공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발표 요지】

〈발표 1〉

19 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만국공법』의 수용 —일본의 경우—

오쿠보 다케하루 (大久保 健晴)

본 발표는 근대 여명기 동아시아에서 서양국제법이 어떻게 수용되었고, 또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위해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었는가에 대해서 네덜란드를 기점으로 일본에 전해진 학식(學識)과 중국을 경유해서 보급된 한역문헌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적원천에 초점을 맞춰 비교정치사상사의 시점으로부터 해명하려고 한다.

19 세기 동아시아는 서양열강과 대치하고 조약교섭을 진행하면서 구래의 근린 아시아 국가와의 상호 관계성이 격동하게 되었는데, 그 도중에 새로운 학술지식으로서 널리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서양국제법 ‘만국공법’이었다.

동아시아 세계에 체계적인 서양국제법 지식을 전한 최초의 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惠頓著・丁韋良訳万国公法』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같은 시기에 같은 이름의 책이 존재했다. 도쿠가와정권 최초의 유럽유학생으로서 1863 년부터 2 년간에 걸쳐 네덜란드에서 공부한 니시 아마네(西周)와 쓰다 마미치(津田真道)에 의한 유학의 성과, 『畢洒林氏説・西周助訳述万国公法』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중국 경유와 네덜란드 경유, 두 개의 『만국공법』의 비교검토를 통해 메이지초기 일본의 학자와 관료가 어떠한 논쟁을 전개했는지, 또 그것이 메이지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다. 근대 일의 서양 국제법과의 사상적 격투와 그로인한 아시아 세계로의 시선의 변용을 검토함으로써,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과 ‘동아시아’의 탄생을 둘러싼 전체 토의에 공헌하고자 한다.

[문제제기]

1. 오쿠보의 발표에서, 당시 시대상황에 비추어 (1)니시 아마네・쓰다 마미치, (2)나카무라 마사나오, (3)후쿠자와 유키치 셋 중에서 과연 누구의 주장(정치적 입장)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가.
2. 19 세기부터 20 세기의 아시아 제국(諸国)의 유럽 국제법의 수용은 각자의 나라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유럽 국제법은 아시아 근대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3. 상기 1,2 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 아시아에서 우리는 국제법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지향한 것과 같은) 유학 등, 아시아의 사상적 전통을 기초로 한 국제법사상의 형성은 가능할까. 또는 애초 아시아 세계에서 국제법은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

〈발표 2〉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 3 국의 불평등 조약 극복 가능성과 한계

한승훈 (韓承勳)

19 세기의 조선, 일본, 청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사적 용어는 불평등조약이다. 세계의 주요 사전도 불평등조약을 19 세기 조선, 일본, 청국이 타국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19 세기 동아시아 3 국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이 자국사, 동아시아사, 그리고 세계사에서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880 년대 초반 일본, 조선, 청국은 영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이 구축한 불평등조약체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은 조약 개정의 예비회담을 통해서 영국을 비롯한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려고 했다. 조선은 일본과의 조약 개정과 서구열강과의 불평등한 내용이 배제된 조약 체결을 준비할 수 있었다. 청국은 조선과 서구열강의 조약체결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조선에게 불평등한 내용의 일부를 배제함으로써 조선이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자신과 서구열강의 체결한 조약의 개정을 기획했다. 이상과 같이, 1880 년대 초반 동아시아에 서구열강이 관철시킨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물론 이러한 개정의 움직임은 실현되지 않았다. 본 발표문은 1880 년대 초반 동아시아 삼국의 불평등조약을 극복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가능성이 가지는 현재적 의의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제기]

발표자가 본 발표문에서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동아시아 3 국의 경쟁과 갈등의 근현대사 이면에 감춰진 다양한 모습, 특히 상생의 공존과 공영의 공간으로 동아시아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 내지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2.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를 통해서 상호 공감과 소통의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오늘날 역사적 갈등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3. 본 발표문은 동아시아 3 국의 서양인식을 밝히는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그 중에서 불평등조약과 관련해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이라는 관점이 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3 국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서구권의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유한다면, ‘불평등조약’이 갖는 서양의 ‘침략적 구도’ 속에 감춰진 화해와 평화를 지향한 사례가 있을까? 아니 사례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발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발표 3〉

마등경영(魔灯鏡影)
: 18 세기~ 20 세기 중국의 매직랜턴 방영(放映)과 제작, 그리고 전파

쑨 칭 (孫青)

매직랜턴은 17 세기 중반 유럽인이 발명하여 예수회원의 포교활동과 해외무역에 의해 중국에 전래되었다. 19 세기에 들어서서, 이 ‘서기(西器)’는 프로테스탄트가 ‘ 과학적으로 포교하는’ 중요한 도구로 중국에 보급되었다. 이것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도 근대지식을 전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17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중국 재래의 것과 서로 경쟁하였다. 그럼으로써, 영국의 근대교육 기술과 양식은 포교를 위한 강연이나 개항지에서의 공연강좌, 혹은 학교에서의 강의 등에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지식인의 모임이나 발표방법 등도 이전의 폐문결사(비밀결사)로부터 대중을 향해 발신하는 ‘영등강연’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유행은 ‘사(士)’가 ‘지식인’으로 변신하는 것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문제제기]

1. 근대 동아시아의 서양인식에 있어서의 기술과 전파의 조건, 그리고 그 전환과 영향
2. 공업화, 기물(器物)의 전래와 근대 동아시아에서의 서양지식 구축과의 관계
3. 서양화(西洋化)라는 배경하에서 근대 동아시아가 어떻게 지식을 규율(discipline)했는가 라는 것과, 대중에게 발신할 때에 엘리트들의 역할과 위치의 전환

〈발표 4〉

18 · 19 세기의 여성천황 · 여계(女系)천 황론

오카와 마코토 (大川眞)

올해 5 월에는 새로운 천황의 즉위가 있으며 황위계승에 국민들은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지견(知見)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의 의식은 구(旧) · 현(現) 황실전범(典範)의 규정이, 전대까지의 역사적 · 문화적인 축적을 직선적으로 반영해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본 연구는 황위계승을 둘러싼 논의가 비학문적인 개인의견의 피력에 그치고 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여성천황 · 여계천황론이 구 · 황실전범(1889 년 제정)의 성립 전후로 해서 어떻게 연속 혹은 변화하는지를 상세하게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의 문제를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구 · 황실전범 제 1 조에 있는 남계남자계승주의(男系男子繼承主義)의 성립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의

구신(具申), 그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민권과 결사·앵명사(嚶鳴社) 내의 논쟁이다. 그리고 이노우에에게 영향을 미친 그룹에는 앵명사와 같은 도시민권과 뿐만 아니라, 국학자들의 존재가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남계남자주의를 주장한 고나카무라 기요노리(小中村清矩)의 영향은 컸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국학자 그룹 중에는 여제(女帝)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직계, 방계(傍系)에서 남자 황족이 없을 때는 여제 천황의 즉위를 제안한 요코하마 요시아키(横山由清)도 있었다. 민권과 결사·앵명사처럼, 국학자 그룹도 결코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다. 보다 미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제기]

1. 일본에서는 8 명 10 대의 여성천황이 즉위했지만, 중국에서는 무측천(武則天), 조선반도에서는 신라에서 선덕왕, 진덕왕, 진성왕이 각각 즉위하였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그녀들의 즉위와 치정(治政)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가.
2. 일본에서는 새로운 천황이 즉위해서 원호도 레이와로 바뀌었는데, 현재 중국, 한국의 역사학회에서는 천황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3. 한중일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여성의 사회·정치진출의 비율은 아직도 낮다. 여러한 affirmative action 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도 발본적인 시정(是正)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정치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발표 5>

일본민법의 형성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적용 : 제령 제 7 호 「조선민사령」을 중심으로

남기현 (南基玄)

이번 발표의 목적은 1896 년(메이지 29 년) 법률 제 89 호에 규정된 일본민법과 그 이후 시행된 민사법 관련 법률이 식민지조선에서 적용되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식민지조선 사이에서 형성된 ‘법적 구조’의 형태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적 고찰이기도 하다 일본의 메이지정부는 1888 년(메이지 21 년)에 민법전을 편찬했다. 하지만 그 시행은 연기되었다. 1896 년에는 총칙, 물권, 채권 부분이, 1898 년에는 친족, 상속 부분이 공포되었고, 1899 년 7 월 16 일부터 전부 시행되었다. 민사소송법과 상법은 1899 년부터 사실상 시행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민법 관련 법률은 식민지조선에서도 적용되었다. 1912 년 8 월, 제령 제 7 호 <조선민사령>이 발표되었다. 일본 내각과 조선총독부 사이에서 약 2 년간의 조정 후에 만들어진 법령이었다. 이 법령의 각 조항은 내용별로 보면 크게 2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일본 민사관련법을 ‘의용(依用)’하는 것을 정한 제 1 항이다. 둘째, 식민지조선에만 적용되는 사항인 ‘특별조항’이다.

<조선민사령>은 일본 법률을 적용하면서도 일본과는 다르게 법률을 적용해서 통치하려는

조선총독부 및 일본정부의 방침이 담겨져 있던 법령이었다.

[문제제기]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생각해두었으면 한다.

1. 19 세기 후반은 일본의 법체계가 완성된 시기였다. 헌법이 만들어졌으며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차례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일본의 법령은 1910 년 즉, 20 세기 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제령’이라는 형식으로 ‘의용’되었다.
2. 조선총독의 입법권한인 ‘제령권’, <조선민사령>의 공포는 일본정부, 제국의회, 조선총독부 간의 견제와 타협을 통한 결과물이었다.
3.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법령을 식민지 조선사회에 적용하면서도 ‘특례조항’이라는 것을 통하여 식민통치를 강화해왔다. 이것은 조선총독의 권한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발표 6>

전통과 제도의 창조
: 19 세기 후기 중국의 양무운동

꾸어 웨이동 (郭衛東)

아편전쟁의 발발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 세기 중엽, 중화전통의 고전적인 문명이 공전의 도전을 받았다. 그때까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내부에서의 조정이었다. 가령 다른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로 동양문명으로부터의 영향이었고, 서양문명의 영향은 대부분 간접적이고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 중국문명은 서양문명과 충돌하고, 그 가운데 전통과 제도의 창조가 이 시대의 2 대 주제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중화전통문명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문명체계, 특히 서양의 문명체계로부터 많은 것을 수용하고 또 흡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문명의 일부분이 면면히 계승되어 중화문명은 계속해서 민족적 색채를 잃지 않았다. 19 세기 후기의 중국 양무운동이 이러한 사회적 전환의 핵심이었다.

우선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편전쟁의 참패로 인해 “물질적인 면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근대기계공업이 나타났고, 군사병기문화의 발흥이라고 하는 특수한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근대적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 주민의 소비구조와 습관이 변하고 사회생활, 특히 도시생활이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근대 시정(市政) 건설이 시작되었고 전업 소방대나 수도회사, 지하수도, 가로등, 전화(당시 ‘律風 delufeng’이라고 영어로 음역되었다.)가 출현했다. 다음으로 문화 면에서 보면, 서양 학문이 충격을 주어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양무관()이 나타났고, 박학한 사람과 무지한 사람이 한순간에 역전했다. 근대 문교사업이 시작되었고, 문화를 전파하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났으며 학문의 계보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문화 면에서는 전통적인 인습이 많았기 때문에 직면해야 했던 도전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도 면에서 보면, 입헌정치 도입의 비동시성, 근대적 제정과 사법, 관료제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공화제가

전통적인 정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었던 것이다.

[문제제기]

1. 양계초의 기물, 제도, 문화 3 단계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근대 동아시아의 탄생에 일본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혹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는가.
3. 중국의 양무운동이 어떤 점에서 성공했는지, 혹은 실패했는지.

〈발표 7〉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 :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의 영어 신문 · 중국어 신문 · 일본어 신문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浩之)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는 영어 신문과 중국어 신문, 일본어 신문에 의해 국경과 언어를 넘어서는 보도와 언론의 유통이 생성되었다. 발표자는 이를 동아시아의 공공권(公共圈)의 탄생으로서 파악하려고 한다.

동아시아는 세계시장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개항지 사이의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지역으로써 기능하기 시작했다. 개항지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영국은 각지에 영어 신문을 전파했는데, 이러한 영어 신문들이 상호간에 기사를 참조하거나 옮겨 실으면서 국경을 넘는 언론권을 형성했다.

영어 신문의 활동이 촉매제가 되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중국어 신문과 일본어 신문이 탄생했다. 이러한 신문들과 각지의 영어 신문 간에는 번역과 전재(轉載)를 통해 기사가 유통되었고, 중국 측도 영어 신문을 통해 일본어 신문의 논조를 알게 되었다. 또한 일본 측에서는 중국 고전에 대한 교양을 바탕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중국어 신문이 그대로 읽혔다.

이러한 보도와 언론의 유통은 1870 년대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자주 있었던 국제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메이지유신 후 일본이 대만이나 류큐(琉球), 조선을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가운데, 영어 신문과 중국어 신문, 일본어 신문 사이에서는 서로간의 보도나 언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공통의 관심거리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본 발표는 대만출병이나 유구처분을 구체적인 예로 이러한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에 대해 분석한다.

[문제제기]

1. 개항지와 그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9 세기 중국과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 19 세기 중국 · 조선에서의 국경관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3. 19 세기 동아시아에서 중국·조선·일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경험은 무엇일까. 또 각각의 경험에는 어떠한 다른점이 있었는가.

〈발표 8〉

김옥균의 망명에 대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대응

한성민 (韓成敏)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개화파는 1884년 12월 4일에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불과 3일만에 실패로 끝나고 그들은 일본에 망명했다. 그들은 근대 일본사회가 받아들인 최초의 정치 망명자였다.

망명 이후의 김옥균의 행동은 항상 조선, 일본, 청나라 정부의 관심사였으며 ‘김옥균 인도(引渡) 문제’는 중요한 외교적 쟁점이었다. 일본에서의 김옥균에 대한 처우는 일본정부의 내각결정에 의해 행해졌다. 따라서 망명 후의 김옥균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갑신정변 이후의 한일관계 또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김옥균을 비롯한 조선인 망명자들은 본국으로부터의 계속되는 암살 위협에 시달렸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갑신정변과의 관련을 부정하고 김옥균 일행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기는 커녕, 망명로서도 대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의 신문보도 등으로 인해 일본사회의 반(反)조선·반(反)청나라의 감정을 자극하고 개화파를 ‘일본당(黨)’으로 칭하는 등, 김옥균 일행은 일본의 민간사회로부터는 깊은 동정과 지원을 받았다. 이후 조선인 망명자는 일본사회에서 큰 관심대상이 되었다.

김옥균이 일본으로 망명했던 시기는 일본이 구미와의 불평등조약의 철폐에 대단히 노력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망명자 김옥균의 존재는 일본의 구미화·문명화를 재기 위한 척도와 같은 것이었다. 본 연구는 근대 일본사회가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조선으로부터의 정치망명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대응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문제제기]

1. 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정치적 망명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의 정치적 지향은 무엇이었는가?
2. 1890년대 일본에서 대외강경론이 크게 확장되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3.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3국 모두에서 3국 연대론 혹은 3국의 연대에 기초한 동양평화론이 등장했다. 3국의 평등한 연대에 기초한 동양평화 혹은 동아시아 경제블록의 실현은 불가능한 꿈인가?

근대 중국여성의 모빌리티 경험과 여성 ‘해방’에 관한 재사고(再思考)

친 광 (秦方)

근대 중국여성의 모빌리티(이동) 경험은 1840 년대 이후 중국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교통 도구의 출현이 그 중 하나이다. 동시에 여성의 모빌리티는 그 사상이 폐쇄에서 해방으로 이행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예로부터 장려되어 왔던 ‘深居閨閣’(안방에 있다)라고 하는 여성의 삶과 그것을 지탱하는 도덕관은 역으로 여성의 불개화(不開化)의 근원이라고 하여 비판되기 시작했다. 이를 대신해 폐쇄상태로부터 해방하는 새로운 여성상이 칭송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여성의 모빌리티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낙관시되고 미화되어 여성해방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빌리티에 대한 칭송은 역사기술면에 있어서는, 당시 사람들과 학자가 진보와 해방과 같은 현대성을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해방’은 말할 것도 없이 여성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자체는 자명한 개념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식민주의에 의해 지탱되었던 언론패권의 역사적 틀이 있었다. ‘해방’과 ‘억압’의 내용은 그러한 언론패권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다. 만약 그것을 충분히 비판하지 않고 그 현대성과 정당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중국사회와 여성의 개혁에 있어서 사용하게 되면, 사상과 사회와의 사이에 엇갈림이 생겨 여성이 희생자가 되어버린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해방’이라는 과제의 역사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해방’된 후 여성은 보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다. 어떻게 그것들에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여성이 정치적·도덕적·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방’과 ‘억압’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제기]

1.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이 공공공간(公共空間)에 진출할 때 어떤 찬스와 도전을 만나게 되는가.
2. 중국에서 ‘해방’이라는 말은 여성의 전족 습관에 관한 논술에서 처음 보여지는데,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가.
3. 혹시 ‘남자’ ‘여자’라는 카테고리(성별로서의 ‘남·여’ 뿐만 아니라, 비유로서의 ‘남·여’ 도포함)로부터 탈출하려면, 여성의 경험을 사고하기 위해서 이와 다른 어떤 구조 혹은 틀을 생각할 수 있을까.

【발표 논문 1】

19 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만국공법’의 수용 —일본의 경우—

오쿠보 다케하루

[번역 : 민동엽]

시작하며

본 보고에서는 근대여명기 동아시아에서 서양국제법이 어떻게 수용되었고, 또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을 위해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되었는가를 일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¹. 근세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중국왕조인 명나라와 조선 사이에 조공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명청(明清) 교대로 인해 동요했으나 19 세기 중엽까지 그 틀은 유지되었다. 한편, 일본은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17 세기 중엽이후, 도쿠가와정권은 해금정책을 펼치고 나가사키(長崎), 쓰시마번(対馬藩), 가고시마(사쓰마)번(鹿児島藩), 마쓰마에번(松前藩)을 통해 중국과 네덜란드, 조선, 류큐, 아이누와 교역하였다. 중국 왕조와의 종속관계는 성립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교류는 단절되었으며, 중국 상인들이 나가사키에서 무역하는 통상관계만이 존재했다. 조선과는 교린(交隣)관계에 있었지만, 이것도 양국간 개별적인 교류에 그쳤었다. 이러한 근세시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지속되었다².

하지만 19 세기에 들어서면서 서양세계와의 본격적인 접촉을 통해 종래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세계인식은 그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게 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1853 년 페리가 이끄는 미국함대가 내항한 이후에 사태가 일변했다. 서양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은 영사재판권 규정이나 관세자주권의 상실을 포함하는 비대칭적인 내용이었다. 이를 계기로 250 년 이상 지속되어 온 도쿠가와정권은 불과 14 년 만에 와해되었고, 메이지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렇듯 서양열강과 대치하여 조약 교섭을 진행시키며 종래의 이웃 아시아 각국의 상호관계성이 유동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학술지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이 서양국제법 ‘만국공법’이었다³.

¹ 이 논문은 大久保健晴「近代日本の黎明とヨーロッパ国際法受容」(酒井哲哉編著『日本の外交 第3巻 外交思想』岩波書店, 2013 년), OKUBO Takeharu, *The Quest for Civilization*, translated by David Noble, Brill, Boston & Leiden, 2013, Chapter 4,의 연구성과에 기반함.

² 19 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 및 일본의 대외정책 변용에 대해서는, 浜下武志『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岩波書店, 1997 년, 荒野泰典『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学出版会, 1988 년, 三谷博『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幕末外交と政治変動』山川出版社, 2009 년, 岡本隆司『属国と自主のあいだ—近代清韓関係と東アジアの命運』名古屋大学出版会, 2004 년, 佐藤誠三郎『「死の跳躍」を越えて—西洋の衝撃と日本』都市出版株式会社, 1992 년, 藤田覚『近世後期政治史と対外関係』東京大学出版会, 2005 년, 眞壁仁『徳川後期の学問と政治—昌平坂学問所儒者と幕末外交変容』名古屋大学出版会, 2007 년, 등을 참조.

³ ‘개국(開国)’을 둘러싼 중요한 정치사상사연구로서, 丸山眞男「開国」(『丸山眞男集』제 8 권, 岩波書店, 1996 년), 宮村治雄『開国経験の思想史—兆民と時代精神』東京大学出版会, 1996 년, 渡辺浩「思想問題としての『開国』—日本の場合」(朴忠錫, 渡辺浩編『国家理念と対外認識 17-19 世紀』慶應義塾大学出版会,

동아시아 세계에 체계적인 서양국제법 지식을 가져온 선구적 서적으로 유명한 것은 재중국 미국인 선교사 마틴(William Alexander Martin, 丁韪良)이 미국의 법률가·외교관 휘튼(Henry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한역한 『惠頓著, 丁韪良訳, 万国公法』(이하, 한역 휘튼 『만국공법』)이다⁴. 이 서적은 청나라 총리아문의 지원을 받아 북경에서 출판되었는데, 간행 직후인 1865년에 일본에서도 에도개성소(江戸開成所)에서 번각(翻刻)이 나왔다.

종래의 많은 선행연구는 이 한역 휘튼 『만국공법』을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 특히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와 오사타케 타케키(尾佐竹猛) 등의 고전적인 연구는, 이 책의 자연법론을 둘러싼 한역에 “성법, 천법, 천리, 자연법 등의 글자가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의 만국공법이 유학의 ‘도(道)’ 개념과 겹쳐져서 해석되었고, 보편적인 규범 “천지자연의 이법(理法)”에 기초하는 “천지의 공도(公道)”로서 널리 이해되었다고 지적했다⁵.

그러나 도쿠가와정권 말기 일본에서는 한역 휘튼 『만국공법』 외에,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영향을 주었던 또 하나의 서적이 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수 피세링(Simon Vissering)이 구술하고, 니시 아마네(西周)가 역술한 『畢洒林(피세링)氏說, 西周助訳述, 万 公法』(이하, 『피세링씨 만국공법』)이 그것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에서는 17세기 초부터 네덜란드와 교역이 이루어졌고, 18세기가 되어서는 네덜란드어를 통해 서양의 학술을 공부하는 난학(蘭学)이 발흥했다. 니시 아마네가 번역한 『피세링씨 만국공법』도 이러한 난학의 두터운 학문적 전통 위에 성립한 것이다.

본 보고에서는 이와 같이 중국 경유와 네덜란드 경유의 두 개의 『만국공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막말메이지(幕末明治) 초기 일본에서 어떠한 논쟁이 전개되었는지, 또 그것이 메이지정부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1. 『피세링씨 만국공법』과 네덜란드 법학

『피세링씨 만국공법』은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津田真道)의 네덜란드 유학의 성과물이다. 도쿠가와정권은 폐리내항 직후인 1856년, 양학(洋学)교육과 서양사정 조사를 목적으로 학문소 ‘번서조소(蕃書調所)’를 창립하였는데 1862년에는 두 명의 젊은 학자를 네덜란드로 유학파견하였다.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였다. 그들은 근대일본 최초의 유럽 유학생이었다.

니시와 쓰다는 네덜란드에서 2년간에 걸쳐 라이덴대학 법학부 교수 피세링에게 개별적으로

2001년), 同『日本政治思想史-17-19世紀』東京大学出版会, 2010년, WATANABE Hiroshi, *A History of Japanese Political Thought: 1600-1901*, translated by David Noble, International House of Japan, Tokyo, 2012, Kinji Akashi (明石欽司), “Japanese ‘Acceptance’ of the European Law of nations. A Brief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in Japan c. 1853-1900”, in *East Asian and European Perspectives on International Law*, Nomos, Baden-Baden, 2014, 등이 있다.

⁴ 본 보고에서는 惠頓著, 丁韪良訳『万国公法』同治3年, 慶應元年開成所繙刻, 京都崇実觀存版, 그리고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sixth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855, 을 이용한다.

⁵ 吉野作造「我国近代史に於ける政治意識の発生」『吉野作造著作集』제11권, 岩波書店, 1995년, 尾佐竹猛「維新前後に於ける立憲思想-帝國議會史前記」, 「近世日本の国際觀念の發達」『万国公法と明治維新』『尾佐竹猛著作集』제9권·제13권, ゆまに書房, 2006년 등. 그리고 1990년 이후의 한역 휘튼 『만국공법』 연구에 대해서는 주 29를 참조 바람.

자연법, 국제법, 국법, 경제학, 통계학으로 구성된 오과강의(五科講義)에 대한 개인교습을 받았다. 1865 년에 귀국한 후 그들은 도쿠가와정권의 명을 받아 유학의 성과인 강의노트를 분석하여 역술하였다. 그 중 국제법강의를 번역한 작품이 바로 니시 아마네 역 『피세링씨 만국공법』이었고 이것은 1868 년에 간행되었다⁶. 니시와 쓰다가 일본을 떠난 것은 한역 휘튼 『만국공법』이 출판되기 이전의 일이었다. 그들의 시도는 유럽에서 국제법을 직접 체계적으로 배워 일본으로 그것을 도입한 가장 선구적인 것이었다.

니시와 쓰다가 가르침을 받은 피세링은 당시 라이덴대학 법학부에서 경제학, 외교사, 통계학을 담당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피세링이 19 세기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법학자이자 정치가인 토르베케(Johan Rudolf Thorbecke)의 제자이며 후계자였다는 것이다. 토르베케는 전제군주제를 비판하여 입헌주의에 기초한 헌법개정을 1848 년에 실현하였다. 네덜란드 자유주의 개혁의 주도자였다. 니시와 쓰다가 배운 피세링 오과강의에는 19 세기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 실제로 니시와 쓰다는 국법학 강의를 통해 피세링에게서 권력분립하의 국민 제권리(諸 利)를 중시하는 입헌사상을 배웠다. 또 경제학 강의에서는 스미스(Adam Smith)와 바스티아(Frédéric Bastiat) 등의 계보를 잇는 자유경제론을 배웠다⁷.

이하에서는 그들이 네덜란드로부터 가지고 돌아온 손으로 쓴 난문강의필기(蘭文講義筆記) “Volkenregt”와 니시 아마네의 번역 『피세링씨 만국공법』을 단서로 해서 그들이 피세링에게 배운 국제법의 특징을 세 가지의 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⁸.

첫 번째 특징은, 이 강의가 ‘태서공법(泰西公法)’인 유럽 국제법을 주제로 한다는 것이다. 피세링에 의하면, ‘태서공법’은 유럽의 “문명”화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제의 조규(交際の條規)”이다. 거기에서 ‘성리공법(性理公法)’, 즉 자연법론은 하나의 법적원천이기는 하나, 모든 법체계를 연역하는 원리는 아니다. 오히려 국가 제권리를 정하는 ‘태서공법’은 각국이 교제를 쌓으며 이해관계를 심화시키면서 만들어 온 여러 조약과 관례를 법적원천으로 한다⁹. 오히려 그 범위는 오늘날 “유럽내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856 년 “파리평화조약”을 계기로 “터키도 허가를 받아 태서공법 동맹에 참가하게 되었다”¹⁰. 다만

⁶ 『畢酒林氏万国公法』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田岡良一「西周助『万国公法』」『国際法外交雑誌』(제 71 권 제 1 호, 1972 년)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포함한 종래의 선행연구에서는 동시대 네덜란드의 학문상황이나 피세링의 저작, 또는 니시 등이 남긴 난문(蘭文)강의노트까지 살펴보고 법학·국제관계사상과 국제인식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

⁷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가 배운 피세링 강의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大久保健晴『近代日本の政治構想とオランダ』(東京大学出版会, 2011 년) 및 OKUBO Takeharu, *The Quest For Civilization* 을 참조 바람. 국제법 강의에 대해서는 S. Vissering, *Dictaat over de Diplomatische Geschiedenis*, Universiteitsbibliotheek Leiden, 1859-1860, 과의 비교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동시대 네덜란드의 국제법학사에 대해서는, W. J. M. van Eysinga, “Geschiedenis van de Nederlandsche wetenschap van het volkenrecht”, in *Geschiedenis der Nederlandsche rechtswetenschap*, dl 3, afd. 1, Noord-Hollandsche Uitgevers Mij, Amsterdam, 1950, 등을 참조 바람.

⁸ 이하, 피세링 구수(口授), 니시 아마네 역 『畢酒林氏万国公法』의 텍스트는 大久保利謙編著, 위에 인용 『西周全集』 제 2 권에 소장된 작품을 이용한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에는 쓰다 마미치가 필기해서 가지고 돌아온, 손으로 쓴 피세링 국제법강의 네덜란드어 강의 필기“Volkenregt”가 소장되어 있다. 이 네덜란드어 강의노트 “Volkenregt”는, 日蘭學會編, 大久保利謙編著, 前掲『幕末和蘭留學關係資料集成』 안에 활자화되어 있다. 저자는 국립국회도서관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원문(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하였는데, 인용할 때에는 활자판 페이지를 기록하였다(이하, 같은 네덜란드어 자료의 인용은, BA 라고 약기한다.). 다만, 이 노트는 제 2 권 서두에서 제 2 권 제 2 장의 중간까지, 그리고 제 4 장이 빠져있다.

⁹ 「故に文明の諸国合して一大局をなせる(中略)歐羅巴に在ては此公法漸次に詳備し、時を歴るに従て其條規愈一定せり」(西周訳『畢酒林氏万国公法』(앞의 책『西周全集』제 2 권) 19-20 쪽. BA, pp.42-43.)

¹⁰ 위와 같음, 20 쪽. BA, p. 43.

여기서도 ‘동맹’ 참가를 승인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유럽 제국(諸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세링은 “자주”와 “평행의 권(平行の權)” 등, 주권국가의 제권리에 관해서도 그것은 분명 ‘성리공법’을 기원으로 하지만, “이것이 실로 이행되는 것은 태서공법으로 채용되고 확정한 조규로 이를 지도할 때 비로서 가능해진다”고 설명하였다¹¹. 이렇듯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자신들의 영토로서 점거·영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무주지(無主地)를 둘러싼 “취유(取有)” 선점(先占)의 법 등이 “태서공법”의 이름으로 제정되었다¹².

두 번째 특징으로서, 피세링은 유럽 국제체계를 열강 ‘오대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균형에 의해 성립한다고 지적했다¹³. 니시는 여기에 보주(補注)를 달아 유럽의 국제관계를 고대중국의 “춘추열국”과의 유추를 통해 파악하였다¹⁴. 다만 피세링은 계속해서 “힘은 논리”로만 그것이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국가간의 대등한 균형관계와 제(諸) 조약은 상호의 “신의 성실의 원칙”(goede trouw) 위에 성립한다. “만국(万国)은 날이 지날수록 교제(交際)가 깊어지고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이 권의(權義)도 점점 정밀해지며 이를 지키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geode trouw)이다”¹⁵.

그렇지만 물론 그것은 단순한 도덕심에 의거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국이 서로 교류하는” 도중에 제 국가가 타국을 침략하는 등 “부정불의(不正不義)”를 행하게 되면, 관계 각국으로부터 보복당한다기보다는 “정(正)과 신(信)을 근본으로” 한 쪽이 결과적으로 “지혜롭고 또 이익이 있다”는 공리계산을 한다¹⁶. 근대 유럽에서는 각국이 세력유지와 확대를 위해 싸우면서 교제·교역이 깊어지고 세력균형의 원리가 만들어졌으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문명사회에서의 국제정치 고유의 모럴이 생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세링은 국가평등권과 내사(內事)자주권과 함께 “교제의 권(交際の權)”을 주권국가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로 규정했다. “성리의 공법”에서는 교제의 규정은 없고, 타국과 교제할지 말지는 그 나라의 자주권에 달렸다. 그러나 “태서공법의 조규에서는 교제의 권은 빠질 수 없다”¹⁷. 다른 제국(諸国)과의 교제·교역을 거절하면 “인도(人道)에 크게 어긋나는 자”이다. 더구나 “문명 제국(諸国) 이 태서공법을 지키는 동맹”에 있어서는 이해손실이 연관되어 “그 교의(交義)가 나직(羅織)하고 또 더없이 밀접하게” 된다. “예의화흠(禮儀化洽)의 나라”는 “나라를 단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자연법보다도 ‘태서공법’에서의 교제의 논리가 우선된다¹⁸.

세 번째로 흥미로운 것은 정전론(正戰論) 비판이다. 피세링에 의하면, 자연법론에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정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태서공법’의 전쟁관(觀)은 그것과는 크게 다르다¹⁹. 주권국가간 전쟁에서 전쟁의 실질적 원인이 정(正)·부정(不正)인지는 문제가

¹¹ 위와 같음, 22 쪽.

¹² 위와 같음, 29-38 쪽. BA, pp.52-65.

¹³ 위와 같음, 44-45 쪽. BA, p. 74.

¹⁴ 「歐羅巴諸国其政治互に相關干涉し猶春秋列国の如し是を泰西大局又齊盟大局と訳す」(同上書, 44-45 쪽). 또한, 한역 휘튼 『만국공법』 권두의 장사계(張斯桂)에 의한 「만국공법 서」에서도, 유럽을 비롯한 동시대의 “천하대국(大局)”을 “春秋時大列国也”과 유추하여 그리고 있다(앞의 책, 惠頓著、丁韋良訳『万国公法』제 1 권, 1 丁表). 다만 장사계는 거기서 오늘날 “천하대국”인 가운데, “中華首善の区と為す”라고 쓰고 있는데, 그러한 ‘중화’에 관한 논의는 니시 아마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¹⁵ 西周訳『畢洒林氏万国公法』, 19-20 쪽.BA, pp. 42-43.

¹⁶ 위와 같음, 19 쪽. BA, p. 42.

¹⁷ 위와 같음, 27 쪽. BA, p. 49.

¹⁸ 위와 같음, 27-29 쪽. BA, pp. 49-52.

¹⁹ 「然れとも泰西公法にては自主の国相戦ふは彼此とも其理直なりとす(中略)是を以て兩國共に其權亦匹敵なる也」(위와 같음, 57 쪽. BA, p. 90.) .

되지 않는다. 양쪽 교전국은 대등한 지위·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는 중세 이후의 자연법론에 흐르고 있는 정전론의 전통을 물리친다.

그러나 이는 결코 규범없는 힘의 범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의를 앞세워 상대를 악으로 보는 정전론이야말로 섬멸전쟁을 불러 올 위험이 있다. “지금의 문명제국(諸國)”은 교전국 서로가 대등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전쟁의 규칙화, 인도(人道)화를 진행시켜 왔다²⁰. 여기에서 교전법규가 성립한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살인이나 강탈, 독의 혼입 등, 비열한 수단은 금지되었다. “적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염치충신인애(廉恥忠信仁愛)의 도(goede trouw en menschelijkheid)를 잃으면” 안 된다²¹. 여기에서도 또 ‘goede trouw’이라고 하는 문명 공법의 모럴이 제시된다. 게다가 ‘태서공법’에서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전승국이라고 하더라도 적국의 “인신자주의 권리(人身自主の權)”와 “소유안도의 권리(所有安堵の權)”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²². ‘태서공법’은 제국민의 “인신자주의 권리”, “소유권”을 보호한다. 바꿔 말하면, 국민 제권리를 중요시하는 입헌국가가 아니라면 “태서공법을 신봉하는 동맹”에 들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피세링은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에게 유럽근대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유럽 국제법인 ‘태서공법’에 대해 가르쳤다. 그에 따르면, 그것은 세력균형을 배경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모럴과 자유무역, 입헌주의 등 경제적·정치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유럽 문명의 공법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니시와 쓰다에게는 일본을 포함한 비서양 제국(諸國)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심문제가 되었다.

다시 강의로 돌아가면, 피세링은 우선 ‘태서공법’하의 현실에서는 문명화와 국력에 따라서 1 등국가부터 3 등국가까지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유럽 공법의 내부와 외부를 구별한다. “태서공법의 동맹을 맺지 않은 제국(諸國) 즉 일본, 당(唐: 중국), 섬라(暹羅: 태국), 파사(波斯: 페르시아) 등에 있어서 유럽각국(諸國)의 신민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주재하고 있는 사신(使臣) 등에게 부여되는 특례의 권(權)을 가진다”²³. 일본과 중국 등 제(諸)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헌법과 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서양권에서 서양인과 현지 국민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는 “유럽 제국의 신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양인은 자신들의 나라의 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영사재판권의 요구가 정당화되었다. “왜냐면 이 나라들과의 교제는 여전히 태서공법을 기초해서 율(律)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²⁴.

그러나 이는 역으로 비서양제국 측에서 본다면 서양인이 어떠한 무법행위를 한다고 해도 자신들(비서양제국)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평등하지 않은가.

이런 때에 비서양 제국이 자연법인 ‘성리공법’에 기초한 ‘자주권리’를 방패로 삼고 불평등한 조약을 요구하는 나라와는 교제하지 않는다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피세링의 응답이 바로 위에서 본 “교제의 권리”론이다. 분명 자연법론에는 타국과 교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태서공법’에서는 나라를 닫는 행위는 국익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도(人道)에도 어긋난다”. 반대로 교제·교역을 통해서 ‘태서공법의 기초’를

이러한 전쟁관은 슈미트(Carl Schmitt)의 국제법 연구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의 법학·정치학 세계에서는 널리 ‘무차별 전쟁관’으로 이해되고 있다.

²⁰ 西周訳『畢洒林氏万国公法』, 58 쪽. BA, p. 102.

²¹ 위와 같음, 58 쪽. BA, p. 91.

²² 위와 같음, 69 쪽. BA, pp. 108-109.

²³ 위와 같음, 26 쪽. BA, p. 47.

²⁴ 위와 같음, 94-95 쪽.

공유하고 주권국가로서 인정받는다면, 영사재판제도도 철폐된다. 유럽 공법 안에서 살고 있는 피세링에게 있어서 ‘성리공법’과 ‘태서공법’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부에서 본다면, 양자는 모순·대립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대국에게 무력으로 통상조약을 강제하는 경우는 어떨까. 피세링에 의하면, “태서공법의 조규 통습”에서는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왜냐면 “태서공법 본규(本規)”에는 한번 체결한 조약은 양국이 좋아서 체결했다고 판단한다. “기사요협(欺詐要脅)을 구실”로 그것의 파기를 요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그 자신이 주권국가로서의 권리가 결여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준수해야 하는 신의 성실(信實)의 도(道)”에 “배치(背馳)”되는 것이다²⁵.

그러면 무력으로 불평등한 조약을 요구하는 강국에게 전쟁에서 패배하여 강화조약을 맺은 후에 다시금 자국의 정의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가. 이에 관해서도 피세링은 부정적이다. 교전국은 대등한 권리를 가지며 강화조약도 자유의지(vrijwillig)에 의해 맺어졌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패전국은 본의가 아닌 조약까지도 감수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국제법상의 모럴이다²⁶.

이렇게 본다면 유럽 공법의 주변 및 외부에 위치하고 아직 균형의 힘을 가지지 않은 비서양권 국가들에게 있어서 ‘만국공법’은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태서’ ‘열강’에 의한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 아닐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세링 강의는 두 가지 점에서 단순히 강자의 힘의 논리라고 해서 버릴 수 없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래서 문제는 복잡해진다. 첫째로 그것은 교제의 의의를 설명하고, 잔학(殘虐)한 전쟁행위를 금지하고 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일종의 보편성을 가진 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둘째로, 그것은 경제학 강의의 자유무역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 경제학설을 학문적 진리로서 인정한다면 ‘태서공법’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어진다. 여기에 니시와 쓰다가 귀국 후에 몰두하게 되는 과제가 나타난다.

2. 두 가지 ‘만국공법’—중국 경유와 네덜란드 경유—

그렇다면 『피세링씨 만국공법』과의 비교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만국공법, 한역 휘튼 『만국공법』의 수용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²⁷.

휘튼의 원저를 보면, 실은 휘튼도 실정적 국제법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주권국·반주권국·종속국의 구분을 도입해서 정전론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등, 피세링 강의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중국 미국인 선교사 마틴에 의한 한역을 보면, 거기에는 ‘번역’으로 인한 여러

²⁵ 위와 같음, 45-46 쪽. BA, pp. 75-76.

²⁶ 위와 같음, 72 쪽. BA, p.113.

²⁷ 근래 일본에서의 한역 휘튼 『만국공법』 수용에 관한 연구로서는, 井上勝生「万国公法(文獻解題)」『日本近代思想大系 1 開国』岩波書店, 1991 년, 張嘉寧「解説『万国公法』成立事情と翻訳問題—その中国語訳と和訳をめぐって—」『万国公法(文獻解題)』(『日本近代思想大系 15 翻訳の思想』岩波書店, 1991 년), 周圓「丁韞良『万国公法』の翻訳手法—漢訳『万国公法』1卷を素材として」(『一橋法学』제 10 권 제 2 호, 2011 년) 등을 참조.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결코 오역은 아니지만 ‘성법(性法)’ ‘천법(天法)’ ‘천리(天理)’ ‘자연지법(自然之法)’ 등, 유학을 강하게 의식한 역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예를 들면 서양 제국과 중국과의 외교에 대해서도 원문과 한역에는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²⁸. 원문과 비교해 보면(자세하게는 주 28 을 참조), 한역에서는 중국 종래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its inveterate anti-commercial and anti-social principles)가 약해졌으며, 조약체결에 따른 서양 ‘문명’ 제국과 비서양권의 힘의 비대칭성(the former has been compelled to abandon…)도 자취를 감췄다. 결과적으로 만국공법의 공평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마틴이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려고 한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²⁹.

그리고 이 서적이 바다를 건너 동시대의 일본에 수용되면서 한역 해석이 더욱더 다양해진다. 당시 일본의 한역 휘튼 『만국공법』에는, 일본어 번역이나 주해(注解)라는 형태로 새로운 해석이 더해졌다. 예를 들면, 1876 년에 한학자 다카타니 류슈(高谷龍洲)가 훈점(訓点) · 주해를 달고, 나카무라 마사나오가 비열(批閱)한 『만국공법 여관(万国公法蠡管)』이 출판되었다. 나카무라는 그 서문에서 “확실히 만국공법은 공(公)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私)의 옳고 그름을 바로잡는 도구이다. (중략) 그렇기 때문에 강(強)은 약(弱)을 괴롭히지 못 한다”라고 적는다. 그런 다음에 “아, 공법의 학문을 더욱더 정밀하게 하여 완전구비(完善具備)하면, 이를 가지고 세계는 미락(美樂), 천국(天國)과 같이 된다”고 주장했다³⁰.

이렇듯 휘튼의 『만국공법』은 마틴의 한역을 통해 도쿠가와 말기·메이지 초기의 일본인들 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난해한 텍스트의 성격이 더해져, 특히 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던 학자들 중에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을 요구하는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종종 증폭되어, 원본 텍스트와 다른 해석으로 읽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유학자들이 추상적인 논의를 좋아해서 현실정치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일면적(一面的)이다. 실제로 위에서 서문을 쓴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1866 년에 도쿠가와 정부가 영국에 유학생으로 파견하였는데, 런던에서 약 2 년간 체류하며 빅토리아 중기의 정치문화를 견문했다. 그는 유학을 통해 유럽사회 윤리의 근원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유학과 기독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윤리를 모색했다. 귀국 후에는 밀(John Stuart Mill)의 *On Liberty* 를 번역출판(나카무라 마사나오 역 『自由之理』) 했다.

흥미로운 것은, 도쿠가와 정치체제의 학문소(學問所)인 성당 · 쇼헤이코우(昌平黌)의 유학자로서 중국 고전세계에 깊은 조예가 있었던 나카무라 마사나오는 유학 도중에

²⁸ Henry Wheaton, *op.cit.*, p. 22. 惠頓著, 丁韋良訳, 앞의 책 『万国公法』 제 1 권, 12 丁裏) .

‘The same remark may be applied to the recent diplomatic transactions between the Chinese Empire and the Christian nations of Europe and America, in which the former has been compelled to abandon its inveterate anti-commercial and anti-social principles, and to acknowledge the independence and equality of other nations in the mutual intercourse of war and peace.’

「歐羅巴亞美利加諸國奉耶蘇之教者。與中國邇來亦共議和約。中國既弛其舊禁。與各國交際往來。無論平時戰時。要皆認之。為平行自主之國也。」

²⁹ 장가영(張嘉寧)은 마틴의 번역 동기의 하나로 중국인에게 기독교 정신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서간 등의 자료로부터 밝혔다 (張嘉寧, 앞의 논문, 386 쪽) .

³⁰ 惠頓著, 重野安繹訳述 『和訳万国公法』 卷 1, 鹿兒嶋藩蔵梓, 1870 년 경, 筑波大学中央図書館蔵, 3 丁裏.

³⁰ 위와 같음, 「序」, 2 丁裏-3 丁表.

상하이와 홍콩에서 중국 관리들과 필담을 나누고, 홍콩의 영화서원(英華書院)을 방문하여 교장이었던 선교사 레그(James Legge, 理雅各)의 중국고전연구와 영역주해(英訳注解)를 접했다³¹. 나카무라는 영국에서도 홍콩총독을 경험한 중국연구의 대가·데이비스(John F. Davis)와 교류했고, 또 그 후에는 마틴이 중국에서 집필한 기독교 교리서 『천도소원(天道遡源)』의 훈점본(訓点本)도 간행하였다. 이러한 서양·중국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카무라에게 있어서, ‘개국(開国)’으로 인한 문화접촉을 통해 만국에 공통되는 ‘법리’를 탐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감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여기에 니시와 쓰다와는 다른 또 하나의 유학경험이 있다.

이에 비해 니시와 쓰다가 배운 피세링의 만국공법 강의에는 적어도 나카무라와 같은 해석이 등장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는 메이지 초기의 정치상황 속에서 유학 성과를 어떻게 실천하고 또 어떤 논쟁을 펼쳤던 것일까.

3. 『메이로쿠 잡지(明六雜誌)』와 문명화 구상의 상극

—니시 아마네·쓰다 마미치와 나카무라 마사나오, 후쿠자와 유키치—

1868 년, 도쿠가와 정권이 와해되고 메이지 정치체제가 성립한다. 개국화친을 내걸어 서양 제국(諸国)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을 정치문제로 삼는 신정부에게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의 국제법 학식은 귀중한 것이었다. 메이지 정부는 즉시 쓰다 마미치를 조약개정 교섭을 준비담당하는 취조괘(取調掛:조사계)로 초청하였다. 그후 쓰다는 ‘국제법의 권위’로서 외무권 대승(權大丞)에 임명되어 청일수호조약 체결교섭에 관여하였다. 또한 니시 아마네는 육군성의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밑에서 외교전략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런데, 당시 일본사회는 수출입 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메이지 정부 내부에서도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은 보호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양 각국의 공사(公使)들은 자유무역을 방패로 삼아 무역 확대를 더욱더 주장했으며 거류지 밖에서의 외국인 내지여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와중에,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는 1874 년부터 『메이로쿠 잡지』에 논설을 연달아 발표한다. 거기에서 니시와 쓰다는 보호세 도입을 비판하고, 자유무역과 내지 여행 실시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쓰다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점차 수출입의 불균형을 정정하고 사회 전체를 개화로 유도할 것이다. 이는 “자연의 천율(天律)”이고³², 오늘날의 수입초과는 오히려 문명화로 전진하는 국민들의 “진취적인 기상(氣象)”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³³. 지금 현재 상황을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다음 쓰다는, “영사재판권의 철폐와 관세자주권의 회복 등의 불평등조약의 개정이 없는 한 내지여행은 용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자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쓰다는 설명한다. “외국과의 교제는 자연의 운보(運歩)”이며, 우선은 내지여행을 승인하고 서양인과의 교제를 깊이하여 신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십년 뒤”에는 반드시 “일반 인민 중 지식개화층도

³¹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영국유학에 따른 ‘중국’ 경험에 대해서는, 松沢弘陽『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経験』岩波書店, 1993 년, 제 2 장, 이 자세하다.

³² 津田真道「保護税を非とする説」(山室信一, 中野目徹校注, 『明六雑誌』上巻, 岩波文庫, 1999 년), 175 쪽.

³³ 津田真道「貿易權衡論」(위와 같음 『明六雑誌』中巻, 岩波文庫, 2008 년), 340 쪽.

증가”한다. 이 때 처음으로 일본은 조약개정을 실현할 수 있다. “나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하자면, 내가 원래 갈망하던 우리 정부가 재판·정세(征税)의 두 권리를 받아들이고 오대주(五大州) 중 독립불기(不羈)의 자주제국(帝國)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단연코 내지여행을 허(許)해야 할 것이다”³⁴.

이상과 같이 니시와 쓰다는 피세링의 만국공법 강의와 자유주의적인 경제론을 배경으로 ‘태서공법’에 입각하여 ‘교제’와 ‘통상교역’을 확충하고 자국의 문명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신실(信實)’을 획득함으로써 독립자주국으로서의 조약개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그들의 주장은 아직 일본은 개화 도중에 있다는 인식을 매개로 하여 주권국가로서의 관세자주권의 회복을 뒤로 미루고 영사재판권을 감수하자는 태도와 표리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쓰다와 니시의 대외정책론을 둘러싸고, 『메이로쿠 잡지』를 중심으로 논쟁이 일어났다. 쓰다나 니시처럼 자유무역론을 주장한 것은 나카무라 마사나오였다. 그는 바스티아의 *Sophismes Economiques* 을 하야시 마사아키(林正明)가 역술한 『經濟辨妄』의 서문에서, “경제의 길은 유수(猶水)와 같아, 그 자연의 힘에 따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보호세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였다³⁵. 그러나 나카무라 마사나오의 자유무역론을 지탱하고 있는 ‘자연’관(觀)은, ‘천리(天理)’에 기초한 국제질서규범으로서의 만국공법관에 의한 것으로, 쓰다나 니시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반해, 논설 「내지여행 니시 선생의 설(說)을 반박한다」 등을 집필하고, 쓰다와 니시에게 근본적인 비판을 가한 것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였다. 후쿠자와에 의하면, 서양 학문과 정신 등의 ‘무형의 기풍(氣風)’을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역 등의 ‘유형’의 외국 교제는 현재 일본에게 있어서 ‘손(損)만 있고 득(得)이 없다’. 게다가 영사재판제도에 의해 외국인과 소송은 너무나도 곤란해져 있고, “무기무력(無氣無力)”한 인민은 더욱더 비굴해졌다. 내지여행은 시기상조이며, 우선은 “오로지 안(內)을 가다듬고 일반 인민들의 기력을 길러야”한다³⁶. 이렇게 주장한 후에 후쿠자와는 니시에 대해서 외국과의 교제라는 것은 결국 “힘이 곧 권리이다(Power is Right), 권력은 정리의 근원”이 아닌가라고 논박한다³⁷. 이렇게 후쿠자와는 니시와 쓰다가 네덜란드에서 배운 자유무역·만국공법론을 ‘태서’의 ‘권력’에 의해서 창출된 이데올로기적인 담론에 불과하다고 갈파(喝破)하였으며, ‘외국 교제’와 ‘독립’ 사이의 날카로운 긴장과 딜레마를 직시했다.

게다가 후쿠자와는 『文明論之概略(文明論之概略)』에서 서양 제국(諸国)에 의한 식민지 지배의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유럽인이 지나가는 곳은 토지가 생력(生力)을 잃고, 풀이며 나무며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심하게는 그곳의 인종을 섬(殲)멸케 한다.” 이제는 “지나제국(支那帝國)도 확실히 유럽인의 전원(田園)”이 되려 하고 있다³⁸. 그리고 후쿠자와는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도 “천지의 공도(公道)”를 내걸고, “자유롭게 무역하고 자유롭게 왕래”해야 한다는 니시 아마네 등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후쿠자와에게는 그들의 논의가 “마음씨 착한 사람의 논의”이며, “너무나도 물정에 어둡다”³⁹. 만약 서양 제국(諸国)이 “천지의 공도”에 기반한 교제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따르자.

³⁴ 津田真道「内地旅行論」(위와 같음『明六雜誌』中卷), 288-289 쪽.

³⁵ 中村正直「經濟弁妄序」『敬字文集』第3冊卷7, 吉川弘文館, 1904년, 2丁裏.

³⁶ 福澤諭吉「外国人の内地雜居許す可らざるの論」(慶應義塾編『福澤諭吉全集』再版, 第19卷, 岩波書店, 1971년), 518-524 쪽.

³⁷ 福澤諭吉「内地旅行西先生の說を駁す」(앞의 책『明六雜誌』中卷), 336-337 쪽.

³⁸ 福澤諭吉著『文明論之概略』松沢弘陽校注, 岩波文庫, 1995년, 291 쪽.

³⁹ 위와 같음, 292 쪽.

하지만 지금 서양제국의 행동은 “사정(私情)”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은 우선 목적을 “독립”에 두고, 일부러라도 “봉건시대”의 “도덕적 유대 (Moral tie)”였던 “군신의 의(義), 선조의 유서(由緒), 상하의 명분, 본말(本末)의 차별”을 “문명의 방편”으로 동원하여 “보국심(報國心)”을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⁴⁰.

그럼 이상의 논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니시 아마네와 쓰다마미치, 나카무라 마사나오, 후쿠자와 유키치, 각각의 만국공법관(觀)을 둘러싼 삼극(三極)의 대립도식으로부터 해석해 보자.

우선 나카무라와 니시·쓰다의 상이(相違)에 대해서. 후쿠자와 유키치가 “천리의 공도”, “자유무역”을 주장한 학자들을 비판했을 때, 그는 나카무라 마사나오도, 그리고 니시·쓰다의 주장을 같은 틀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역 휘튼 『만국공법』을 매개로 한 나카무라의 규범적인 ‘만국공법’ 이해와 니시·쓰다가 배운 ‘태서공법’론에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나카무라 마사나오도 국제사회에서의 권력정치의 횡포를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만국공법’ 안에 유학으로 통하는 ‘천리(天理)’에 기반하며 ‘만국’이 따라야 하는 질서규범을 찾았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의 ‘자연’의 ‘리(理)’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유무역의 적극적인 의의를 주장했다. 여기서는 ‘개국’을 통한 동아시아와 서양의 사상적 전통을 가교(架橋)하는 보편적 규범을 석출(析出)하려고 하는 도덕철학자로서의 나카무라의 모습이 보인다.

이에 반해, 니시와 쓰다에게 있어서 나카무라와 같은 이상주의적인 ‘만국공법’ 해석은 그들이 네덜란드에서 직접 배운 동시대 유럽에서 구체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국제법 이해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나카무라와 달리, 니시·쓰다, 그리고 후쿠자와는 서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소재를 직시하고 그 권력구조를 안에서부터 해명하면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도를 모색했다. 이러한 점에서 니시·쓰다와 후쿠자와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럽 국제법에 대한 태도는 대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쿠자와의 니시와 쓰다에 대한 비판은 흥미롭다. 후쿠자와는 니시 아마네에 대해서 국제정치란 “힘이 곧 권리이다(Power is Right)”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니시와 쓰다는 피세링 강의를 통해 바로 그 ‘태서공법’이야말로 ‘힘이 곧 권리이다(Power is Right)’의 역사적 소산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니시와 쓰다는 유럽 국제법을 받아들여 외국과의 교제를 통해 자유무역과 입헌주의에 입각한 문명사회의 제도적 틀을 확립하는 것 외에는 일본이 독립국가로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힘(Power)’의 원천에는 각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헌주의와 자유경제론이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거기에 문명적 가치를 구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명’과 ‘독립’의 긴장관계를 내다 본 후쿠자와는 일본이 서양제국(諸國)의 ‘힘(Power)’에 휩쓸리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 “안을 가다듬고”, “보국심”을 함양하며 독립국가로서의 기반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후쿠자와는 1878 년에 “백권(百卷)의 만국공법이 수발(數門)의 대포만 못하다”고도 주장했다⁴¹.

이러한 그들의 논의의 응수는 대외정책논쟁을 넘어 각각의 문명화 구상과 구분하기 어렵고

⁴⁰ 위와 같음, 304 쪽.

⁴¹ 福澤諭吉「通俗國權論」(앞의 책『福澤諭吉全集』제 4 권, 岩波書店, 1970 년), 637 쪽.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또한 유럽 국제체계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이 어떻게 ‘만국공법’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지극히 곤란한 정치사상적 과제를 체현한 것이기도 했다.

마치며

본 보고서에서 논의해 온 것처럼, 19 세기 후기 일본에서의 국제법 수용은 서양 제국(諸国)과 조약 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긴급하고도 실천적인 정치과제였다. 그리고 또 그 근저에는 서양세계의 기초를 만들어온 법·도덕 관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상과제가 존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국가의 존속을 위해 취해야 할 정치적 선택지를 둘러싸고 다양하면서도 고도의 논쟁이 펼쳐진 것이다.

쓰다와 니시가 ‘국제법의 권위’라고 여겨져, 외무성과 육군성에 관료로 등용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서양 국가들과의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진행하기 위해 서양의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메이지정부는 서양 기원의 강자의 논리와 보편적 규범을 둘 다 갖추고 있는 당시의 국제법의 특징과 한계를 숙지하고, 국제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써 그것을 활용했다. 그리고 그러한 학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국제법을 방패로 삼아 조약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중국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동아시아 질서의 개변(改変)을 시도했다. 상징적인 것이 청일전쟁이다.

1894 년, 일본은 영국과 영일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여 불평등조약의 하나였던 영사재판권의 철폐를 실현했다. 그 직후에 일본정부는 “만일 국제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각각 권능(權能)에 응하여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반드시 유루(遺漏)가 없도록 하라”며 국제법 준수를 내건 선전포고를 하고 청일전쟁에 돌입했다⁴². 이렇게 해서 일본이 ‘태서공법의 동맹’에 참가하는 과정은 또한 동아시아 세계에 새로운 대립과 주변을 창출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이렇듯 근대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말기부터 1945 년의 패전,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법과 어떻게 대면하는가 가 항상 중요하고도 심각한 양의성(兩義性)을 가지는 정치사상적 과제이다. 니시 아마네와 쓰다 마미치의 만국공법 수용은 그 출발점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⁴² 村上重良編「清国に対する宣戦の詔」『正文訓読 近代詔勅集』新人物往来社, 1983 年, 159 쪽.

【발표 논문 2】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 3 국의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과 한계

한승훈

1. 들어가며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근대사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어 중 하나는 불평등조약(Unequal Treaties)이다. 세계사에서 불평등조약이 없었던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에서는 19 세기 영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이 청국과 일본, 혹은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을 특징짓는 용어로 불평등조약을 규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불평등조약을 관철시킨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청국, 일본, 조선에 불평등한 조약을 관철시켰다. 영사재판권, 관세자주권 상실, 최혜국 대우, 개항장 설정 등은 조약의 불평등성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조항이었다. 그 중에서 영국은 최혜국 대우를 통해서 다른 서구 열강이 청국, 일본과 체결한 조약을 균점하였다. 이는 최혜국 대우를 확보한 국가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영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은 조약의 상호 참조 및 균점의 과정을 통해서 청국과 일본에 거의 동일한 내용의 불평등조약을 관철시켰으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를 자유무역이 관철되는 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후대 연구자들은 19 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에 불평등조약체제가 성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¹

지금까지 연구는 동아시아 3 국이 불평등조약체제에 편입된 사실에 동의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자국사 중심으로 불평등조약을 이해하였다. 한국은 1910 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출발점으로 불평등조약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도 열강의 반식민지(半植民地)로 전략한 결정적 기원으로 불평등조약을 강조해 왔다. 반면에 일본은 1894 년 영국과 조약 개정을

¹ John K. Fairbank, "The Creation of the Treaty System,"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0. Late Ch'ing, 1800-1911. Part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李炳天, 〈開港과 不平等條約體制의 확립〉, 《경제사학》 8 (경제사학회, 1984). Peter Duus, Ramon H. Meyers, and Mark R. Peattie (eds.). *The Japanese Informal Empire in China, 1895-1937*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金基赫, 〈開港을 둘러싼 國際政治〉, 《韓國史市民講座》 7 (一潮閣, 1990); 稻生田太郎, 《東アジアにおける 不平等條約體制と近代日本》(岩田書院, 1995).

달성함으로써, 서구 열강과 불평등 관계를 점차 극복하고 제국주의 열강에 합류한 측면을 부각시켰다. 2000년대 이후로는 조약의 불평등성 및 외부의 침략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조선, 일본, 청국 내부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불평등조약 연구의 외연이 확대되기도 했다.²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관점을 인정하긴 했지만, ‘동아시아’를 하나의 조약 공간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부족하였다. 조선, 일본, 청국이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공유하였다는 역사적 경험에 주목하기 보다는, 개별 국가들이 체결한 불평등조약에 주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즉 동아시아 3국이 ‘불평등조약’이 아닌 ‘불평등조약체제’를 인식하고 그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을 다룬 연구는 미흡하였던 것이다.

사실 동아시아 3국이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인식을 공유한 사례는 동아시아 3국의 교섭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본과 청국은 1871년 「청일수호조규(淸日修好條規)」를 체결하면서, 서구 열강이 자신들에게 관철시킨 불평등한 조약 내용을 일부 배제하고자 했다. 조선은 일본과 1876년에 체결한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개정하기 위해서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1880년 수신사로 일본 도쿄에 도착한 김홍집(金弘集)은 주일 청국공사 허루장(何如璋)으로부터 동아시아에 관철되었던 조약의 불평등성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 이를 답습하지 말 것을 충고 받았다.

그렇다면 조선, 일본, 청국이 조약의 불평등성을 공유하는 사례가 갖는 의미를 무엇일까?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 3국이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조약과 그 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모색되지는 않았을까?

본 발표문은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 3국의 불평등조약 극복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² Dong Wang, *China's Unequal Treaties: Narrating National History* (Lanham, MD: Lexington Books, 2008). Michael R. Auslin, *Negotiating with Imperialism: The Unequal Treaties and the Culture of Japanese Diploma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五百旗頭薫, 《条約改正史—法權回復への展望とナショナリズム—》(有斐閣, 2010). 酒井裕美, 「開港期朝鮮の戰略的外交, 1882~1884」(大阪大學出版會, 2016). 李穗枝, 『朝鮮の対日外交戰略 - 日清戦争前夜 1876-1893 -』(法政大學出版局, 2016). 박한민, 「조일통상장정 운영과 조일의 대응 - 제 16 관, 제 18 관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63 (동국사학회, 2016). 박한민, 「1883년 조일통상장정 체결과 각국의 대응」, 『역사와경계』 111 (부산경남사학회, 2019)

한편 미타니 히로시(三谷博)는 조약 체제가 불평등한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였다. 영사재판권의 사례를 들면서 그는 조약의 ‘불평등’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전망하였다. 발표자 역시 미타니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나, 한국과 중국에서 이데올로기적 발현은 일본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비교사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三谷博, 「東アジアの國際秩序と條約體制—近世から近代へ」, 『東アジア近代史』 13, 2010.

가능성이 갖는 현재적 의의를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880 년 조선의 대서구 문호개방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본문을 전개하고자 한다.³

2. 1880 년 수신사 김홍집과 주일청국외교관 만남 :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 모색

1880 년 5 월 조선 정부는 김홍집을 수신사로 임명하였다. 「강화도조약」의 개정을 통해서 대일무역의 무관세규정과 미곡수출이 오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김홍집은 강화도조약의 개정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일본 외무성이 김홍집이 조약 교섭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 협상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일본과의 협상이 지체되었던 7 월 중순부터 김홍집이 수차례 방문한 곳이 있었다.⁴ 주일 청국공사관이었다. 그 곳에서 그는 청국 공사 허루장에게 근대적인 관세 제도를 배웠다. 허루장은 관세 정책의 기본 원칙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었다. 먼저, 국가재정과 민생경제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자주권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할 것, 둘째, 품목별로 수입 관세율을 차등 적용시킬 것, 셋째, 저율 내지는 무관세에 근거한 수출 관세율을 통해서 수출증대를 꾀함으로써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이었다.⁵ 즉 그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세자주권에 입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⁶

김홍집은 관세자주권을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폐단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 폐단을 설명한 이는 청국 공사관의 참찬관 황준센(黃遵憲)이었다. 그는 협정관세에 따른 저율의 수입관세율이 무역 적자의 심화와 금은의 유출에 따른 백성들의 곤궁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민란과 같은

³ 본 발표자는 한국근대사 전공자로서, 조선과 영국의 외교관계를 주요 연구테마로 하고 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일본 및 중국 측 사료에 대한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 아울러 국사들의 대화의 취지에 맞게, 일본사와 중국사 전공자들이 관련 연구 시각 및 이를 보완하는 사료를 제시해 준다면,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1880 년 초반 동아시아 3 국의 불평등조약 인식에 새로운 상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바이다.

⁴ 『修信使日記』 卷2, 「大清欽使筆談」, 1880 년 7 월 16 일[『金弘集遺稿』(고려대학교 출판부, 1976); 송병기 편역, 『개방과 예속』(단국대학교출판부, 2000), 26 쪽, 이하 「大清欽使筆談」으로 표기, 각주의 쪽수는 『개방과 예속』을 따름]; 한편 김홍집과 허루장, 황준센의 만남 및 필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현주, 「제 2 차 修信使의 활동과 『朝鮮策略』의 도입」, 『한국사학보』 25(2006), 293-297 쪽.

⁵ 「大清欽使筆談」, 1880 년 7 월 21 일, 26 쪽.

⁶ 「大清欽使筆談」, 1880 년 8 월 2 일, 35 쪽.

국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⁷

허루장과 황쑤셴은 김홍집에게 조선이 관세자주권에 입각한 관세정책과 세칙 재정을 강조하였다. 그래야만 조선이 무역적자에 따른 폐단을 막고 국가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허루장은 김홍집의 귀국을 앞두고 만난 자리에서 “오직 절실히 기억하고 기억할 것”으로 타국과 체결한 조약에 관세자주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⁸ 아직은 관세제도에 정통하지 않았던 김홍집에게 관세자주권만큼은 분명히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허루장은 김홍집에게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만을 알려주지 않았다. 조선의 향후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안도 알려주었다. 첫 번째 방안은 일본의 대서구 조약 개정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었다.⁹ 일본 정부는 1880 년 7 월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에 조약개정안을 제출하였다.¹⁰

조약의 주요내용		일본에서 시행중인 조약	서구열강에 제출한 일본측 조약개정안(1880)
세 칙	수입 관세율	5%	약품, 광물, 곡물 외 : 5% 금속품, 의복류 외: 10% 천연기름, 종이 외: 15% 가축류, 유류, : 20% 사치품 의류 외 : 25% 담배, 주류 외 : 30%
	수출 관세율	5%	5%
	면세품		
	세칙 변경	협정관세	관세자주권 회복
내지 통상		금지	허가
개항장 무역		허가	허가

표 1. 일본에서 시행중인 조약 내용과 1880 년 일본 정부가 제출한 조약 개정안

일본정부가 제출한 조약개정안의 핵심은 수입관세율을 평균 12.5%로 인상하는 안을 핵심으로

⁷ 「大清欽使筆談」, 1880 년 7 월 21 일, 27 쪽.

⁸ 같은 사료.

⁹ 「大清欽使筆談」, 1880 년 7 월 18 일, 27 쪽.

¹⁰ 日本學術振興會 編, 『條約改正關係日本外交文書別冊 約改正經緯概要』 (日本學術振興會, 1950), 183 쪽.

하는 관세자주권의 회복에 있었다. 품목별 관세율을 차등으로 부과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보호 및 금은의 유출을 막고자 하였다. 즉 일본은 관세자주권을 회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김홍집은 일본 측 교섭 대상자인 하나부사 요시토모(花房義質)를 만난 자리에서 “귀국의 조약 개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우리도 또한 마땅히 이에 준할 것”이라고 통지하기도 했다.¹¹

허루장이 알려준 두 번째 비책은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과 먼저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그는 “근래에 일본인들이 의론하여 고치려는 조약을 미국은 이미 허락”하였다는 점을 김홍집에게 부각시켰다. 이어서 그는 조선이 일본의 조약 개정안을 바탕으로 미국과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면, 미국이 조선 측 조약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나아가 그는 「조미조약」이 체결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그 조약에 의거해서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¹² 즉 허루장은 조선이 일본의 조약 개정을 승인해 준 미국과 먼저 조약을 체결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르게 되어서, 조선이 불평등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일본의 조약 개정을 승인해 준 요체는 무엇인가? 1878년 7월 25일 일본과 미국은 조약 개정에 관한 약서, 즉 「일미관세개정약서(日米關稅改定約書; 吉田・エヴァーツ條約)」를 체결하였다.¹³ 그 약서의 1 조에서 일미 양국은 일본의 개항장에서 5%의 수입관세율을 관철시켰던 개세약서와 일본이 자주적으로 관세 및 통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도록 정한 1858년 「일미수호통상조약」의 효력을 중지시키는데 합의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일본에 관세자주권을 비롯해서 무역에 관한 각종 규정을 일본이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¹⁴

¹¹ 「大清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27-28 쪽; 「大清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31 쪽.

¹² 「大清欽使筆談」, 1880년 7월 21일, 30 쪽.

¹³ 협약의 원 제목은 “Convention Revising Certain Portion of Existing Commercial Treaties and Future Extending Commercial Intercours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이다. 협약의 조문은 미국 의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loc.gov/law/help/us-treaties/bevans/b-jp-ust000009-0377.pdf>)

¹⁴ “1. It is agreed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hat the Tariff Convention, signed at Yedo on the 25th day of June, 1866 or the 13th of the 5th month of the second year of Keio, by the respectiv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France and Holland on the one hand, and Japan on the other, together with the schedules of tariff on imports and exports and the bonded warehouse regulations, both of which are attached to the said convention, shall hereby be annulled and become inoperative a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under the condition expressed in Article X of this present convention; and all such provisions of the treaty of 1858, or the fifth year of Ansei signed at Yedo, as appertain to the regulations of harbors, customs and taxes, as well as the whole of the

그런데 10 조에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들이 제 1 조에 입각한 협약 내지는 조약 개정의 동의를 할 때만 「일미관세개정약서」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를 구축하였던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등이 조약 개정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일본의 협정은 사실상 사문서나 다름없는 것이다. 실제 서구 열강이 일본의 관세자주권 획득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일미관세개정약서」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8 년 「일미관세개정약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조약 개정의 한 단계를 밟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수 있으며, 허루장의 인식처럼 동아시아 조약체제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준 것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일미관세개정약서」는 조선이 대서구 문호개방을 단행할 때, 첫 번째 국가로 미국을 선택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3. 1882 년 조선의 대서구 문호개방 :

상호 공유를 통한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기회 마련

사실 1880 년 김홍집의 수신사행 이전에도 관세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가 있었다. 1874, 5 년 베이징의 영국영사 메이어스(W. F. Mayers) 에게 영국의 대조선 포함외교(砲艦外交, gunboat diplomacy)를 건의하였던 오경석(吳慶錫)이었다. 그는 청국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조선이 ‘균형 무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무역 수지 적자로 금은이 유출될 경우 국내 재정이 고갈되는 경우를 경계하였다. 나아가 그는 통상을 통해서 조선의 부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다.

조선은 1880 년 김홍집의 수신사행을 기점으로 관세를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통상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그는 조선이 장차 일본과 조약 개정을 할 때, 상호 불평등이 제거된 「청일통상장정(淸日通商章程)」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⁵ 1881 년 일본에 도착한 조사시찰단의 민종묵(閔種默)과 이현영(李鑣永)은 근대적인 관세제도를 비롯해서 관세자주권을 상실한 청국과 일본이 5%의 수입관세율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확인할 수

trade-regulations, which are attached to the said treaty of 1858, or the fifth year of Ansei, shall also cease to operate.

It is further understood and agreed that from the time when this present convention shall take effect, the United States will recognize the exclusive power and right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 adjust the customs tariff and taxes and to establish regulations appertaining to foreign commerce in the open ports of Japan.”

¹⁵ 김홍집, 1880, 「修信使金弘集聞見事件(別單)」(송병기 역, 2000, 『개방과 예측』, 단국대학교 출판부, 75 쪽).

있었다.¹⁶

조약의 주요내용		제 3 차 수신사 조병호가 작성한 조약 초안 (新修通商章程草案, 1881. 9)	서구열강에 제출한 일본측 조약개정안(1880)	청, 일본이 서구열강과 체결한 조약
세 칙	수입 관세율	선박용 : 5% 일반상품 : 10% 사치성상품 : 25% 유 류 : 35%	약품, 광물, 곡물 외 : 5% 금속품, 의복류 외: 10% 천연기름, 종이 외: 15% 가축류, 유류, : 20% 사치품 의류 외 : 25% 담배, 주류 외 : 30%	5%
	수출관세율	5%	5%	5%
	세 칙의 변경	조선정부가 정해서 해당국에 통보한다.	관세자주권 회복	협정관세

표 2. 「신수통상장정초안」, 1880 년 일본의 조약개정안, 그리고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중인 조약
비교

그 결과 조선은 1881 년 제 2 차 수신사 조병호(趙秉鎬)가 일본 정부에 조선 측 개정안(「신수통상장정초안(新修通商章程草案)」)을 제출할 수 있었다. 미국과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임하기 위해서 텐진을 방문한 김윤식(金允植)은 이동인(李東仁)이 서구 열강과 조약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조약 초안을 리홍장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⁷

「신수통상장정초안」은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로 정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5~35%로 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동인이 작성한 초안에서도 주요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를 부과하고 있다. 즉 조선은

¹⁶ 한승훈, 「朝英條約(1883. 11)과 불평등조약체제의 재정립」, 『한국사연구』 135(2006), 225~226 쪽.

¹⁷ 현재 이동인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초안의 전문은 확인이 불가하다. 다만 1880 년 11 월에 이동인이 제시했던 초안을 보고 이를 요약한 주일 영국 대리 공사 케네디(Kennedy)의 보고서와 1882 년 2 월(음력 1881 년 12 월)에 이동인 초안을 보고 리홍장(李鴻章)이 평가한 기록을 김윤식(金允植)이 남긴 『陰晴史』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Kennedy to Granville, Tôkiô, November 21, 1880(Received January 3, 1881), Very Confidential. No.179, FO 46/258; 宋炳基, 「金允植 李鴻章의 保定 天津會談(上): 조미조약 체결(1882)을 위한 조청교섭」, 『東方學志』 44(1984), 184~185 쪽.

청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5%의 수입 관세율을 조선의 세칙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청국과 일본이 입었던 무역상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미국과 조약을 시작으로 영국(1882년 6월 6일), 독일(1882년 6월 30일)과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선이 영국, 독일과 체결한 조약은 사실상 「조미수호통상조약(이하 조미조약)」과 동일하였다. 수입관세율 규정¹⁸도 같았으며, 미국, 영국, 독일은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인정하였다. 1880년 허루장이 김홍집에게 낙관하였던 내용, 즉 다른 국가들도 「조미조약」에 의거해서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었다. 즉 조선은 「조미조약」을 통해서 청국과 일본이 영국을 위시한 서구 열강으로부터 강요당한 조약의 불평등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조미조약」을 중재하였던 청국에게도 기회였다. 리홍장(李鴻章)은 텐진에서 미국 전권대사 슈펠트(R. W. Shufeldt)와 「조미조약」 체결을 위한 중재를 진행하였다. 그 때 리홍장은 조선의 관세자주권과 10, 30%의 수입관세율 등을 조약 초안에 명문화함으로써, 조선에 불평등한 내용을 조약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그 의도와 관련해서는 1880년 말 허루장이 리홍장에게 보낸 「再上李伯相論朝鮮通商書」가 주목을 요한다.¹⁹ 그 서신에서 허루장은 청국이 조선과 서구 열강의 조약 체결을 중재하였을 때, 5가지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썼다. 그 중 4번째는 영사재판권을 멸살(滅殺)하는 것이었으며, 5번째는 청국이 서구열강과 체결한 불평등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청국은 자국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조미조약」 체결을 중재하고 그 과정에서 조선에 불평등한 내용을 배제했던 것이다.

4. 맺음말을 대신해서

1880년대 초반 동아시아에서는 불평등조약체제의 개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조미조약」은 조약의 불평등한 내용을 배제 혹은 개정하려는 조선, 청국, 일본의 희망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영국이 동아시아에서 시행중인 조약의 내용을 집약해서 반영한 「제 2차 조영수호통상조약(1883)(이하 제 2차 조영조약)」을 조선에 관철시킴으로써,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단초들이 자리해 있었다.

¹⁸ 일상용품의 수입관세율을 10% 이하, 사치품(담배, 술 등)의 수입관세율을 30% 이하로 규정.

¹⁹ 송병기, 「(駐日清國公使 何如璋의 「主持朝鮮外交議」에 대하여), 『동양학』 11, 1981, 228 쪽.

임오군란으로 촉발된 조선을 둘러싼 청일 갈등의 고조,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 강화에 따른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관철,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부정한 「조일통상장정(1883)」 체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뿐만 아니었다. 미국은 조약 비준 이전부터 최혜국 대우 조항을 근거로 「조미조약」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제 2 차 조영조약」의 균점으로 뜻한 바를 이루었다.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는 조선의 관세자주권을 부정하고 주요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10%에서 7.5%로 낮춘 영국 전권대사 파크스(H. S. Parkes)의 조약안을 승인하였다. 그 이유는 청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즉 각 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조선의 대서구 문호개방 과정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불평등조약체제의 극복 가능성은 점차 사라져 갔던 것이다.

그렇기에 1880년대 초반 잠깐 등장하였다가 기억에서 사라진 일들을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가 ‘불평등조약체제 극복 가능성’을 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하의 내용들은 부족하지만 다른 발표자 및 참가지들이 함께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 3국의 경쟁과 갈등의 근현대사 이면에 감춰진 다양한 모습, 특히 상생의 공존과 공영의 공간으로 동아시아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 내지는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학자들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s)를 통해서 상호 공감과 소통의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오늘날 역사적 갈등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본 발표문은 동아시아 3국의 서양인식을 밝히는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그 중에서 불평등조약과 관련해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이라는 관점이 강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3국뿐만 아니라 영국을 비롯한 서구권의 다양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유한다면, ‘불평등조약’이 갖는 서양의 ‘침략적 구도’ 속에 감춰진 화해와 평화를 지향한 사례가 있을까? 아니 사례를 찾는 것이 가능할까?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공유하기를 기원하면서 본 발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발표 논문 3】

마등경영(魔灯鏡影): 18-20 세기 중국의 매직랜턴 방영(放映), 제작 그리고 전파

쑨 칭(孫青)

[번역: 차이 리엔춘]

17 세기 중엽, 유럽인들은 볼록렌즈를 이용한 투영장치를 발명했다. 처음에는 “환상(幻像)”과 “신의 기적 (神跡, Miracles)” 재현에 이용되고, 인간으로 하여금 육안으로 볼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를 감지할 수 있게 했다. 초창기에 사람들은 이것을 “무서운 랜턴”이라고 불렀다.¹ 이런 장비는 학자와 유랑극단, 장인들 그리고 예수회 선교사와 광학자들을 따라 유럽전역으로 신속히 유행했으며, 바로크 시기의 선교사와 마술사들이 열중하는 도구였다. “신의 기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매직 랜턴(Magic Lantern)”이라는 고정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² 매직 랜턴은 예수회 사람들과 해외 무역을 통해 중국에 전파되었으며, 황궁과 일부 교회에 소개되면서 새로운 광학 장난감으로 등장하였다.³

17 세기말 매직랜턴은 이렇게 중국에 소개되었고, 종교적인 뜻을 담은 광학 장난감에서 점차적으로 서구의 과학과 실증주의 정신을 전달하는 매체로 전파되었다. 중국과 서양의 교류라는 시점에서 매직랜턴이 다른 계층과 지역, 사회문화에서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현대성”의 시작 논의에 새로운 접근법이 될수 있다.⁴

¹1664 년, 프랑스 루이 14 세의 궁정수학자 Pierre Petit 가 파리에서 매직랜턴을 보고, 이 설비를 “cette lanterne de peur” (무 서 운 랜턴) 이라고 불렀다. 프랑스어의 “la lanterne magique” (매 직 랜턴), 영어의 “magic lantern”은 같은 뜻으로 유행되었고, 점차 고정단어로 되었다.

²서구의 프로젝트 재현기술사는 Laurent Mannoni, R. Crangle (eds. and tr.,) The Great Art of Light and Shadow: Archeology of the Cinema, (Exeter : 2000) , pp46-73. Magic Lantern society: New Magic Lantern Journal. 을 참조. 서구의 프로젝트의 문화사는 Koen Vermeir, The magic of the magic lantern (1660-1700): on analogical demonstration and the visualization of the invisible,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Vol.38, No.2,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127-159 참조.

³石云里(Shi YunLi) 《장난감에서 과학까지: 유럽광학도구의 청나라 전파와 영향》(从玩器到科学: 欧洲 光学玩具在清朝的流传与影响), 《 과학문화평론 科学文化评论》2013.2.

⁴현존하는 연구는 주요하게 과학사, 기술사, 교육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이며, 기물의 현지화 응용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이 부족하다. 石云里(Shi YunLi) 《장난감에서 과학까지: 유럽광학도구의 청나라 전파와 영향》; 姜振寰(Jiang zhenhuan) 《〈중서문견록〉(中西闻见录)과 근대기술의 청나라말기의 전파》, 《기술전파와 트랜스포메이션》, 중국과학기술출판사 2012, P197—199; 孙承晟 (Sun Chengmao) 《명청시기 서방 광학지식의 중국에서의 전파와 영향—孙云球 Sunyun qiu 의 〈경사 鏡史〉 연구》, 《자연과학사연구》2007.3; 余子侠 (Yuzixia)、乔金霞 (Qiaojin xia)、余文都 (Yu wendu)의 《선교사들과 근대중국의 전기화교육》(传教士余近代中国电化教育的兴起), 《华中农大学报》2015.1; 沈书生(Shen shusheng) 《청나라말 민국초기 전기화교육 분석(清末民初的电化教育成因探析)》, 《전기화교육연구》2010.11; 慧(Sun hui) 《환등에서 영화까지: 신보의 초기 영상 광고연구》(从幻灯到电影: 〈申报〉早期影像广告研究

이러한 외부세계의 중요한 광학도구가 중국에 전파될 때, 불가피하게 현지화가 발생하였다. 현지인들이 정한 명칭이나 사용내용의 증점을 보면, “신의 기적”에서 인간의 오락, 정보, 지식과 혹은 경험주의에 따른 이성적인 인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중국 현대교육이라는 배경하에서 매직랜턴 역시 교육과정의 도구와 지식 표현방식이 되었으며, “매직랜턴을 통한 영등강연”(影灯講演) 등 새로운 교육과 선전방식이 나타났고, 지식인의 역할에도 변화를 주었으며, 범위도 공동체 내부로부터 외부의 민중으로 변경되었다. 근대 중국으로 볼 때, 교육의 공업화는 “문화하이(文化下移)”의 속도와 넓이를 전에 없이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글로벌한 배경에서 민족의 새로운 지식구조를 구축하였다.

1. Magic Lantern 의 초기 중문명칭

(1) “환등”(幻灯)이라는 중국어 명칭이 사용되기 전

오구통상(五口通商) 전에는 -magic lantern 의 중국명칭은 “경 鏡”, “영 影”, “조 照”, “유리 玻璃”, “자 字”, “화 画”등과 관련되었으며, 오히려 “마 魔”, “환幻”과 관련된 명칭은 없었다. 많은 문서는 1841 년 오구통상 후부터 나타났으며, 주요 항구도시인 상하이 등 지역의 기록이나 신문, 광학전문지에 실렸다. 이 중에는 “방자경 放字鏡”, “경영등 鏡影灯”, “영등 影灯”, “취영등희 取影灯戲”, “사영등 射影灯”, “영희등 影戲灯”, “영희 影戲”, “외국영희 外国影戲” 등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 “경 鏡”과 “영 影” 외, “등 灯”도 주요한 명칭이었다. 동시에 “극 (희)戲”도 중요한 표식이 되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 중, 매직랜턴의 주요용도가 연출과 오락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일반 중국어문기록 외, 19 세기이래 중국에 나타난 많은 외국어사전에도 편집자가 각 지역에서 관찰한 언어현상을 개괄 전파하였다. 최초 이러한 사전은 주로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편집하여, “중국어를 서구 언어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서양인들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1870 년대 이후, 각 지방의 교회학교, 신학당에서는 외국어 과정을 신설하였고, 서양 목사들 외, 중국인들, 예로 황치쑤우(卞其煦)도 “서구언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전을 편집하였으며, 그 목적은 중국인들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들은 매직랜턴의 중국어세계에서의 명칭변화 연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 (1872—1913)》, 박사논문, 난징예술 학원, 2016 年; Laurent Mannoni, The Great Art of Light and Shadow; Koen Vermeer, The magic of the magic lantern (1660-1700). Roberta Wue: China in the World: On Photography, Montages, and the Magic Lantern, *History of Photography*, 41:2, pp.171-187.; David Wright: John Fryer and the Shanghai Polytechnic: making space for science in nineteenth-century China, *The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Science*, Vol. 29, No.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pp. 1-16.

우선 “중영사전”의 상황을 보겠다. 1807 년 스코트랜드 선교사 마리슨 (Robert Morrison, 1789—1834) 이 런던교회에서 중국으로 파견되었으며, 1815 년부터 1823 년사이 마카오에서 3 부 6 권의 “영중, 중영사전”을 출판하였는 바 이는 중국 최고의 “영중대조사전”이었다.⁵ 《마리슨사전》에서는 제 2 부의 “경 鏡”과 “조 照” 항목에 “천리경 千里鏡”과 “현미경 顯微鏡”이라는 단어를 수록하였을 뿐이었다.⁶

그 후 중국에서 유행한 중영사전, 예를 들면 매드후스트 (Medhurst, Walter Henry, 1796—1857) 의 《화영사전》(華英字典, 1842—1843) 、새뮤얼 윌리엄 (Samuel Wells Williams, 1812—1884) 의 《영화분음촬요》(英華分韻撮要, 1856) 도 “경 鏡”, “화 火”, “등 燈”, “조 照”, “환 幻” 항목에 매직랜턴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반대로 “경 鏡”항목에 “천리경 千里鏡”과 “현미경 顯微鏡”이라는 단어를 수록하고 해당한 영어설명을 하였다.

반대로 “영중사전”의 상황은 많이 다르게 나타났다. 1847 년에서 1848 년까지 영국선교사인 매드후스트 (Medhurst) 는 중국 강희자전(康熙字典) 을 기초로, 마리슨사전을 참고하여 2 권의 《영화사전》(英華字典)을 출판하였다. 매드후스트는 이 사전의 “Magic”항목에 영어로 “Magic Lantern”을 수록하였으며, 그 중국어 단어로 “유리영화경”(玻璃影画鏡)을 선택하였다.⁷ 1872 년 미국선교사인 저스터스(Doolittle, Justus , 1824—1880) 의 2 권의 《영화취림음부》(英華萃林韻府)가 푸저우(福州)에서 출판되었으며, 그는 “Magic” 항목 아래에 “Magic Lantern”을 수록하고, 대응한 중국어 단어 역시 “유리영화경”(玻璃影画鏡)이라 하였다.⁸

1866 년부터 1869 년까지 독일선교사인 롭샤이트(Lobscheid, Wilhelm, 1822—1893)는 홍콩에서 4 권의 <영화사전> (英華字典,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with the Punti and Mandarin Pronunciation) 을 출판하였다.⁹ 그는 “Magic Lantern”항목에 “영화경”(影画鏡)이라는 중국어를 사용하였고, 광둥어 발음(ying wa keng)과 관방언어(ying hwa king)을 적었다.¹⁰ 1884 년 이노우에 테즈지로 (井上哲次郎, Inoue Tetsujiro)가 롭샤이트사전을 증본 시,¹¹ 그 항목에는 중국어 단어 “사영경”(射影鏡)이 추가되어, 원래의 “영화경”(影画鏡)과 병렬되어 있었다. “사영경”(射影鏡)은 1937 년까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

⁵沈国威(Shen guowei) : 《近代英华英辞典解题》, 오사까(大阪), 关西大学출판사 2011 년판.

⁶Robert Morrison,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 in Three Parts. Part the Second, Chinese and English, arranged alphabetically, Vol. I.* (Macau: The Honorable East India Company's Press ,1819), p467,p.548.

⁷Walter Henry Medhurst,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Shanghai: Printed at the Mission Press, 1847—1848),p814.

⁸Justus Doolittle, *Vocabulary and Hand-book of the Chinese Language* (英华萃林韵府) (Foochow: Rozario, Marcal and Company,1872.),p.295.

⁹沈国威(Shengguowei) 《近代英华英辞典解题》 참조.

¹⁰Wilhelm Lobscheid,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with the Punti and Mandarin Pronunciation* (Hong Kong: The Daily press office,1866—1869).

¹¹井上哲次郎(Inoue Tetsujiro) : 《订增英华字典》, 도쿄 1884 년판, 藤本次右卫门藏, P 696.

1908 년 이앤후이칭(顏惠庆)의 《영화대사전》(英華大辭典)에서는, “Magic, Magical”항목에서 “Magic Lantern”이라는 단어 및 그에 해당하는 중국어단어 “영희등, 사영등, 환희등”(影戲燈, 射影燈, 幻戲燈)을 수록하였다.¹² 1913 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영화신자전》(英華新字典) 역시 “Magic, Magical” 항목에 “Magic Lantern”이 있고, 중국어번역으로는 “사영등, 영희등”(射影鏡, 影戲燈)을 사용하였다.¹³

이러한 <영중사전>은 직접 “magic lantern”에 중국어 발음의 단어를 수록하였다. 당시 중국어방언(dialect) 사전도 유행했다. 1876 년 미국선교사인 윌리엄 모리슨(William T. Morrison)은 《닝보방언글자해석》(寧波方言字語匯解, An Anglo-Chinese Vocabulary of the Ningpo Dialect)을 하였고, 상하이美華서점(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에서 출판하였다.¹⁴ 1883 년 영국 런던회의 선교사 맥코반(John Macgowan, 1835~1922)은 《Amoy 방언 영화사전》(廈門方言英華詞典,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of the Amoy Dialect)을 편집 출판하였다.¹⁵

이러한 역사자료에서 보다시피, 영어로 상대적으로 고정된 단어인 매직랜턴이, 중국어 한자의 “환 幻”, “마 魔”와 연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 鏡”, “등 燈”, “영 影”, “희 戲”등 현지 물건들과 연결되었다. 모든 사전에서 “magic”이라는 영어단어가 전부 한자의 “幻”자와 대응관계를 가지지만, 이러한 관계가 “magic lantern”이라는 조합단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은 생각할 만한 부분이다.

(2) “환등 幻燈”이란 단어의 발생과 유행

1891 년 《신보》는 《링주어지성》(鈴洲記勝)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 관한 보도를 하였으며, 그중 아이치(愛知), 기후(岐阜), 후쿠이(福井)현 지역의 지진 후 나가사키(長崎)의 ‘紳商’이 환등회(幻燈會)를 열고 도네이션을 진행하였으며, 행사에서는 중국, 일본, 서양음악과 동시에 환등(幻燈)을 방영하여 “지진상황과 기타 기이한 사건”들을 전시하였다고 했다. 보도에서는 “환등”(幻燈)이 중국의 “영희”(影戲)과 비슷한것이라고 해석하였다.¹⁶

1899 년 《신보》는 또 한번 일본에 관한 보도를 하였으며, 그중 “최근에 일부 사당들에서 환등회의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위생관련 설명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문장 중 “환등”이

¹²顏惠庆(Yan huiqing): 《英華大辭典》(An English and Chinese Standard Dictionary), 商務印書館 1908 년판.

¹³商務印書館 編譯所: 《英華新字典》(English and Chinese Pronouncing Condensed Dictionary), 商務印書館 1913 년판, P311.

¹⁴William T.Morrison, An Anglo-Chinese Vocabulary of the Ningpo Dialect (《寧波方言字語匯解》)(Shanghai: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876),p284.

¹⁵John Macgowan,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of the Amoy Dialect (Amoy: A. A. Marcal, London: TRUBNER & Co.,1883),P.288.

¹⁶《링주어지성 鈴洲記勝》, 《신보 申報》, 1891.12.14, 제 3 판.

중국의 “영희”(影戲)과 비슷한것이라고 해석하였다.¹⁷

위의 보도에서 보다시피, 1890 년대 중국어세계에서는 magic lantern 을 “영희” (影戲) 라고 불렀으며, 일본뉴스를 전달할 때만 일본에서 사용하는 ‘환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862 년 일본에서 출판된 《英和对译袖珍辞典》 (A Pocket Dictionary Of The English And Japanese Language) 에서는 이미 “환등 幻灯”을 영어“Magic Lantern”의 유일한 번역으로 정착하였다.¹⁸ 따라서 한자인 “幻灯”이 일본어에서 magic lantern 으로 사용된것은 1860 년대 이전으로 판단된다.

1902 년 일본 영학신지사(英学新志社)의 《英和双解熟 大字 》 (A Dictionary of English Phrases with illustrative sentences) 가 도쿄에서 출판되었다.¹⁹ 이 사전은 영어 “Magic Lantern”에 상응한 단어로 “환등 幻灯”을 사용하였다.

1916 년, 독일인 허멜링 (Hemeling, Karl Ernst Georg, 1878—1925) 의 책 《官話》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the Standard Chinese Spoken Language) 에서도 “Lantern” 아래에 “Magic Lantern”과 “Magic Lantern slide”를 넣어 앞 단어의 대응단어로 “사영등 射影灯”, “환등 幻灯”을 사용하였다.²⁰

이는 20 세기초,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한자 “환등 幻灯”이 점차적으로 중국인들의 인정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그후 상당히 긴 기간, 중국어세계에서는 “幻灯”과 “影戲” 등 본토 고유명사들이 병존하였다. 1927 년 전후, “幻灯”은 점차적으로 기타 단어들을 대체하고 “magic lantern”의 중국어 단어로 사용되었다.

2.“매직 랜턴”의 중국에서의 초기상황

(1) 17 세기 광학 장난감

17 세기 중반, 유럽에서 발명된 매직랜턴은 곧 중국에 들어왔다. 1671 ~ 1672 년사이 도밍고(Domingo Fernandez Navarrete), 남회인 (南怀仁 Ferdinand Verbiest S.J.)등

¹⁷ 《즈칸사건 赤嵌近事》, 《신보 申报》, 1899.12.31, 제 2 판.

¹⁸ 《英和对译袖珍辞典》 (A Pocket Dictionary Of The English And Japanese Language) , 1862, 江戸开板本, 日本와세다대학, P 475.

¹⁹ 영학신지사(英学新志社), 《英和双解熟语大字汇》, 도쿄, 1902 년판, P274.

²⁰ Karl Ernst Georg Hemeling, *English-Chinese Dictionary of the Standard Chinese Spoken Language (官話) and Handbook for Translators* (Shanghai: Statistical Department of the Inspectorate General of Customs, 1916), p766. 沈国威(Shen guowei) 《近代英华英辞典解题》 참조.

예수회원들은 새로운 광학 장난감으로 “매직랜턴”을 황제에게 바쳤다.²¹ 프랑스 선교사 뒤알드(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는 <중화제국전지>(中華帝国全志, General History of China)에서 선교사들이 중국황제에게 광학지식을 가르키고 방영하는 상황을 기록했다.

19 세기에 이르러, 소저우(蘇州), 양저우(楊州), 난징(南京)등 지역의 민간행사에는 매직랜턴이 등장하였다. 1846 년, 정푸광(鄭復光)은 본인이 10 여년 전 한쌍(邗上, 현재 중국 강소성 양주시 한강구)에서 취영등회를 보고 관심을 가져 광학연구를 하였다고 한다.²² 왕토우(王韜), 거위앤쉬(葛元熙)등은 상하이에서 취영등회를 본 상황 즉 항구 도시의 주요 오락활동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그 내용은 외국의 사람과 동물과 산수화 외에도 화재, 태풍 등 재해현장까지도 관중들의 관심사항이었으며, 거위앤쉬는 취영등회를 통해 서방국가의 전쟁상황을 보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러한 기록은, 17 세기 중반부터 19 세기 중반까지 황궁에서 민간까지 매직랜턴이 주요한 오락시설로 등장하였으며, 그러나 유럽과 달리 “환상”이나 “신의 기적”으로 사람들의 공포와 경외감을 일으키는 작용은 없었다.²³

(2) 19 세기중반이후 항구도시에서의 서양인의 사회활동

1842 년 난징조약으로 중국 광저우의 식민지 시대를 끝마치고, 항구 개방이 되었다. 당시 서양인들과 같이 들어온 일용품중에 매직랜턴이 있었다.²⁴ 1850 년대 이후, 서양인들이 항구도시에 집중하게 되었고, 사(司)의 협조관리 외, 여러가지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사회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중 매직랜턴을 통한 강연과 연출은 중요한 오락활동중의 하나였다.

1860 년대 Ningbo 도서클럽(NingPo Book Club)은 외국주민들 집거지역에서 저녁강의도 하였다.²⁵ 1868 년 5 월의 강의는 당시의 구체상황을 소개하였으며, 내용은 중국의 인구, 공공위생위원회, 희극(오페라)등을 포함하며, 매직랜턴의 형식도 활용 하였다.²⁶

²¹ 남화인(南怀仁, Ferdinand Verbiest)著, Noel Golvers 영문번역, 위산러(余三乐) 중국어번역, 린권시용 교정: 《남화인의 유럽천문학》(The Astronomia Europaea of Ferdinand Verbiest S.J.), 대상출판사 2016.

²² 정푸광(鄭復光): 《정정링즈 鏡鏡諗痴》, “서序”, P1

²³ Laurent Mannoni, *The Great Art of Light and Shadow*, pp.46-73.

²⁴ Edward Belcher, NOTES OF A VISIT OF H.M. SHIP SAMARANG, UNDER CAPT. SIR E. BELCHER, C.B., TO THE BATANES AND THE MADJICOSIMA GROUPS, in 1843-44. *The Chinese Repository* (1832-1851), 1844.3.1. 선장의 이런 노트는 추후 단행본으로 1848 년 런던에서 출판. Edward Belcher, Narrative of the voyage of H. M. S. Samarang, during the years 1843-46, (London: Benham, and Reeve, 1848)

²⁵ 廖乐柏(Robert Nield)저, 리쇼우(李筱) 역: <중국통상구안- 무역과 최초의 조약항구>, 동방출판중심 2010 년, p214

²⁶ NINGPO BOOK CLUB, *The North China Herald and Market Report* (1867-1869), May 9, 1868, p. 213.

1884 년 4 월, 존 프라이어 (John Fryer, 1839—1928) 는 영국 로얄 아시아협회 (Asiatic Society) 상하이분회에서 “중국인의 연옥관념” (Chinese popular notions of Purgatory)라는 매직랜턴 강연을 하였다. 1885 년 12 월 2 일 영국조계지의 템프런스 홀 (Temperance Hall) ²⁷에서 또 한번 매직랜턴 강연을 하였다.²⁸

1887 년 4 월 13 일, 상하이문학변론협회 (Shanghai Literary and debating society) 역시 템프런스 홀에서, 부회장인 존 프라이어 (John Fryer) 는 매직랜턴으로 “중국인의 역사상 도덕관”(Chinese Morality)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강연중, 존 프라이어는 랜턴으로 중국화가 그린 그림들을 방영하며 중국 역사상의 개인도덕관련 이야기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그림들의 예술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²⁹ 1887 년 4 월 27 일, 존 프라이어는 같은 장소에서 상하이 기독교청년회 (YMCA) 에 “스코트랜드 하이랜드 여행기” (Trip to the Scottish Highlands)를 강연하였다. 매직랜턴으로 스코트랜드의 아름다운 풍경과 여행노선,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³⁰

매직랜턴은 또한 조계지내 서양인들의 사교활동중 중요한 오락형식이었다. 1893 년 6 월 상하이경마회 (Race Club) 는 조계지에서 스모킹 콘서트 (Smoking Concert) 를 열었다. 바이올린 등 퍼포먼스 외, 매직랜턴으로 상하이의 경마행사에 참석한 말과 선수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절목이 있었다.³¹

베이징의 서양인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 1858 년 텐진조약 《天津条约》 후 외국공사의 베이징거주가 가능했고, 1870-80 년대까지는 각국 주중 공사와 가족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여러가지 자선행사와 오락행사, 강의로 사교계를 이루어 갔다. MEM (Methodist Episcopal Mission) 은 매년 겨울 베이징에서 2 주간의 강의를 진행했다.

(3) 중국 내륙지역의 포교활동

매직랜턴이 오락에서 포교활동에 쓰이게 된 것은 아마 19 세기에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중국 내륙지역에서의 활동과 연관된다. 1893 년 안후이성 쉬안청(安徽宣城)에서 포교활동을 한 조지 밀러 (George Miller) 목사가 중국 농촌에서의 포교관련 다음 글을 적었다.

매직랜턴은 농촌마을 포교활동에 상당히 유익하다. 가끔 오해도 있지만, 잘 설명하면, 화면을

²⁷ 1883 년<상하이행명록(上海行名录)>: 상하이 난징으로 18 번지. The North China Desk Hong List, 1883.1, P29 참조.

²⁸ NEWS OF SUMMARY,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Dec 9, 1885, p.646.

²⁹ Shanghai Literary And Debating Society,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Apr 22, 1887, p.440.

³⁰ Shanghai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The North-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Apr 29, 1887, p.472.

³¹ The Race Club Smoking Concert,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Jun 30, 1893, p.951.

통한 설명이 이해에 도움이 되며, 전체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³²

1870 년 12 월 22 일, MEM 의 연차보고에 보면, 푸저우(福州)에서 중국 현지 선교사들에게 집중교육을 진행하고 시험을 보고, 분기별 테스트를 한다.³³

1882 년 베이징에서 교회는 주일행사에서 매직랜턴으로 대량의 일반 민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교회는 중국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유효한 정보”를 전파하였다.³⁴ 1886 년, Rev.W.P. Sprague 는 료우닝성 뉴좡(辽宁牛庄)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그는 친구의 건의대로 천진, 베이징 등지역 선교사들의 경험을 참조하여, 매직랜턴을 사용하였다.³⁵ 1886 년 11 월 26 일, 애드워드박사 (Dr. Edwards) 는 쑤시타이위엔 (山西太原) 에서 야간강의에 매직랜턴을 사용하여 당지 영향력이 있는 엘리트들의 관심을 모았다.³⁶

1891 년, 영국 선교사 애드워드 이반스 (Edward Evans) 는 중국에서의 포교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쑤둥청저우(山東青州府, 현재 山東青州市益都 益都城) 에서 야간 매직랜턴으로 당지의 점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효과가 좋았다.³⁷ 1893 년 쑤시타이구 (山西太谷)의 엘리트들 즉 지식인과 교사를 포함하여 만든 단체는 대표를 파견하여 REV.D.H.Clapp 목사에게 3 일간 야간 매직랜턴 강의를 요청하였다. 마지막 밤, 목사가 방영한 내용은 순수한 종교내용이었다. 3 차의 매직랜턴 강의는 약 300 여명의 청중을 끌었다. 지식인들은 목사에게 감사의 뜻으로 타이구현의 교회학교에 도네이션을 하였다.³⁸

1902 년, 장시쥬우장(江西九江)의 루산구링(庐山牯岭)에서도 교회의 참여하 오락형식의 매직랜턴강의가 어린이들을 포함한 민중에게 개방되었다. 이 시기 매직랜턴 강의는 이미 중국 내륙지역의 포교활동의 중요한 수단이었다.³⁹

1897 년초,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의 총감독인 마틴 (W.A.P.MARTIN) 은 서구과학을 활용한 포교경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과학적인 포교실천중 4 가지가 중요하다. 그중 한가지가

³²Miller, George, “Localized Work,”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Aug 1, 1893, p.362

³³*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Jan 4, 1871.

³⁴“Outports: Pekin,”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Feb 7, 1882, p.155.

³⁵W.P. Sprague, “Editorial And Notes And Missionary News,”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Feb 1, 1886, p.80.

³⁶“Extracts From Letters,”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Mar 1, 1887; p.121.

³⁷Edward Evans, “Missionary News,”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Apr 1, 1891, p.189.

³⁸“Shansi Notes: The Late Frost An Entertainment Widespread Suffering The Yearly Balance, Our Own Correspondent,”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Mar 10, 1893, p.338.

³⁹George A Clayton, “Correspondence: Magic Lantern Exhibitions At Kuling,”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Jun 1, 1903, p.304

가격이 싼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이다. 매직랜턴, 그래퍼폰 축음기 (graphophone) , 광학, 전기, 스팀설비 등이 포함된다.⁴⁰ 마틴은 여기서 매직랜턴이 중국내 포교활동 중에 광범히 사용된 중요원인중의 하나로 싼 가격과 쉬운 사용방법이라고 지적했다.

(4) 선교사들의 의학교육에서 인체구조 전시

19 세기 중국에 온 선교사들은 의학을 활용한 포교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들은 일상 업무중, 매직랜턴을 통하여 인체골격구조, 내장기관, 혈액순환 등을 보여주었다. 그중, 영국런던의 선교사인 존 더전 (John Dudgeon, 1837—1901) 은 매직랜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연구한 선교사이다.⁴¹

(5) 항구도시의 신식 학당교육

1840 년대 오통상 후, 항구도시에는 교회학교들이 나타났으며, 60 년대 이후에는 중국인들이 만든 신식 학원과 학당들이 나타났다. 이런 학교에서는 서구 언어문자, 과학과 문화를 가르쳤으며, 매직랜턴은 이 과정중 중요한 도구였다. 1848 년, 마리슨 교육 학회 (Morrison Education Society) 는 제 10 차 연차보고서에서 스폰서들에게 서적 외에 교학도구들을 요청하였으며, 거기에는 매직랜턴도 포함되었다.⁴² 1877 년 2 월 23 일, 상하이 폴리테크닉학원(Polytechnic Institution)의 전문위원회는 스폰서들로부터 어떤 교학용 도구를 받을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영국 런던에서 구입하기를 희망하였다. 그 중에는 기계엔진 모델, 매직랜턴등이 포함되었다.⁴³

17 세기 초의 광학장난감에서, 오통상후 항구도시 서양인들의 사회활동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초기 매직랜턴의 중국내 역할은 주요한 부분이 오락이었다. 또한 싼 가격과 편리함으로, 선교사들을 따라 중국 각지의 농촌에까지 전파되었다. 중국 국민들도 “눈으로 보이는 실체”를 믿기 시작했으며, 서구 종교와 함께 들어 온 “과학”은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한, “환각”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3. 서양의 “器”와 중국: 제작, 방영과 전파

⁴⁰Martin, W.A.P, “Western Science As Auxiliary To The Spread Of The Gospel,”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Mar 1, 1897, p.111.

⁴¹고우시(高晞) 《德贞传: 一个英国传教士与晚清医学近代化》, 복단대출판사 2009, 참조.

⁴²“The Tenth Annual Report Of The Morrison Education Society For The Year Ending Sept. 30, 1848,” *The Chinese Repository* (1832-1851), Jan 1, 1849, p.3.

⁴³John Fryer, “Public Meeting: The Polytechnic,”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Mar 15, 1877, p.26.

(1) 제작

19 세기 중반이래, 서구 선교사들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포교활동이 자유로왔으며, 매직랜턴은 일상적인 보조도구였다. 따라서 프로젝터와 슬라이드의 제작과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다.

1873 년, 영국런던 의학선교사 존 더전은 중서견문록(中西闻见录, News from China and the West) 9~12 기에 <경영등설>(鏡影灯說, On the Magic Lantern)이란 제목의 연재를 통하여 <경영등>(鏡影灯)의 제작방법을 도면을 통하여 싸이즈와 재료까지 상세히 기술하였다.

1880 년 만국공보 (万国公報, A Review of the Times)가 <경영등설략>(鏡影灯說略) 라는 제목으로 설비의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실어, 프로젝션의 방법과 다양하게 보이는 기교에 대해 설명하였다.⁴⁴ 존 더전의 <경영등설>과 비교시, 만국공보에 실린 글은 좀 더 간단하였고, 프로젝트의 운영원리만 논의함으로, 관중들의 서양경(西洋鏡)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존 더전의 서술은 기술도면처럼 완벽히 도면으로 완성되었다.

선교사들이 프로젝트설비 제작에 관심을 보인 외에도, 중국에 있는 서양인들은 일찍이 사진기로 중국견문을 기록하여 그 사진과 현상기술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촬영협회를 만들어 Slide 제작에 대한 강의와 콩쿠르도 하였다.

1905 년 11 월 2 일, J.Hervey Longhurst 는 중국주재 서양인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촬영협회에서 슬라이드 제작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그는 50 여장의 고품질의 슬라이드를 방영하였고, 제작과 현상 및 처리방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상하이 아마추어촬영협회는 1913 년 ~1914 년간 지속적으로 슬라이드 제작과 사용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⁴⁵

1937 년 전후, 중화서국(中華書局)은 상하이에 <중화 교육도구 제조공장>을 설립하였다. 제품판매목차로 보면 당시 이미 환등기(幻灯機:영사기)를 제작할 능력을 구비하였다.⁴⁶

(2) 방영

앞에서 설명한 포교행사에서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천문학, 동물학을 설명하고 시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신앙심을 키우게 한 것 외에도, 19 세기 후반기 상하이 등 항구도시의 중국인들은 매직랜턴을 활용하여 이재민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하기도 하였다.

1885 년, 중국 광둥/광서성, 산둥성 등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었다. 이언융징 (顏永京) 목사는

⁴⁴ 《매직랜턴소개 鏡影灯說略》, 《만국공보 万国公報》589 기, 1880.5.15, P18.

⁴⁵ “Shanghai Amateur Photographic Society”,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Nov 3, 1905.

⁴⁶ 《자작환등기 自制两用幻灯》, 《신보申報》, 1937.12.15, 제 2 장.

세계 각지를 유람하면서 모은 슬라이드를 Polytechnic Institution (格致書院)에 빌려 주어 매직랜턴을 활용한 재해지역 구제금 모임을 하였다. 11월 21, 23일 매직랜턴으로 80여장의 슬라이드를 방영하였고, 그 내용은 서구 지역의 도시와 풍경이었다. 입장권가격은 50센트였고 전부 재해구제금으로 전달되었다.⁴⁷ 이 행사는 큰 환영을 받았고, 11월 25일 또 한번 진행하였다.⁴⁸ 방영은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11월 28일과 12월 3일에 상하이에서 두번 추가하였으며, 내용중 몇십장의 슬라이드를 추가하였다.⁴⁹ 11월 28일 입장권은 여전히 50센트였으며, 12월 3일은 슬라이드를 바꿔서 입장권도 20센트로 변경하였고, 전부 재해구제금으로 하였다.

Polytechnic Institution (格致書院)은 자체적으로 의학과 서구 정치제도에 대한 내용을 무료로 방영하기도 하였다. 그 예로 1897년 11월 6일 <영등회>(影燈戲)을 활용하여 각종 도면을 설명하였다.⁵⁰ 1897년 11월 30일은 요셉(Joseph Edkins)을 초청하여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재위 60년 정책”과 “동물과 새”들의 도면을 방영하였다.⁵¹ 1898년 3월 29일 존서원(約翰書院)의 리쓰(李思)를 초청하여 “천문지리”를 강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하였다.⁵²

Polytechnic Institution (格致書院)외, 홍커우서원(虹口中西書院)도, 매직랜턴으로 서구 과학을 설명하였다.⁵³ 이러한 신 서원들은 매직랜턴으로 강의를 하였고, 내용은 전문적인 과학지식이나 서구 정치제도이지만, 형식은 사회대중들에게 오픈하였다. 이는 조기 환등강연(幻燈講演)의 통상적인 모델이었다. 이러한 모델은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소수 엘리트계층 뿐아니라 전 사회의 민중들에게 오픈하였다.

1919년에는, 1917년에 설립된 Yangzepoo Social Center”가 저녁 시간대에 상하이의 유명한 강의자들을 초청하여 매직랜턴으로 강의를 하였고, 참석자들도 적극적이었다.⁵⁴ 이렇게 매직랜턴 방영은 이미 신형 학당, 교회, 사회조직의 중요한 선전, 강의, 집회, 교화형식으로 되었다.

(3) 전파

19세기중반부터 20세기초까지, 매직랜턴(影戲等講演)은 이미 상하이, 베이징, 창싸 등 도시지역의 유명한 대중오락과 포교활동의 방식으로 되었다. 따라서 슬라이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슬라이드는 주로 영국에서 생산되었다. George Richardson & Co.,

⁴⁷ 《매직랜턴으로 재해지원 影戲移賑》, 《신보 申報》, 1885.11.19, 제 4 판; 1885.11.23, 제 1 판.

⁴⁸ 《매직랜턴관람후기 觀影戲後記》, 《신보 申報》, 1885.11.25, 제 1 판.

⁴⁹ 《매직랜턴의 재연 重演影戲》, 《신보 申報》, 1885.11.28, 제 3 판. 《매직랜턴 신버전 影 翻新》, 《신보 申報》, 1885.12.3, 제 2 판.

⁵⁰ 《폴리테크 인스티튜션 서자기 강의론 格致書院講論西字啟》, 《신보 申報》, 1897.11.16, 제 6 판

⁵¹ 《요셉 서학강의론 艾約瑟先生講論西學啟》, 《신보 申報》, 1897.11.30, 제 6 판

⁵² 《폴리테크 인스티튜션 서자기 강의론 格致書院講論西字啟》, 《신보 申報》, 1898.3.29, 제 6 판

⁵³ 《매직랜턴 대관 影戲大觀》, 《신보 申報》, 1902.1.29, 제 3 판

⁵⁴ “The Yangtzepoo Social Center, Djen, S.C,” *Millard's Review of the Far East* (1919-1921), Dec 27, 1919.

그리고 Magic Lantern Journal Company limited., “GEM”dry Plate Company limited., 등 생산업자가 있었다. 조지 리차던은 중간 딜러로, 1868년에는 북화첩보(北華捷報)에 매직랜턴과 슬라이드 판매광고도 실었다. 그 업무범위는 망원경, 현미경, 증기기계 모형 등 과학기술 보조설비들을 포함한다.⁵⁵ 후자가 생산한 슬라이드는 현재 여전히 실물을 볼수가 있다. 당시 매직랜턴기기와 슬라이드 한 세트의 판매가격은 7 실링 6 페니에서 22 파운드까지 다양하였다. 이앤윙징 목사가 해외에서 입수하여 1885년 구제방영시 사용한 해외여행 슬라이드는 영국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판단되며, 현재도 비슷한 내용의 슬라이드를 찾아볼 수 있다. 기기와 슬라이드는 상하이 Polytechnic Institution (格致書室), 중서대약방 (中西大藥房) 등 점포에서 많이 판매되었다. 슬라이드 역시 주로 영국산이었고, 판매가격은 대략 세트당 2 달러에서 2.5 달러사이였다.⁵⁶

슬라이드 구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따라서 사람들이 슬라이드 렌트협회 설립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1886년 8월 Brown. Frederick는 <교무잡지>에 편지를 보내, 슬라이드 렌트협회를 제안하였다. 슬라이드 주제가 대부분 과학과 건축에 관련된 것이고, 방영회도 매번 같은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도 없기에, 슬라이드를 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슬라이드 내용 리스트를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여 방영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⁵⁷

영국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상하이 등 항구도시의 약국, 서점등에서 판매하고, 서로 렌트가 가능한 방식으로 유통된 것이 바로 초기 슬라이드 전파의 주요모델이다.

4. 극장에서의 지식

1871년 감리교 (The Methodist Church)가 푸저우에서 포교시, 매직랜턴으로 천문학과 일식현상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독교는 본토신앙보다 “경험주의 인정”이 쉬운 즉 “과학”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다. 이는 기독교교의의 중국 본토화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876년 9월 25일, 미국인들이 베이징 명쓰커우(灯市口)회당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여 매직랜턴 방영을 하였다. 당시 동문관(同文館)의 헤드인 마틴(William A.P. Martin)은 학생들을 데리고 함께 방영을 보았으며, 관중들은 서방 지식체계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⁵⁸

위대한 인물부터, 국가, 그리고 박물관에서 곤충, 다시 성경이야기까지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구체적인 지식으로부터 신앙에까지, 슬라이드 방영순서는 관람자들로 하여금 서학(西学)과

⁵⁵The North China Herald and Market Report (1867-1869), Jul 11, 1868.

⁵⁶《매직랜턴 판매기 影戏灯出售》, 《신보 申报》, 1887.1.18, 제 5 판; 1889.4.16, 제 5 판; 《중서대약방의 슬라이드 신규리스트 新到各货中西大藥房 影戏灯片》, 《신보 申报》, 1889.9.22, 제 6 판

⁵⁷Frederick Brown,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1868-1912), Aug 1, 1896.

⁵⁸소산거사(小山居士): 《매직랜턴 관영기 观镜影灯记》, 《만국공보 万国公报》 제 419 기, 1876.9, P26

순서에 대해 전체적인 인상과 이해를 하게 되었다. 본질을 따지고 솔직하게, 경험적인 인식에서 초월적인 인지까지, 자연에 대한 관찰로부터 인간행위의 윤리제도에 대한 이해까지, “과학”은 신앙의 고도에까지 달하였다.

1888 년 춘절, 원저우(温州) 기독교 여자학당과 남자학당은 방학하였다. 교장선생님인 Brazier 는 집에 돌아갈수 없게 된 학생들에게 매직랜턴으로 슬라이드를 방영하여 주었다. 예상 외로 학당에서 “환술”을 사용하였다는 유언비어가 돌았고, 교장선생님은 부득이 학생들의 부모들까지 초청하여 재방영을 하였다. 관람 후에도 부모들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교장은 다시 한번 원저우 지방관리들을 위하여 방영하였고, 지방 엘리트들은 방영에 만족하였다. 따라서 매직랜턴은 원저우에서 유행되기 시작하였으며, 후에는 입장료를 받아서 재해지역 구제금을 마련하기도 했다.⁵⁹ 여기서 보다시피, 시각경험을 기초로 한 실증성 체험은 매직랜턴으로 하여금 “환술”이라는 인상을 없애게 되었고, 기독교의와 선교사들이 전파하는 “과학”이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 실증할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1883 년 겨울, 마틴(William A.P. Martin)은 베이징의 감리교회에서 야간 중문강의를 하였으며, 이때 매직랜턴을 활용하여 관중들에게 외국의 도시, 도로, 건축, 조명, 용수 시스템 등을 중국의 도시와 비교하였다. 설명한 도시는 런던, 파리, 베르사이유, 베니스, 밀라노, 피렌체, 로마, 나폴리 등이 있었다.⁶⁰

슬라이드는 관중들로 하여금 육안으로 직접 볼수 없는 세계를 접하게 하였다. 천문 현상, 인체구조, 혈액순환, 혹은 해외 타지역 풍경, 자연재해 등은 관중들이 기존에는 직접 체험할수 없었고 논리적인 추론을 해야만 하는 인식들이었다.

슬라이드는 이 부분의 인지대상을 극장과 같은 전시공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표현자가 만든 이미지를 자신의 시각으로 직접 접하게 할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지식을 얻는 과정 중, 직접경험에 의한 구체적인 인지는 곧 추상적인 논리추론을 대체하게 되었다. 일단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감각경험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게 된다. 지식을 얻는 과정 중에서도 감각경험을 더 믿게 되며, 감각경험이 닿을수 없는 분야만이 추상적인 추론의 힘을 빌게 된다.

결론: 중국 근대 지식의 교훈과 엘리트 역할의 변화

17 세기 유럽인들이 매직랜턴을 발명후, 이러한 볼록렌즈장치는 선교사들과 해외 무역을 통해

⁵⁹CHINESE NEW YEAR HOLIDAYS AT WENCHOW,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Mar 2, 1888.

⁶⁰“Our Own Correspondent,” *The North -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870-1941), Mar 5, 1884, p.253.

중국에 들어왔으며, 궁중에서부터 민간에까지, 사람들은 초기에는 오락적인 체험을 위주로 하였다. 19 세기초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신교 선교사들의 중국내 활동에 따라 매직랜턴은 점차적으로 오락과 환술에서 “과학적인 포교”의 도구로 변경되었으며, 서구 과학과 경험주의 원칙으로 “초월성을 띤 교의”를 검증하고 전파하였다.

19 세기말 20 세기초반, 매직랜턴의 발견은 교화와 전파의 구체형식에 큰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인 근대 지식의 생산, 유통과 소비의 배경하에 상황이 훨씬 다이나믹하게 되었다.

지식전파가 엘리트층에서 대부분의 민중들로 전이된 외에, 영미(英美) 근대 교육 기술과 학당교육방식의 동아시아로의 전파는 지식의 표현방식의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였다. 이 규범의 주요특징은, 분과별 프레임내에서 경험주의 원칙과 구체적인 각본 (script)으로 진행되었다.

19 세기 중반, 항구도시에는 신형 학교가 밀집했고, 서구 학과 지식과 언어과정을 개설했다.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한 외, 영등강연도 중요한 수업방식이었다. 수업중 사용한 슬라이드는 영국산이 대부분이었으며, 대본과 참고자료가 동시에 출판 되었다.⁶¹

중국근대지식의 생산과 유통으로 볼때, 구체적인 주식, 개념, 문건, 내용, 분류체계 등 대부분이 외부에서 인수되었을 뿐 아니라, 그 표현방식과 전달방식도 서구에서 많이 들어왔다. 예로 1835 년 스코트랜드의 체임버스형제(Robert Chambers & William Chambers) 가 편집 출판한 총서 체임버스 애듀케이션 코스 (Chambers' Educational Course) 는 강남제조국에서 선택 및 중국으로 수입하여 학당교재로 사용되었고, 청나라말기 지식인들이 서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나아가서 과거시험과 합법성논술에 필요한 “지식자원”이 되었다.⁶² 동시에 영등강연은 신형 학당의 교학과 과학기술 보급강의의 중요한 보조수단으로, 이러한 도식화된 표현수단은 근대유형의 일종의 “지식규범”으로, 중국의 “현대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기물(器物)측면에서 보면, 매직랜턴, 경영(鏡影)은 서양에서 온 수입품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다가 그의 단순 “확대” 기능 외에도 새로운 현지화를 시도하였다. 존 더진, 존 프레이어, 마틴, 쟁푸광 등은 중국현지에서의 “환등기”의 제작과 현지 안료(料)를 활용한 슬라이드 제작 그리고 조명(照明)문제 해결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소개와 논술이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이십사효도(二十四孝圖)등 현지자원들로 하여금 서구 기물의 방영내용이 되기도 하였다. 매직랜턴에서 경영등(鏡影燈)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서기(西器)의 현지화는 글로벌 지식체계의 유통과정 중 “현지생산”이라는 중요한 내용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동시에, 19 세기 영등강연의 유행은 엘리트들의 모임방식과 발표역할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⁶¹T.C.Hepworth, F.C.S., *The Book of Lantern being A Practical Guide to the working of the optical(of Magic)Lantern* (London:Wyman&Sons,1888).

⁶² 쑨칭(孫靑) 저, 氷野歩 역: 《西洋の政治経済学教本の東アジアへの旅 —Chambers 編 Political Economics の東アジアでの数種類の訳本を中心に》, 《文化交渉による変容の諸相》, 2010 년판, P279—310.

중국 내에서 일부 “환등기”를 생산할수 있었지만, 슬라이드는 여전히 영국에서 수입되었다. 우선 상하이 등 지역에서 판매, 임대와 유통되었으며, 다음 신형 서점, 학교, 문화센터, 지식인들 단체내부에서 서구 과학과 정치제도를 설명하는데 활용되었다. 그후, 단체내부강의를 벗어나 사회대중들에게 개방되었고, 지식을 보급하고 사회대중을 교화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유행되었다.

19 세기말, 선교사와 신형서점의 서양적 방식 외, 중국 현지 지식인들도 “영등강연”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지방의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시를 쓰거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의 밀폐된 단체활동 위주였지만, “영등강연”은 이러한 활동을 사회에 개방하였다. 지식인들만의 모임은 “사회교육”의 단체모임으로 변해갔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사회적인 선전과 강의모델에 큰 영향을 주었다. 지식인들은 원래의 서면으로 표현하는 “합법적 표현”자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화자”, “강연자”가 되었다. 발표형식의 변화는 습작의 내용이나 방식으로의 변화까지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향후 지식인들이 원래의 “士”에서 “항구지식인”의 “제도성 언론인”이 되는데 그 영향이 점차적으로 나타난다.

19 세기 후반, 영등강연은 상하이, 베이징, 창싸 등 대도시 주민들의 오락 방식으로, 해외풍경을 보거나, 인간재해, 전쟁등을 알게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갑오전쟁(청일전쟁), 러일전쟁기간 일본은 대량의 전쟁내용의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전쟁진행상황과 전쟁역사 등을 설명하였으며, 의학교육 등 루트를 통하여 중일 양국민들 앞에 나타났다.⁶³ 이 시기 일본한자인 “幻灯(げんとう genntou)”가 그 시기 사용중이던 “경영등 鏡影灯”, “影戲”등 단어를 대체하고, 매직랜턴의 새로운 통용어로 등장하였다. 그후 “환등과 환등편”(幻灯, 슬라이드)라는 단어가 과학교육과 기초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그 제작기술과 방영원칙은 일본과 구소련으로부터 들어오게 되었다. 이 과정의 여러가지 변화는 역사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글자수의 제한으로 여기서 마치며, 상세한 논의는 추후 진행하도록 하겠다. [끝]

⁶³ 服部喜太郎 편집 : 《갑오전쟁 환등회, 日清戦争大幻灯会》, 求光閣, 1894.

18・19 세기 女性天皇・女系天皇論

오카와 마코토

[번역: 홍성민]

시작하며

2004 년 12 월에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대신이 설치한 자문기관 ‘황실전범에 관한 유식자회의’는 다음 해 11 월에 ‘황위의 안정적인 계승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성천황(女性天皇), 여계(女系)¹ 계승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게 불가결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 뒤 여성천황, 여계천황에 대해서는 언제나 시끌벅적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2019 년 5 월에는 현 천황의 퇴위와 신 천황(현 황태자)의 즉위가 이루어져서 차기 황위계승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황위계승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국민 과반수의 의식은 舊・現 황실전범의 규정이 전대까지의 역사적, 문화적 축적을 직선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황위계승이 남계(男系) 황족남자로 한정되어, 여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전근대로부터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논설이 상당히 보인다. 이 남계 남자주의(the Agnatic Primogeniture System)야말로 일본 황위계승의 전통이라는 의견은 가십거리를 신는 주간지나 극우적인 잡지 등에서 보일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학자 중에서도 일찍부터 표명되어 왔다. 아라키 도시오(荒木敏夫)는 여계 여성천황 부정론자에게는 남계 남자주의가 일본의 ‘전통’이고 ‘상식’이라는 사고방식이 공통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아라키가 말하였듯이 이 ‘상식’에 함정은 없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² 본 연구는 황위계승을 둘러싼 논의가 비학문적인 자기의견의 피력에 빠져버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천황, 여계천황이 옛 황실전범(1889 년 제정)의 성립 전후로 어떻게 연속하거나 변화되어 왔는지 그 실상의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1. 남존여비라는 ‘전통’

그런데 상기의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옛 황실전범(1889 년, 메이지 22 년 성립) 제 1 조에서 남계 남자계승주의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한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의 具申(「謹具意見」), 그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오메이사(嚶鳴社) 내부의 논쟁이다.³

¹ 여계천황(女系天皇)은 황녀(皇女)가 낳은 황손(皇孫)이 즉위하여 천황이 된 경우를 가리키는데 그 성별은 남성, 여성 모두가 가능하다. 여계(女系)와 여성(女性)은 다른 개념임을 주의하였으면 한다.

² 荒木敏夫, 『可能性としての女帝—女帝と王權・國家』, 青木書店, 1999 年, p.17.

³ 또한 이 논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여기서는 고지마 가즈시(小嶋和司), 고바야시 히로시(小林宏), 도쿄로 이사오(所功) 등의 연구를 그 대표로서 들고자 한다. 小嶋和司, 「『女帝』論議」, 『小嶋和司憲法論集 2』所收, 木鐸社, 1988 年. 小林宏, 「井上毅の女帝廢止論—皇室典範第一條の成立に關して—」, 梧陰文庫研究會編, 『明治國家形成と井上毅』所收, 木鐸社, 1992 年. 所功, 『近現代の『女性天皇』論』, 展転社, 2001 年.

오메이사란 원로원 대서기관인 누마 모리카즈(沼間守一)가 1878년(메이지 11년)에 설립하고 신문기자, 변호사, 개명과 관리 등을 멤버로 한 대표적인 민권결사이다. 토론회, 연설회의 개최, 『도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東京横浜毎日新聞)』・『오메이 잡지(嚶鳴雜誌)』의 발행, 지방유세 등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하였고, 자유민권운동에 크게 영향을 준 사의헌법(私擬憲法)의 초안을 작성하여 1882년(메이지 15년) 입헌개진당(立憲改進黨) 결성에 진력하였다. 「女帝를 세우는 可否」라는 제목의 오메이사 내부의 논쟁은 1882년 1월 14일에 이루어져, 3월 14일에서 4월 4일까지 도쿄 요코하마 마이니치신문에 총 9차례 게재되었다. 왜 이 시기에 여성 천황의 是非가 문제가 되었나며는 이 논쟁이 일어나기 전 해인 1881년(메이지 14년) 10월 12일에 국회개설의 詔書가 나온 사실이 크다. 이 칙유에서 헌법개정도 이루어진다고 표명되었고, 황위계승을 어떻게 규정해 갈지가 일부 지식인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또 「女帝를 세우는 可否」 논쟁에서 발의자인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⁴가 자신이 남계 남자계승주의를 주장하고 여성천황을 인정하는 이하의 두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앞 부분에서 서술하였다. 여기서 이하의 시마다 등의 의견은 오카와(大川)가 현대 일본어로 고친 것이다.

첫 번째 용인론자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성천황이 즉위해 온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남계 남자로 한정함은 이 습관을 깨트린다고 주장하는 자로, 여기에는 ‘일본 서적(國書)에 통달한 사람’이 많다. 또 두 번째는 현재는 사회가 진보하였고, 남녀의 권리가 점차 동등해져 왔다. 일찍이 왕위와 황위를 남계, 남자로 한정한 다른 나라도 헌법 제정에 따라 남녀가 똑같이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남계 남자로 한정함은 10세기 세계의 조류를 역행하는 것으로 하물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성천황이 즉위해 온 ‘국풍’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서양 서적(洋書)을 이해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⁵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양적인 인권을 이해한 ‘서양 서적을 이해하는 사람’, 즉 양학자(洋學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양적인 남녀동권(男女同權)론과는 인연이 없는 ‘일본 서적에 통달한 사람’ 즉 국학자들도 여성천황을 용인한 점이다. 또 하나는 여성천황 용인론에서는 서양학문과 국학을 넘어서 과거에 여성천황이 즉위한⁶ 사례를 ‘관습’, ‘국풍’으로

⁴ 생몰년은 1852 ~ 1923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주필이다. 후에 官界에 들어갔지만 하야하고 1882년(메이지 15년) 입헌개진당 창립에 참가하였다. 이후 중의원 의원이 된다. 1886년에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공창(公娼) 폐지운동과 아시오 광산(尾尾銅山) 피해자 구제운동에 전념하였다. 용변가로서 알려졌으며, 시멘스 사건(シーメンズ事件) 탄핵연설이 유명하다.

⁵ 「第一의 反對는 我國은 古來 女帝를 세운 慣習이 있고, 지금에 이르러 男統에 限함은 이 慣習을 破壞한다고 한다. 이 論者는 古來의 慣習을 尊重하는 자로 國書를 通하는 者에 많다. 또 第二의 反對者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現時는 社會의 風氣가 크게 열렸고, 또 昔時는 오직 武만을 숭상하는 氣運이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體力이 뛰어난 男子의 專權을 싫어하는 論은 그 勢力을 왕성하게 하여 男女의 權利가 점차 바야흐로 평등해 지려고 한다. 예전에 男統에 限한 나라라고 하더라도今は 男女 똑같이 皇位를 繼襲하기에 이르렀다. 各國의 憲法을 通觀하니 大抵 그렇지 않음이 없다. 이는 幽谷을 나와서 喬木으로 옮겨간 者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허나 我國 홀로 이에 反하여 憲法上 皇女即位의 例를 세우지 않으려 함은 十九世紀의 氣運에 反하는 者이다. 하물며 古來 女帝立位의 國風이 있음에 있어서야! 今에 이르러 이를 끊으려 함은 이를 文明의 퇴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是類의 論은 반드시 洋書를 이해하는 자에게서 많다고 하겠다.」 (「女帝를 세우는 可否」 『東京横浜毎日新聞』 1882년(明治15) 3월 14日. 『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 岩波書店, 1988年, pp.276-277.)

⁶ 일본에서는 8명 10대의 여성천황이 즉위하였다.

① 제 33대 스이코(推古)천황 (재위: 592~628년)

② 제 35대 고교쿠(皇極)천황 (재위: 642~645년)

③ 제 37대 사이메이(齊明)천황 (재위: 655~661년) ※ 고교쿠(皇極)천황이 재즉위

④ 제 41대 지토(持統)천황 (재위: 690~697년)

⑤ 제 43대 겐메이(元明)천황 (재위: 707~715년)

⑥ 제 44대 겐쇼(元正)천황 (재위: 715~724년)

⑦ 제 46대 고켄(孝謙)천황 (재위: 749~758년)

⑧ 제 48대 쇼토쿠(稱徳)천황 (재위: 764~770년) ※ 고켄(孝謙)천황이 재즉위

⑨ 제 109대 메이쇼(明正)천황 (재위: 1629~1643년)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이 황실전범에서 규정된 남계 남자 계승주의만이 일본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였으면 한다. 메이지 초기의 논란에서 여성천황 용인론이 일정 정도 지지를 받은 이유는 당시의 황실사정을 고려하면 잘 알 수 있다. 메이지 천황은 5 명의 측실 사이에서 5 명의 황자와 10 명의 황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서 무사히 성인이 된 자는 황자 1 명, 황녀 4 명이다. 1879 년(메이지 12 년)에 태어난 하루노미야 요시히코(明宮嘉仁) 친왕(親王)은 이후 다이쇼 천황이 되지만, 친왕이 태어났을 때에는 다른 황자, 황녀는 사산되거나 요절하여서 형제자매가 없었고, 또 친왕도 병약하여 황통이 지속될 수 있을지 몹시 염려스러웠다. 이러한 상황도 있어서 여성, 여계천황의 용인론은 일정 정도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오메이사 내부의 논쟁 「女帝를 세우는 可否」에서는 시마다의 위와 같은 발의 아래에서 총 16 명(이 중에서 의견이 기록된 자는 8 명) 사이에서 찬반의 토론이 전개되었는데, 논점의 중심은 황서(皇婿; 여제의 남편)의 문제, 또 하나는 남존여비 습관과의 정합성이었다. 황서에 관련된 논쟁에서는 살리카 법⁷을 채용한 영국에서조차도 황서를 들어서 왕가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한 고이즈카 류(肥塚龍)⁸의 의견, 한편 황서에 의한 정치지배를 염려하여 불가하다고 한 구사마 도키요시(草間時福)⁹ 등의 의견, 또 즉위한 역대 여성천황이 황서를 맞이한 예가 없고, 역대 여성천황은 모두 섭위(攝位)였다고 한 시마다 사부로(시마다 사부로)의 의견 등이 격렬하게 맞부딪쳤다. 본 발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후자의 논점, 즉 남존여비 습관과의 정합성이다. 남계 남자 계승주의자인 시마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혹은 이러한 의견이 있겠다. “도리적으로 생각하면 남녀에는 원래 존비(尊卑)가 없다. 황비는 신하 중에서 뽑혀서 천황의 배우자가 되니까, 황서도 신하 중에서 뽑히는 게 어떠한 불합리함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왜 그렇겠는가? 정치는 ‘시세인정(時勢人情; 시대의 추세와 민중의 실정)’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현상에는 남자를 높여서 여자 위에 둔다. 지금 설령 황서를 세우고 헌법상 여제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둘 경우, 나라 전체의 실정은 제도에 의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성천황의 상위에 다시 존위(尊位)를 차지하는 자(오카와[大川] 주: 황서를 가리킴)가 있다는 생각을 품는 것은 일본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천황의 존엄을 손상시키게 된다.¹⁰

⑩ 제 117 대 고사쿠라마치(後櫻町)천황 (재위: 1762 ~ 1770 년)

한편, 중국에서는 則天武后 (690 년 ~ 705 년), 한반도에서는 신라에서 善德王 (재위: 632 ~ 647 년), 眞德王 (재위: 647 ~ 654 년), 眞聖王 (재위: 887 ~ 897 년)의 여성황제, 여왕이 즉위하였다.

⁷ Lex Salica. 본래는 프랑크 왕국의 법전을 가리키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특히 여왕 및 여계 왕의 즉위를 금한 프랑크 왕국의 왕위계승법을 가리킨다.

⁸ 생몰년은 1848 년 ~ 1920 년.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고이시카와(小石川) 도진샤(同人社)에 들어가서 자유사상을 배웠다. 오메이사 사원을 거쳐서 1915 년에 입헌개진당 성립과 함께 입당한 이후는 같은 당계의 정치가로서 활약하였다. 1894 년에 중의원 의원이 되고 마쓰카타(松方)・오쿠마(大隈) 내각기에 농상공부(農商務省) 광산국장, 오쿠마・이타가키(板垣) 내각기에는 도교부 지사를 역임하였다. 실업계에서는 슈에이사(秀英社) 감사역, 애국생명보험회사 중역, 일본 키네토폰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⁹ 생몰년은 1853 년 ~ 1932 년. 야스이 슌켄(安井息軒)・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敬字)에게서 수학하였다.

1875 년에 에히메(愛媛) 현 마쓰야마 에이(松山英) 학교(마쓰야마 중학교의 전신) 교장이 되어 서양식 교육법을 실천하고, 또 『에히메(愛媛) 신문』에서 민권사상을 퍼트렸으며, 에히메 현에서 자유주의 교육의 보급・향상과 민권운동의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겼다. 오메이사의 활동을 마치고나서는 관리가 되어 오사카(大阪) 우편전신국 국장, 향료표식관리소 소장, 체신성(逓信省) 향료표식관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¹⁰ 「或은 말하길, 理로서 헤아리면 男女는 원래 尊卑의 別이 없으니, 皇妃는 人臣으로서 至尊에 配하고, 皇婿는 人臣에서 나오니 원래부터 不可함이 없다고 한다. 나는 이 說에 동의할 수 없다. 어째서인가? 政治는 時勢人情을 가지고 이를 基本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我國의 現狀은 男을 尊으로 삼고 이를 女子의 위에 둔다. 지금 皇婿를 세우고 憲法上 女帝를 第一尊位에 두어도, 通國의 人情은 制度를 가지고 이를 一朝에 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女帝의 위에 하나의 尊位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됨은 日本國人이라면 피할 수 없는 바이다. 어찌 皇帝의 尊嚴을 손상시키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女帝를 세우는 可否』 『東京横浜毎日新聞』 1882 年(明治 15) 3 月 14 日. 『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 岩波書店, 1988 年, p.279.)

시마다의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인에게 친숙한 남존여비라는 습관을 남녀동권의 ‘도리’(인권)나 법률제도보다 근본적인 요소로서 우선시한 점이다. 「女帝를 세우는可否」 논쟁을 정치하게 읽어내면 여성천황, 여제천황의 즉위를 둘러싼 제도상의 논의라기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남존여비라는 습관을 어떻게 파악해야할지에 대한 부분에 역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습관, 인권, 법률의 관계를 논자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가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

시마다에게 정면에서 격렬한 비판을 가한 사람이 고이즈카 류였다.

또 논자는 “남자를 높임은 일본에서는 조상 대대로 해온 습관으로, 습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보존해야 할 습관과 폐지해야 할 습관을 구별하지 않은 논의다. 생각해보라. 습관의 힘이 가장 강한 나라는 영국이다. 그러나 이 영국에서조차도 선악과 이해(利害)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이니까 모두 남기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학자의 말에 “습관은 되도록이면 남기는 편이 좋다. 다만 좋지 않는 습관은 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습관을 존중할지 아닐지의 기준은 이제 새로운지 오래되었는지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해를 가져다 주는가이다. 그저 옛 것을 존중하는 자는 골동품 수집가이다. 논자여! 골동품 수집가가 되지 말지어다.¹¹

남존여비는 일본의 관습이기 때문에 중시해야 한다는 시마다의 논의에 대해, 고이즈카는 관습은 소중히 해야 하지만 이를 남겨야 할지 말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남존여비 묵수의 부당성을 제기하였다. 관습을 존중하면서 의식적인 취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보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를 방불케 하는 발언을 고이즈카가 보여주었다. 여제 용인론자인 고이즈카와 부정론자인 시마다의 차이점은 바로 남존여비라는 습관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다. 그렇지만 상기의 문장에서도 보이듯이 고이즈카는 관습 자체를 폐지하고 인권과 법률을 일방적으로 중시하는 지식인은 아니었다.

법률은 언제나 평평한 토지에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시험삼아 살펴보자. 아메리카 합중국을 법률제도를 세울 때, 습관이 장애가 됨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에서도 법률을 세울 때에 습관이 장애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 일본이나 영국은 가장 습관으로 괴로워하는 나라이다. 입법자는 법률을 만들 때 습관의 실태를 관찰하고 그 나라의 풍토와 실정에 따라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이 “일본에 여제를 세우는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남녀동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일본은 남성을 높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승 순위에서 남녀 중에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남성을 우선하고 여성을 뒤로 하겠다. 그러나 여성이 세 명이 있던 다섯 명이 있던 결코 황위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한다. 일본에서는 남존이라는

¹¹ 「또 論者は 男子를 높임은 日本 先祖 以來의 舊慣이다. 舊慣이라면 廢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역시 남겨야 할 舊慣과 없애야 할 舊慣을 구별하지 못하는 論者이다. 論者여! 舊慣의 힘이 강함은 英國을 최고로 한다. 그러나 英國은 善惡利害의 선별없이 舊慣이라면 모두 이를 保存해야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學士의 말에 가로되, 舊慣은 가급적 保存해야한다. 허나 不正한 舊慣은 이를 廢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그 까닭이 舊慣을 존중하는 기준은 新古에 의해 세움에 있지 않고, 利害에 의해 세워야 한다. 옛 것을 숭상함은 骨董家가 자주 이를 말한다. 論者は 부디 骨董論者가 되지 말지어다.」 (「女帝を立るの可否」『東京横浜毎日新聞』1882年(明治15)3月23日。『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 岩波書店, 1988, p.287.)

습관이 있는 동시에 여제를 세운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¹²

democracy 의 번역어로 ‘민주주의’를 최초로 적용하였고,¹³ 강골한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고이즈카지만 입법이 국민의 습관과 관계가 있고 계승순위에서는 남존여비의 영향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 여제 용인론도 남녀동권의 인권감각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성천황이 즉위한 습관을 근거로 삼는다고 말하였다. 여제의 가부를 둘러싼 시마다, 고이즈카 두 사람의 논쟁은 전근대 - 근대적, 수구 - 혁신이라는 대립이 전혀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남녀동권이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음을 이해하면서도 남존여비가 일본의 습관이었음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도리보다 습관을 우선시한 점에서도 일치한다. 양자의 차이는 진무(神武)천황에서 메이지(明治)천황까지 122대의 천황 중에서 10대의 여성천황이 즉위한 사실에 대한 해석에서 기인한다. 10/122는 어디까지나 예외로 다음 남성천황이 즉위하기까지의 ‘섭위’ 즉 중간의 연결로 생각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면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한반도 왕조와 비교해도 많은 10/122는 ‘습관’으로 간주하여야 할까? 달리 말하자면 남존여비라는 ‘전통’속에서 여제즉위도 ‘전통’으로서 간주해야 하는지 아는지의 논쟁의 중핵으로서 존재하였다.

2. 국학자의 의견

1장에서 서술하였듯이 1889년에 제정한 구 황실전범 제1조에서 남계 남자 계승주의에는 이노우에 고와시의 具申, 또 이 구신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오메이샤 시마다 등의 주장이 그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구 황실전범 성립까지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구 황실전범은 우선 1876년(메이지 9년)의 제1차 안, 1878년(메이지 11년)의 제2차 안, 그리고 1885~6년(메이지 18~19년)의 제3차 안이 존재하였다. 이 제3차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황위계승이 정해져 있었다(관련 조문만 제시).

第一條 今上天皇의 자손을 제위계승의 정통으로 삼는다.

第二條 제위를 계승하는 자는 嫡長을 正으로 삼는다. 만일 太子가 있지 않을 때는 太子 男統의 후예가 있다. 太子 男統의 후예가 없을 때는 太子의 동생 혹은 그 男統의 후예가 있다. 嫡出 男統의 후예가 모두 없을 때는 庶出의 아들 및 그 男統의 후예, 親疎의 순서에 따라 들어와서 있다.

¹² 「法律이 어찌 항상 地平 위에서 세울 수 있겠는가? 시험삼아 보자. 米合衆國은 法律制度를 세움에 舊慣舊習 때문에 방해받음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그러나 여전히 米國 祖先이 법률을 세울 때, 多少 舊慣舊習의 불평등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我日本과 같이 英國과 같이 가장 舊慣의 불평등에 괴로워하는 나라이다. 세상의 立法者라는 者は 法律을 세울 때, 잘 習慣의 如何를 고려하고, 其國의 風土人情에 應하여 法律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日本에 女帝를 세운 制를 廢해서는 안된다고 말함은 男女 間에 同等한 權을 세우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곧 日本은 男子를 높이는 風習이 있기 때문에 繼統의 順序는 男女 中에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나는 男을 앞으로 하고 女를 뒤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女子가 三人있거나 五人있어도 決코 九五의 位를 물려주어선 안된다고 말함에 이르러서는 단연코 이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름아니라 日本에는 男子를 높이는 風習이 있음과 同時에 女帝를 세우는 風習도 있기 때문이다.」(「女帝를 세울의可否」『東京横浜毎日新聞』1882年(明治15)3月29日. 『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 岩波書店, 1988年, p.294.)

¹³ 민주주의라는 번역어의 정착, 또는 애초에 민주주의라는 번역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노구치 다다히코(野口忠彦)의 일련의 연구가 유익하다. 同, 「『民主主義』は適譯か—「デモクラシー」譯語考序說」(1)~(4), 拓殖大學政治經濟研究所 編, 『政治・經濟・法律研究』12(1)(2), 13(1)(2), 2009~2011年. 同, 「譯語『民主主義』使用の一般化」, 『政治・經濟・法律研究』16(1), 2013年.

第三條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직 帝位를 계승할 자를 얻지 못할 때는 황족이 親疎 순서에 따라 들어와서 大位를 잇는다. 만약 부득이할 때는 女統이 들어와서 이을 수 있다.

남계 남자 계승주의에 근거한 규정임은 의심할 여지도 없지만, 주목할 부분은 남계 계승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계 황위계승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주도로 1884 년(메이지 17 년)에 설치된 제도취조국(制度取調局)이 제출한 초안 「황실제규(皇室制規)」에서는 역시 남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조로 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제 1 조에서 여계 천황을 인정하였고 또 제 6 조에서는 여성 천황의 즉위도 포함시켰다(관련 조문만 제시).

第一 皇位는 男系로서 계승하기로 한다. 만약 皇族 중에서 男系가 끊어질 때는 황족 중의 女系로서 계승한다. 男女系 각각 嫡을 우선시하고 庶를 뒤로 하며, 嫡庶는 각각 長幼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第三 皇位를 계승할 皇子가 만약 薨去했을 때는 皇孫에게 전한다.

第四 皇位를 계승할 皇子孫이 없을 때는 皇子의 형제(皇兄弟) 및 그 자손에게 전한다.

第五 황자의 형제 및 그 자손이 없을 때는 皇伯叔父 및 그 자손에게 전하고, 皇伯叔父 및 그 자손이 없을 때는 皇太伯叔父 이상 및 그 자손에게 전한다.

第六 皇族 중의 男系가 모두 끊어졌을 때는 皇女에게 전하고, 皇女가 없을 때는 다른 황족 중에게 전함을 第三, 第四, 第五條의 예를 따른다.

第七 皇女 혹은 皇統의 女系로서 황위계승을 할 때는 그 皇子에게 전하고, 만약 皇子가 없을 때는 그 皇女에게 전한다. 황녀가 없을 때는 皇族 중에서 다른 女系에게 전하고 第三, 第四, 第五條의 예를 따른다.

第十三 女帝의 夫는 皇胤으로서 臣籍에 들어간 자 안에서 皇統에 가까운 자를 맞이한다.

이상과 같이 구 황실전범 성립으로 연결되는 정부측의 초고에서는 남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계천황이나 여성천황의 즉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시기 초안작성에서 중요한 소임을 맡은 것이 국헌편찬 담당[國憲編纂掛]이다. 그 중에서도 국학 그룹의 공헌은 지대하였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자가 요코야마 요시키요(横山由清, 생몰은 1826 ~ 79 년)였다. 요코야마 요시키요에 대해서는 후지타 히로마사(藤田大誠)의 노작¹⁴이 있으니, 이하의 서술도 후지타의 연구에 많이 의거하였다. 후지타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약간의 사건을 덧붙이고자 한다.

요코야마 요시키요는 일본 학문[和學]을 혼마 유세이(本間游清)・이노 히데노리(伊能穎則)에게서 와카(和歌; 일본 고유의 노래)를 여류시인이자 양모(養母)인 요코야마 게이코(横山桂子) 및 이노우에 후미오(井上文雄)에게서 배웠다. 화학강의소(和學講義所) 교수가 되었지만, 유신 후에는 메이지 신정부의 부름을 받아 쇼헤이 학교(昌平學校) 사료편수(史料編修), 대학중 조교(大學中助教)가 되었고, 더 나아가 제도국 어용 담당[制度局御用掛] 어전 편집(語箋編輯)으로서 법률제도의 정비에 힘썼다. 그 중에서 법률 편찬에 관한 경력을 후지타의 연구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서술하면, 요코야마는 원로원이 설치된 다음 달인 1875 년(메이지 8 년) 5 월 24 일은

¹⁴ 藤田大誠, 『近代國學の研究』, 弘文堂, 2007 年.

동원(同院)의 ‘편집 담당[編集掛]’, 6월 17일에는 ‘구전류찬 담당 겸무[舊典類纂掛兼務]’, 또 7월 24일에는 ‘편수와 과장’이 되었다. 그런데 ‘조사과(調査課)’에는 ‘내국부(內國部)’에서 시작하여 국학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고전고증을 담당한 ‘편집담당[編集掛]’과 ‘외국부(外國部)’에서 시작하여 도시민권과를 중심으로 구미 각국헌법의 번역을 담당한 ‘조사담당[調査掛]’·‘번역담당[翻譯掛]’의 두 계통이 있었다. 게다가 후자에는 오메이사와 관련된 인물이 많았는데 시마다 사부로도 번역담당[翻譯掛]의 대서기생(大書記生)이었다. 한 쪽은 전근대까지 일본의 전통적 학문인 국학, 또 한 쪽은 근대적인 서양학문에 근간을 두었음을 알아 두었으면 한다.

여기서 남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성천황도 용인하는 초고가 존재하였음은 앞에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초고작성에는 살리카 법전을 상속관습으로 삼으면서도 여왕이 즉위한 영국과 스페인 등의 사례를 알고 있었던 ‘외국부’ 계통의 서양학 그룹의 관여가 상정된다. 그러나 시마다 사부로가 말하였듯이 여제 용인론자에는 ‘일본 서적에 통달한 사람’ 즉 국학자들도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대표 인물이 ‘내국부’ 계통의 요코야마 요시키요였다고 추측된다. 요코야마에게는 아마도 국헌편찬 담당[國憲編纂掛] 시기에 썼다고 생각되는 「繼嗣考」¹⁵라는 문서가 후지타의 연구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그 전문의 번각(翻刻)은 후지타의 저작에 게재되어 있는데¹⁶ 남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繼嗣는 男統으로써 하고 女統을 後로 한다.”, “만약 男統의 繼嗣할만한 者が 끊어져서 없을 때는 女子로써 大統을 繼嗣하게 할 수 없다. 그러할 때는 그 女帝의 配偶者를 맞이하여서 그 血統을 保續하도록 한다.”고 하여 여계천황, 여성천황의 즉위를 용인하였음이 주목된다. 시마다가 비판대상으로 삼은 여계 여성 용인론의 국학자란 구체적으로는 요코야마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과감하게 추론을 한다면, 시마다 사부로에게 요코야마 요시키요는 같은 조사과 안의 다른 그룹의 리더에 해당하였고, 남계 남자 계승주의만을 주장하는 자신에게는 고전고증의 성과에 입각한 여성 여계 용인론자였던 요코야마가 성가신 존재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3. 근세와의 불연속

구 황실전범의 성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황위계승의 남계 남자주의를 규정한 이노우에 고와시였지만, 그는 자설의 논거로서 오메이사의 시마다 사부로, 누마 모리카즈들 뿐만 아니라 국학자 고나카무라 기요노리(小中村清矩)¹⁷의 의견도 참고하였다. 여제 여성천황의 가부에 대해서는 서양학 계열의 그룹 뿐만 아니라 국학 그룹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1885년(메이지 18년)에 고나카무라가 쓴 「女帝考」를 이노우에가 숙독하였고, 이노우에 소장(고인 문고[梧陰文庫] 소장)의 「女帝考」에는 다음과 같은 이노우에의 필적이 있다는 사실이 고바야시 히로시(小林宏)의 논문¹⁸에서 지적하였다.

第三章 皇統

第九條 皇位를 계승함은 男系の 男子로 제한한다.

¹⁵ 萩野由之, 『和葦雜編』 1, 東京大學附屬總合圖書館所藏의 앞부분에 있다. 요코야마의 자필 稿本은 아니지만 하기도 요시유키(萩野由之)가 요코야마의 본 문서를 베껴 적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요코야마의 관계자료는 대부분 관동 대지진으로 소실되었고, 본 문서의 원본도 소재불명이 되었다.

¹⁶ 藤田, 앞의 책, pp.330-331.

¹⁷ 생몰년은 1821년~95년. 모토오리 우치토(本居内遠) 등에게서 국학을 배웠고 와카야마 현에서 고학관 교수(古學館教授)를 지냈다. 유신 후는 다조칸(太政官)으로 출사하였고, 大學中助教, 내무성 사사국(社寺局) 어용담당[御用掛], 도쿄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古事類苑』의 편집에도 관여하였다. 1893년에는 귀족원 의원이 된다.

¹⁸ 앞의 논문.

이 條의 疎證에는 또 기요노리(清矩)가 저술한 女帝考가 가장 적합하다.

이를 본다면 고나카무라의 「女帝考」는 남계 남자주의를 주장한 문서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女帝考」는 직접적으로 남계 남자주의를 강조한 게 아니라, 스이코(推古) 천황에서 고사쿠라마치(後櫻町) 천황까지 8 명 10 대의 여성천황, 더 나아가 즉위는 하지 않았지만 ‘여제’로 간주되어 온 ‘진구 황후(神功皇后; 신공황후)’, ‘이토요(飯豊) 천황(이토요 아오노 히메미코; 飯豊青皇女)’ 등 스이코 천황 이전의 여제 2 명, 총 10 명에 대한 사적과 고나카무라의 평이 적혀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여제’들의 즉위는 정치 정세 등에 의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이고 또 차기 천황이 즉위하기까지의 중간 연결이었다고 한 고나카무라의 분석은 역대 여성천황의 즉위는 습관이 아니라 ‘섭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 이노우에의 지론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고바야시의 논문에서는 이노우에가 일본 전통법과 유럽법 사이에서 공통항을 찾아서 이를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본 전통법의 계승이라는 명분으로 입법화하였다고 하였다.¹⁹ 물론 이노우에가 어떠한 예측도 없이 귀납법의 방법으로 공통성을 찾아내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황실법의 성문화(成文化)에서 남계 남자주의는 당초부터 이노우에에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원리였으므로 실제로는 남계 남자주의를 전제로 일본의 황실 및 해외 왕조의 역사와 법률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 갔을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남계 남자에 의한 황위계승을 ‘전통’이라고 할 때, 그때까지의 다양한 옛 ‘전통’은 재편되고 가공되어 갔다. 그러나 이는 법무관료였던 이노우에에게만 국한되었을까? 나는 그 뿐만 아니라 이노우에의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 국학자 고나카무라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고나카무라의 「女帝考」에는 미토학자 아사카 단파쿠(安積澹泊)의 『大日本史贊藪』가 인용되었는데, 고나카무라는 『贊藪』 고유의 문장을 꽤나 취사선택을 하면서 인용하였으니 아사카 단파쿠가 말하려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생겨났다. 이는 종래 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하 구체적으로 논증하겠지만, 아사카 단파쿠의 『大日本史贊藪』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논고²⁰에서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女帝考」의 관련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논하고자 한다.

미토학에서 편찬한 『大日本史』에서 진구 황후를 本紀(天皇의 전기)가 아니라 后妃傳에 편입한 사실은 유명하지만, 종래에는 그 이유를 여성천황의 경시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강하였다. 그러나 이는 큰 잘못이다. 그렇다면 왜 진구 황후는 본기에서 제외되었는가? 아사카 단파쿠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츠아이(仲哀) 천황 붕어 후 오진(應神) 천황은 4 세였는데, 황태자가 된 4 세에서 즉위 전인 70 세까지 황태자였던 기간은 설령 진구 황후에 의한 치세가 천황으로서 체제를 실제로 갖추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본래는 오진 천황이 곧바로 즉위해야 했으니, 진구 황후의 稱制를 ‘섭정’으로 간주한 도네리 친왕(舍人親王)의 기술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²¹ 즉 진구 황후의 칭제문제는 황위계승에서 정식 황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구 황후가 계속 권력을 고집한 사실에 대한 비판으로, 여성멸시로 인해 진구 황후의 치세를 ‘섭정’으로 간주하였다고

¹⁹ 앞의 논문, p.391.

²⁰ 拙稿, 「安積澹泊『大日本史贊藪』について」, 『季刊日本思想史』81号, ぺりかん社, 2014年.

²¹ 「仲哀는 不庭을 征伐하고 中道에 崩殂하였다. 皇后는 그 威武를 빼앗고 크게 六師에게 맹세하여, 신문을 할 죄수를 붙잡고 추종하는 무리들을 붙잡아 妖氣를 掃蕩하니 마침내 잘 병사를 옮겨서 三韓을 平定하여 不世의 勲을 세웠다. 剛明함과 雄毅함은 古今에 傑出하였다. 시호를 神功이라고 하여도 과찬이 아니었다. 仲哀가 붕어할 때 皇后는 태기가 있었다. 凱旋한 날에 皇子를 쓰쿠시(筑紫)에서 낳았다. 네 해를 넘기자 책립하여 皇太子로 삼았으니 마침내 황위[大寶]를 차지함이 七十年이었다. 도네리(舍人) 親王이 日本書紀를 편수하여 皇后의 稱制를 적어서 攝政이라고 하였다. 이는 特筆한 것이다. 後人은 史書를 읽고도 그 義를 풀지 못하였다. 다만 그 사적만을 보고 실제로 즉위하였다고 하여서 皇統의 世次에 열거함은 또한 매우 잘못이다. 그렇지만 應神의 降誕은 仲哀의 붕어 뒤에 있다. 이는 마땅히 세워서 天子로 삼아야 할 者이지만 皇太子로 삼게 함은 도대체 어떠한 명분인가! 그를 關[樞] 앞에서 冊立하게 한다면, 곧 처음부터 仲哀의 후계[儲貳]가 된다. 붕어하여 네 해를 넘겨서 책립함은 이것이 누구의 후계가 되겠는가! 天下는 하루도 主가 없어서는 안된다. 天子를 세우지 않고 太子를 세웠다 함은 명분을 바로잡고 실상을 조사한다면 곧 이를 실제로 즉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仲哀의 氣長足姬皇后傳贊(後世 神功皇后라고 諡함)、卷七四。『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岩波書店、1974年)、p.74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皇統에서 ‘정통’이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아사카 단파쿠는 『춘추공양전』 은원(隱元) 원년의 ‘立適以長不以賢, 立子以貴不以長’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嫡子는 適夫人(正妻)의 아들 중에서 현명함과 불초함[賢不肖]을 따지지 않고 연장자를 뽑고, 그 밖에 측실의 아들이나 姪娣의 아들 사이의 서열은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현명함과 불초함으로 정하며, 정치에게 아들이 있다면 서자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계승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²² 아사카 단파쿠의 정통론도 세계의 상속, 계승에서 일반적인 이른바 적장자계승제를 기조로 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舊, 現 황실전범과 같이 남계 남자의 계승만을 인정한다는 관점을 채용하지 않았는데, 아사카 단파쿠는 여성천황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실적이 뛰어나다면 그 즉위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관점일 갖고 있었다. “무릇 겐메이, 겐쇼 二帝는 안으로는 단결(端潔)을 행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인자한 마음을 가졌으며, 온화함은 만물에 미치고 공손함과 검소함, 어진 마음과 인자함(恭儉仁恕)은 천성에서 나왔다. 이미 물자는 풍부하고 인구는 많았으며 사해는 평안하였으니 用은 잘도 질롱(郅隆)한 다스림을 이루었다. 이를 여자 중의 堯, 舜이라고 불려도 괜찮을 것이다. 후대의 人主가 二帝의 憂勤한 마음을 잘 체득한다면 오비르메노 무치(大日靈貴; 아마테라스 오카미[天照大神])를 가리킴 - 오카와[大川]의 주석)가 우주에 비추는 德은 만세에 걸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²³라고하여 겐메이, 겐쇼 두 여성천황에 대한 최대한의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고나카무라도 『贊戴』에서 겐메이(元明) 천황의 贊(논평)을 全文에 가까운 형태로 인용하면서 “이 論으로 義를 다한다면 더 첨언하지 않겠다.”고 하여 동의를 나타내었다. 『贊戴』의 겐메이 천황의 찬²⁴이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곧 겐메이 천황이 즉위한 이유는 황태자였던 수친왕(首親王; 후의 聖武天皇)이 어렸으니, 군주는 민중을 기르고 다스리는 자인데 나이 어린 군주로는 그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즉위한 것으로 권세를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사심은 전혀 없었고 천리(天理)의 공(公)에 바탕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고나카무라의 「女帝考」도 전대의 여제론(女帝論)을 계승한 부분이 있음은 확실하지만, 어디까지나 통치의 실적(특히 백성에 대한 선정)에 의거하여 “후대의 人主가 二帝의 憂勤한 마음을 잘 체득한다면 오비르메노 무치가 우주에 비추는 德은 만세에 걸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겐메이・겐쇼(元正) 두 천황을 가장 높게 평가한 아사카 단파쿠의 견해는 계승되지 않았다. 곧 고나카무라 - 이노우에의 계열에서는 여성천황은 어디까지나 차기 남성천황이 즉위하기까지의 ‘섭위’라는 소임이 강조되어 그 정치실적을 평가대상으로 삼은 전대까지의 사상적 흐름과는 단절되었던

²² 「適을 세움에 長으로서 하고 賢으로서 하지 않는다.子を 세움에 貴로서 하고 長으로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옛 道이다. 혹은 諸母가 모두 같다면 곧 母는 子로서 귀해진다. 嫡母가 낳은 바 곧 子는 母로서 귀해진다. 義는 並行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故로 正嫡에 子가 있다면 곧 庶子가 長이라 할지라도 세우지 못함은 또한 매우 명백하다.」(文德의 皇子惟喬親王傳贊、卷九十一。『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岩波書店、1974年), pp.95-96.)

여기서 ‘立子以貴不以長’의 ‘子’의 해석에 대해서는 何休, 『春秋公羊經傳解詁』에서 의거하였다. 또한 『春秋公羊經傳解詁』의 현대어역은 岩本賢司, 『春秋公羊傳何休解詁』, 汲古書院, 1993年을 참고.

²³ 『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 岩波書店, 1974年, pp.33~34.

²⁴ 「贊에서 가로되, 文武가 봉어함에 臨하여, 聖武는 아직 어렸다. 天下는 一日도 君이 없어서는 안된다. 故로 元明에게 萬機를 攝行하도록 請하였다. 和銅 연간(708~715) 末에 이르러 聖武가 皇太子가 되었다. 나이가 이미 장성하여 마땅히 天位를 傳해야 하였다. 그러나 詔旨에서 말하길 “나이가 어려서 몽매하니 아직 大業을 짊어지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곧 元正에게 禪位하니, 皇太子가 일반 정무[庶政]를 스스로 하기에 이른 然後에 元正이 그에게 傳하였다. 모두 天理의 公에서 나왔고 털끝만큼의 사사로움도 있지 않았다. 그 意를 생각하면 “君은 民의 司牧이니, 어찌 幼弱한 主에게 그 職을 맡게 할 수 있겠는가.” 그 天下를 公으로 하는 마음은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다. 故로 잘 雍熙의 化를 이룸은 推古・持統의 治보다 뛰어났다. 上가 仁으로서 흠뻑 짓고 義로서 연마하는 까닭과, 下가 집집마다 넉넉하고 풍족한 까닭은 무릇 人主에게 있어서 모두 잘하기 어려운 바이다. 그러므로 母儀의 德과 君臨의 業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겠다.」(元明天皇紀의 贊, 卷一四。『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 岩波書店, 1974年, pp.32-33.)

것이다.

맺으며

특히 여성천황 즉위의 是非에 관해서 말하자면 여성멸시에서 이를 논하는 사람이 많이 보인다. 일찍이 법학자 요코타 고이치(横田耕一)가 여성천황 즉위를 부정하는 논의를 유형화시키면서 남계 남자주의를 ‘전통’으로 보는 논의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공무 담당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차별적인 논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²⁵ 또 우과지식인으로부터는 고켄[孝謙(쇼토쿠; 稱徳)] 천황이 승려 도쿄(道鏡)를 총애한 사실을 너무 강조하여 여성천황 부정론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다. 하라 다케시(原武史)가 지적하였듯이²⁶ 고켄 천황과 도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측천무후와 설희의(薛懷義)와 같이 여성 정치수장에 의한 성 스캔들(사실과는 매우 다른)을 더욱 좋아하고, 또 이를 여성의 사회, 정치진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부여해 온 역사가 동아시아 세계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북방에 미인이 있으니 세상에 견줄 이 없게 홀로 뛰어나, 한번 돌아보면 남의 성을 망치고 두 번 돌아보면 남의 나라를 망치네. 성 망치고 나라 망치는 걸 왜 모르랴마는 미인은 다시 얻기가 어렵다오(北方有佳人, 絶世而獨立, 一顧傾人城, 再顧傾人國[『漢書』孝武李夫人傳]).”와 같이, 미인에게 정신이 빠져 직무를 방기한 자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다.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牝鷄之晨, 惟家之索[『尚書』牧誓]).”는 잘못된 유산은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서는 안된다. 남녀참여, 다양성이 당연한 사회 규범이 된 오늘날, ‘남존여비’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잘못된 ‘전통’(악습)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현재 사회규범을 참조하면서 미래에도 적용 가능한 황실계승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²⁵ 横田耕一, 「皇室典範」, 『法律時報』 48-4, 日本評論社.

²⁶ 原武史, 『〈女帝〉の日本史』, NHK 出版新書, 2017 年.

【발표 논문 5】

일본 민법의 형성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적용 : 제령 제 7 호 <조선민사령>을 중심으로

남기현

들어가며

이번 발표의 목적은 1896 년(明治 29) 법률 제 89 호로 정해진 일본 민법과, 이후 시행된 민사관련 법률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적용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추후 일본과 식민지 조선 사이에서 형성된 ‘법적구조’의 형태를 고찰하기 위한 기초적인 고찰이기도 하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프랑스 법학자 보아소나드(Gustave Émile Boissonade)를 초빙하여 1888 년(明治 21) 민법전을 편찬했다. 하지만 이것의 시행은 연기되었고, 우메 겐지로(梅謙次郎) 등의 주도하에 새로운 민법전이 만들어졌다. 1896 년 총칙, 물권, 채권 부분이, 1898 년에 친족, 상속 부분이 공포되었고, 1899 년 7 월 16 일부터 모두 시행되게 되었다. <민사소송법>과 <상법>은 1899 년부터 사실상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민사관련 법률들은 1910 년 8 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병합 된 후 식민지 조선에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민사관련 법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적용된다는 것은 조선총독이 발표한 제령인 <조선민사령>에 규정되었다. <조선민사령>에는 민사관련 일본법은 ‘의용’ 한다는 조항과 함께 일본과는 다른 ‘특례조항’도 함께 병기되었다. <조선민사령>은 19 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의 법이 식민지 조선에 적용하게 하는 근거가 되면서도, 일본과는 다른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반영된 법령이었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제국의회 내에서 논의되었던 조선총독의 입법권한, <조선민사령>의 제정과정과 구성, <조선민사령>내에서 규정된 일본민법과 ‘특례조항’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1. 일본 제국의회에서 논의된 조선총독의 위임입법권한 ‘제령권’

1910 년 5 월 30 일 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한국 통감으로 임명되면서 일본의 '한국병합' 계획은 구체화되었다. 테라우치는 통감으로 부임하기 전 내각의 동의하에 비밀리에 '병합준비위원회(併合準備委員會)'를 구성하고 '병합실행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 월 하순부터 7 월 7 일까지였으며, 이곳에서 작성한 '병합실행계획안'은 일본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

병합준비위원회에서는 부분별로 검토사항을 정하고 총 22 개 항목으로 구성된 <병합실행방법세목(併合實行方法細目)>을 만들었다. 병합준비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 중 하나는 한반도에서 일본헌법을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일본헌법을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일본헌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이 구상한 '한국병합'의 성격과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었다.¹

일본정부는 대내외에 대한제국과의 병합은 '양국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에 의한다면 대한제국은 일본의 새로운 영토로 편입되고 한국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일본인으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했다. 병합준비위원회는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든 후 일본헌법을 시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헌법 내에서 예외법규를 제정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²

1910 년 일본정부는 천황이 명령한 긴급칙령 제 324 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1. 제 1 조 조선에서는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제 2 조 전조(前條)의 명령은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을 거쳐 칙재(勅裁)를 청해야 한다.
3. 제 3 조 임시긴급(臨時緊急)을 요하는 경우에 조선총독은 즉시 제 1 조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은 발포 후 즉시 칙재를 청해야 한다. 만일 칙재를 얻지 못한 때는 조선총독은 즉시 그 명령이 장래에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공포해야 한다.

¹ 한성민, 「乙巳條約 이후 일본의 '韓國併合'과정 연구-일본인 실무관료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199~201 쪽, 207 쪽

² 일본 내에서 식민지 조선에 헌법을 실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의 한성민, 동국대박사학위논문과 小川原宏幸, 「韓國併合と朝鮮への憲法施行問題-朝鮮における植民地法制度の形成過程」, 『日本植民地研究』 17, 2005 가 참조된다.

³ 「朝鮮ニ施行スベキ法令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官報』 第 1 號, 1910.8.29.

4. 제 4 조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선에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칙령(勅令)으로 이를 정한다.

5. 제 5 조 제 1 조의 명령은 제 4 조에 의해 조선에 시행된 법률과 특히 조선에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및 칙령에 위배될 수 없다.

6. 제 6 조 제 1 조의 명령은 제령이라고 부른다.

부칙 본령(本令)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일본 내각에서는 조선총독의 제령 발포권을 규정한 칙령을 발표한 이유로 “조선은 인정, 풍속, 습관이 다르고, 조선인들이 갑작스럽게 일본법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만의 경우를 참조하여 “조선총독에게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강조하였다.

<긴급칙령 제 324 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의 법률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일본헌법 제 5 조에 따르면 일본에서 입법권은 천황에게 있었다. 그리고 칙령을 발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헌법 제 8 조에는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에 따라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 법률에 대신할 칙령을 발한다”라고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음 회기에 열릴 제국의회에 칙령을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제국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발표된 칙령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공포해야 했다.⁴

<긴급칙령 제 324 호>는 발표될 당시 제국의회가 폐회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헌법 제 8 조에 근거해서 공포될 수 있었다. 이 법령 제 1 조와 제 6 조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식민지 조선에서 필요한 법률을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었고, 이 권한을 ‘제령’이라고 했다. 제 1 조에서 언급되는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일본헌법 제 2 장에 있는 신민의 권리의무, 제 5 장 재판소의 구성, 재판관의 자격, 재판관에 대한 징계, 특별재판소의 관할, 행정재판소, 제 6 장 조세·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했다. 일본헌법에는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제국의회의 협찬을 얻어 천황이 법률의 형태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제령이라는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제국의회의 관여 없이 법률을 규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⁴ 外務省 編, 『外地法制誌』 7 권, 文生書院, 1990, 16 쪽, 21 쪽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에는 제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령은 내각총리대신을 거쳐서 천황의 승인을 받아야했다(2 조). 이것은 내각 각 성을 관장하는 대신들의 승인을 받아야함을 의미했다. 제령을 원활하게 발표하기 위해서는 내각과 조선총독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 3 조에 따르면 조선총독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제령을 발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포 후에 바로 천황에게 승인을 받아야 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조선총독은 공포했던 제령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공시해야 했다. 또한 제령은 일본 의회에서 조선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과 천황이 발표한 칙령에 위배할 수 없었다(5 조).

<긴급칙령 제 324 호>가 발표된 후 제령에 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제 27 회 제국의회가 열리는 1910 년 12 월까지, 약 3 개월간 차단되었다. 1910 년 12 월 20 일 제 27 회 제국의회가 소집되었다. 일본헌법 제 8 조에 따라 긴급칙령은 제국의회 승인을 구해야 했다. 1911 년 1 월부터 의회의 주요 안건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1911 년 1 월 21 일,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桂太郞)는 제국의회에서 시정방침연설을 하였다.

같은 날 내각은 <칙령 제 324 호>를 비롯한 11 건의 승인을 구하는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칙령 제 324 호>는 1911 년 1 월 24 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총독의 ‘제령권’을 규정한 법률이 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긴급칙령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입법권을 위임하는 제령발포권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의회 내부의 정치관계, 내각과 당시 의회의 주도정당이었던 정우회 간의 정치적 이익관계를 두고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1911 년 1 월 26 일, ‘제령권’ 논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무소속 의원이었던 하나이 다쿠조(花井卓藏)는 중의원 본회의에 ‘제령권’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률안에는 제령의 효력기간을 1915 년 12 월 31 일까지로 설정한 부칙(附則)이 붙어있었다. 하나이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이유서에서 “의회가 긴급칙령에 대한 사후승낙을 하더라도, 칙령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 혹은 개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국의회에서 법을 수정하고 개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칙령이 아닌 법률로 조선총독의 ‘제령권’을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나이가 제출한 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었다. 그 결과 제령의 효력기간은 삭제되었고 <긴급칙령 제 324 호>와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가결되었다. 이후 이 법률안은 귀족원에 회부되어 논의되었고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911 년 3 월

13 일에 수정 없이 통과되었다. 조선총독의 제령권을 규정한 법은 1911 년 3 월 25 일 법률 제 30 호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으며, 당일부터 시행되었다.⁵ 이와 함께 일본정부는 1911 년 3 월 25 일 “1910 년 <칙령 제 324 호>는 장래 그 효력을 잃는다”라는 내용을 담은 <칙령 제 30 호>를 공포하였다.⁶

조선총독은 <법률 제 30 호>에 근거하여 위임입법권인 제령을 통해 식민지 조선을 통치해 나갔다. 조선총독이 공포한 제령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먼저 일본의 법률을 ‘의용(依用)’하는 것이다. 법률의 ‘의용’이란 일본의 법령을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적용하되, 조선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례사항을 두는 법률 행위를 지칭한다. 이 경우 일본의 어떤 법에 ‘의(依)한다’라고 표기되었다.⁷ 두 번째는 조선총독이 법률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제령은 일본법을 ‘의용’하지 않고 조선총독부의 통치 필요에 따라 만든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⁸ 제령은 식민통치의 기반확립이나 통치방침의 변동, 전쟁 같은 정치적인 격변이 있을 때 많이 공포되었다.⁹

2. <조선민사령>의 제정과정과 구성

‘의용 제령’의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1912 년 8 월에 발표된 제령 제 7 호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었다.¹⁰ 이 법령은 부칙을 포함한 총 82 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령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 법령을 ‘의용’한다고 규정한 제 1 조이다. 제 1 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등 민사에 관한 총 23 개 일본 법률이 식민지 조선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일본 본국의 주요 법령이 시행되면서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주요 부동산권의 종류와 효력 매매 등에서 일본민법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⁵ 法律第 30 號「朝鮮ニ施行スベキ法令ニ關スル法律」1911.3.25.; 김창록, 「제령에 관한 연구」, 『韓國 近現代의 法史와 法思想』, 민속원, 2009, 137 쪽.

⁶ 『朝鮮總督府官報』第 171 號, 1911.3.29.

⁷ 淺野豊美는 일본의 법령을 제령을 통해 ‘의용’하는 것은 “내지(일본)의 민법과 형법이 법역의 벽을 넘어 그 지역에 연장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상의 편의와 사법상의 정합성을 통합한 규정”이라고 하였다(아사노 토요미(淺野豊美), 최석환 역, 「日本帝國의 통치원리 ‘내지연장주의’와帝國法制의 구조적 전개」, 『법사학연구』 제 33 호, 2006, 195 쪽).

⁸ 拓務大臣官房文書課 編, 『内外地法令對照表: 昭和 16 年 9 月 1 日現在』, 1941, 207 쪽; 김창록, 「제령에 관한 연구」, 『韓國 近現代의 法史와 法思想』, 민속원, 2009, 146 쪽.

⁹ 한승연, 「제령을 통해 본 총독정치의 목표와 조선총독의 행정적 권한」, 『정부학연구』 15 권 2 호, 2009, 176 쪽.

¹⁰ 「朝鮮民事令」에 대해서는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정책』, 역사비평사, 2008; 정공식, 「조선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법」, 『東北亞法研究』 제 11 권 제 1 호, 2017 이 참조된다.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면서 법원 판결에서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었다. <조선민사령>은 식민지 조선의 민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일본과는 다른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반영한 ‘특례 조항’이었다. ‘특례조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소송분야였다. <조선민사령> 전체 82 개 조항중 약 75%정도가 이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은 ‘신속한 절차’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식민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례조항’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는 조선인의 관습상의 권리를 규정한 부분이었다. 제 10 조에서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관습을 인정했다. 제 11 조에서는 제 1 조에서 ‘의용’한 일본 법령에서 능력, 친족,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되었다. 제 12 조에서는 부동산 물권에 대한 관습을 인정했다. 조선의 관습을 특례로써 인정한 것은 일본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른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반발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민사령>이 개정되면서 일본민법의 적용은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관습은 부정되었으며, 일본민법의 적용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갔다.

‘의용 제령’의 특성에 대해서는 경성제국대학교 교수직을 역임했던 기요미야 시로(清宮四郎)의 지적이 참조된다. 기요미야는 일본의 법률이 조선, 대만 등에 바로 시행될 경우와 ‘의용’ 될 경우의 차이를 설명했다. 먼저 일본 내에서 시행되는 법령이 조선 등에 시행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구역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경우 일본의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식, 내용 등이 그대로 조선, 대만 등에서 시행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형식, 내용의 법령이 일본과 조선 등에서 시행되고, 최종적으로, 적용된 법령에 관해서는 일본과 조선, 대만 등은 동일한 「법역(法域)」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같은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반면 ‘의용’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행되는 법령이 조선, 대만 등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으로 지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 시행된 법령은 조선 등에서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으로서 채용되어 들어가게 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시행된 법이 직접적으로 조선 등지에서 시행되어 효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결국 ‘의용’된 법령(일본법)과 ‘의용’한 법령(조선의 제령, 대만의 율령 등)은 서로 내용이 동일하여도, 별개의 법령으로 독립되어 통용되고, 해당 법령에 대해서는 일본과 조선 등은 자연스럽게 「이법역(異法域)」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조선의 경우 민법은 제령인 <조선민사령>으로 흡수되어졌고, 따라서 조선에서는 민법으로 행하여지지 않고, 조선에서

통용되는 <조선민사령> 내용 중 일부를 형성하는 데 불과하다”고 말하였다.¹¹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제령인 <조선민사령>으로 ‘의용’되었다. 따라서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조선민사령>의 하나의 내용으로 채용되어 들어간 것이며, 직접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되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다. 즉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조선민사령>이라는 제령의 형식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적용된 것이다. 동일한 내용의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일본과 조선에서 적용되었지만, 그 형식은 일본 내에서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조선에서는 제령인 <조선민사령>이었다는 점에서 일본과 조선은 서로 다른 ‘법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법을 ‘의용’하여 식민지 조선에 적용한다는 것은 원래 총독부의 의도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의 당초 구상은 독자적인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여 조선 주재 일본인에게는 일본의 민법과 상법, 형법, 형법시행법을 적용하되 조선인 간의 민사사건과 조선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것은 일본 정부에 의해 부정당했고 가능한 한 일본에서 시행되는 법률을 ‘의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¹²

그 결과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은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 7호로 발표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제 1조에 의해 ‘의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조선민사령>이 공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1912년 1월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는 <조선민사령>을 재가해달라는 ‘제령안(制令案)’을 내각총리대신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에게 보냈다.¹³ 1912년 1월 19일, 척식국(拓殖局)에서는 <조선민사령> 내용이 담긴 ‘제령안(制令案)’을 수령했고, 5일 뒤인 24일에 조사를 완료했다. 1912년 3월 11일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하여 내무, 외무, 육군, 대장, 사법, 해군, 농상무, 문부, 체신성의 각 대신들, 법제국 장관, 서기관장이 <조선민사령>을 재가(裁可)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에 부서(副署)했다. 4일 뒤인 1912년 3월 15일 내각총리대신 사이온지는 천황에게 ‘제령안(制令案)’을 상주했으며, 같은 날 천황의 승인이 이루어졌다. 천황의 승인이 있는 후 3일 후인 1912년 3월 18일 데라우치는 제령 제 7호 <조선민사령>을 발표했다.

¹¹ 清宮四郎, 『外地法序説』, 有斐閣, 1944, 97~98 쪽, 101 쪽.

¹²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487 쪽.

¹³ <朝鮮民事令>이 제정되는 과정은 「朝鮮民事令ヲ定ム」(아시아역사자료센터 <https://www.jacar.archives.go.jp/>)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의 <조선민사령> 내부 조항 해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민사령>은 일본 법령을 ‘의용’함을 규정한 제 1 조와 ‘특례조항’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조선민사령>이 적용되면서 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해석해야 할 경우가 생겼다. 첫 번째 <조선민사령>과 다른 제령간의 관계이다. <조선민사령>은 식민지 조선에서 민사관련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근간은 <조선민사령> 제 1 조에 규정된 일본법령들이었다. 그런데 조선총독은 식민지 통치를 위하여 민사와 관련된 여러 제령들을 공포했다. 이 제령들과 <조선민사령> 제 1 조에 규정된 일본민법, 민사소송법사이의 관계를 조정해야 할 경우가 존재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조선민사령> 역시 제령이었으므로 제령과 제령간의 위치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조선민사령> 내부 조항 간의 해석문제이다. <조선민사령> 제 1 조에 규정된 일본법령들과 ‘특례조항’간의 규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두 번째 문제인 내부 조항간의 해석문제를 식민지 조선의 최고상급 재판소였던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기요미야 시로(清宮四郎)는 ‘의용’된 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법이 적용되어질 때 생긴다고 하였다. 1 차적으로는 일본법을 ‘의용’한 조선, 대만 등의 법률에서 발생하며, 일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2 차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¹⁴ 이것은 일본민법, 민사소송법을 ‘의용’한 <조선민사령>의 경우, 일본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조선에서 해석되고 적용될 때 그 의미가 부각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은 민사관련 소송과 이것으로 인해 성립된 민사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은 제령과 ‘의용’된 일본법이 서로 식민지 조선에서 적용되고 해석되어지는 공간이었었던 것이다.

일본은 헌법 제 57 조에 근거하여 1890 년 <재판소구성법>(메이지 23 년 법률 제 6 호)이 제정되었다. 이때 대심원을 정점으로 하여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區)재판소가 설치되었다.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발하는 제령과 부령을 통해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917 년 3 월 13 일에 있었던 민상 제 10 호 판결은 <조선민사령> 제 1 조에 규정된 일본민법과 ‘특례조항’ 사이의 관계를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¹⁴ 清宮四郎, 『外地法序説』, 有斐閣, 1944, 97~98 쪽, 100 쪽.

사례이다.¹⁵ 이 재판의 상고인은 조동민이며, 피상고인은 김정규, 오내형이다. 제 2 심 재판소인 대구복심법원에서는 김정규에게 토지소유권은 넘겨받은 오내형이 일본민법 제 177 조에 근거하여 등기를 했기 때문에 분쟁 토지의 소유권은 조동민이 아니라 오내형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동민은 반발하고 3 심기관인 조선총독부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조동민 측이 대항논리로 제기한 것 중에 하나는 등기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민법 민법 제 177 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상 및 변경은 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좇아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인데 현재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조동민 측은 오내형이 토지증명을 받은 것은 일본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아닌데, 이것을 적용한 대구복심법원이 잘못된 해석을 내렸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조동민이 받은 것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가 아니다. 따라서 대구복심법원이 민법 제 177 조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조선민사령> 제 13 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상실 및 변경에 대한 <조선부동산등기령> 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있어서 등기 또는 증명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그의 등기 또는 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는 이를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오내형은 이 법령에 근거해서 증명을 받은 것이므로 “제 3 자인 조동민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조선민사령 제 13 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제 177 조의 규정은 조선에서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조선민사령>에 규정된 ‘특례조항’과 일본법령 조항이 내용이 충돌하거 겹칠 경우 일본법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국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조선에서 민사관련 법체제의 운영은 식민지 본국의 법령을 기반 하면서도 식민지 통치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나가며

일본에서는 1889 년 2 월 11 일 헌법이 공포된 이래 민법, 민사소송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적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식민지 조선에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법률로 발표되었던 일본 법령들은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총독이 발표한 ‘제령’으로 ‘의용’되었다.

¹⁵ 大正六年民上第一〇號 同年 三月十三日 判決, 「土地賣買證明取消並所有權移轉證明手續履行請求ノ件」

일본 국내 정치세력간의 경쟁과 견제에 따른 결과물이었던 <법률 제 30 호>는 조선총독이 발포하는 ‘제령권’의 근거법이 되었다. ‘제령권’을 규정한 근거가 칙령에서 법률로 바뀌었다는 것은 조선총독의 ‘제령권’에 대해 일본 의회가 간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 27 회 제국의회 귀족원 심사위원회에서 오카노 케이지로(岡野敬次郎)는 법률로써 칙령이나 제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국장관 야스이로 한이치로(安廣伴一郎)는 “대권에 속하는 칙령은 별도로 하고 그 밖의 칙령은 법률로써 개폐(改廢)할 수 있으며, 법률로써 제령을 개폐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칙령의 경우는 ‘대권에 속하는 칙령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건이 있지만, 법률은 그렇지 않았다. 일본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조선총독의 ‘제령권’은 일본 의회의 제약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일본의 민사관련 법들이 식민지 조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법령은 1912 년 제령 제 7 호로 발표된 <조선민사령>이었다. <조선민사령> 제 1 조에는 일본법령 23 개를 ‘의용’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조선민사령>에 의해서 민사관련 일본법령은 식민지 조선에서 민사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조선민사령>은 일본법령을 ‘의용’한다는 것을 규정한 제 1 조와 식민지의 상황을 반영하여 규정한 ‘특례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때 제 1 조에 규정된 일본법령과 ‘특례조항’과의 관계를 규정해야 할 경우가 생겼다. 식민지 조선에서 최고재판소였던 조선총독부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해야 했다. 조선총독부고등법원은 <조선민사령> ‘특례조항’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일본법령은 식민지조선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결국 일본의 법령은 제령을 통해 식민지 조선 전반을 규율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률상 일본 제국의회는 조선총독부 권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반면 조선총독은 ‘제령권’이라는 것을 적극 활용하면서 식민지 통치를 하였고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조선민사령>에 규정된 ‘특례조항’이 있을 경우 이것과 겹치는 일본법령은 식민지 조선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일본법령이 바뀌게 될 때마다 일본 법률을 ‘의용’한다는 규정을 둔 <조선민사령>은 개정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총독은 통치와 자신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그것은 ‘특례조항’의 개정을 통해 나타났다.

전통과 제도의 창조 : 19세기 후기 중국의 양무운동

꾸어 웨이퐁
[번역 : 리 코테즈]

중국과 영국 간의 아편전쟁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중화전통의 고전문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전의 중화문명의 변화는 국내에서의 문화통합과정이었으며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주로 동방문명(예를 들면 인도의 불교, 아랍의 이슬람교, 당조시기의 경교(景敎)도 기독교 이단(異端)으로서의 동방교회에 지나지 않음)이며 서양문명의 영향은 간접적이거나 아주 미미한 것이었다.

그 이후 중국과 서양의 2 대문명이 충돌하면서 전통과 혁신은 그 시대 두 개의 큰 주제였다. 한편으로 중화 전통문명은 서서히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변이와 쇠퇴현상이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경우 중화문명 속의 다른 문명, 특히 서양 문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흡수함으로써 세계의 다른 문명체계와의 긴밀한 융합이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 전통문명의 일부는 끈질기게 살아남아 계승되었으며 중화문명은 여전히 그 민족적 특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19 세기 후반의 양무운동은 사회형태전환의 관건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양무운동 시기는 기물(물질)면에서의 변동 시기이고 무술유신(戊戌維新) 시기(5.4 운동전후 시기라는 설도 있음)는 문화변동의 시기이며 신해혁명(辛亥革命)시기는 제도변화의 시기라고도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세 시기는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얽혀있으며 셋 모두가 19 세기후반의 양무운동 중에 발생하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1. 제기(製器)

1840 년 6 월 21 일, 영국의 동방원정군은 광저우의 주장커우(珠江口) 밖까지 침입하여 아편전쟁이 발발하였다. 중국은 패전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 당시의 일치된 결론은 [기물(器物:기계 등 제품)이 열세했다] (「器不如人」) 였다. 따라서 아편전쟁 후의 당시의 선각자들은 나라를 구하는 첫째 방법은 [서양 오랑캐의 선진기술을 배워서 그 힘으로 서양을 제압하자(師夷長技以制夷)는 것이었다. 소위 “장기(長技:선진 기술)”란 주로 기술과 기물이다. 그 시기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문화나 전통제도가 뒤떨어졌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고 [서양 오랑캐(夷)는 포화(砲火) 외에는 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¹ (「該夷人除砲火以外，一無長技」) 는 것이 당시 중국당국과 지식인들의 서양문명에 대한 최초의 인식 이었다.

제 2 차 아편전쟁(애로호 전쟁)이 일어나 영불연합군이 베이징(北京)을 공격함에 따라 함풍제(咸豐帝)는 도망치고 원명원(圓明園)은 소실되었다. 굴욕적이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 조야(관민)에서는 [기술이 낙후되었다]는 인식만 깊어 갔다. 19 세기 60 년대에는 중화문명체계 속에 서양의 물질문명 (洋器) 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점차 위정자(為政者)들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 정귀관(曾國藩)은 서양의 포함(砲艦)을 구입하는 것이 중국을 파국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일”(第一要務)라고 보고 있었다. 리홍장(李鴻

¹中国史学会主编『鴉片戰爭』中国近代史資料縱刊 (一) 神州国光社 (上海) 1954 年版、第 122 쪽

章)도 [서양인들은 우수한 총이나 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² (「西人專恃其 炮炮輪船之精利, 故能橫行于中土」)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화자(開明者)들의 추진으로 중국역사상 제 1 차 근대화 운동이라 불리는 양무운동이 시작된다.

[자강] (自強)을 취지로 하는 양무운동은 처음에는 군사부터 시작했다. 19 세기 60 년대 이후, 중국최초의 서양무기를 장악하고 서양교관을 채용한 육군으로 상군(湘軍)과 회군(淮軍)이 잇따라 나타났으며 중국최초의 근대 해군으로 북양과 남양의 해군(水師)이 나타나고 중국최초의 근대 무기공장인 안칭군계소(安慶軍械所), 텐진기기국(天津機器局), 산둥기기국(山東機器局)등이 출현하며 중국최초의 근대 함선제조공장인 푸저우선정국(福州船政局), 지양난제조국(江南製造局)이 설립되며 중국최초의 군사용 근대통신 시설인 진후전보선(津滬電報線), 텐진전보총국(天津電報總局)등이 나타났다. 서양문명의 도입과 모방은 다른 분야는 없었고 바로 무기제조부터 시작되었다. 중국근대화운동은 주로 군사가 이끄는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근대화 개혁도 대부분은 군사개혁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거의 중국의 근대화 과정의 공통된 현상이었다. 군사개혁은 언제나 다른 개혁보다 한 박자 빨랐던 것이다. (19 세기의 양무운동과 들은 우선적으로 군사공업을 시작했고 민간공업 창설은 70 년대이후로 밀렸다. 다른 방면의 개혁은 매번 군사개혁에 의해 이끌려왔다. 근대적인 군사공업은 대기계 생산체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공업도 뒤따라 창설되었다. 또한 군대를 조직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였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재정개혁과 근대 은행체계의 확립이 불가피했다. 군사들의 훈련에는 우선 장교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근대적 군사교육기관이 설립되었다. 신식군대를 만들려면 서양에서 배울 필요가 있으니 제도와 사상 면에서의 변화를 유발했다 등등). 19 세기 60 년대부터 90 년대 중반까지의 양무운동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근대의 대기계공업은 체계적인 산업이다. 함선이나 총포를 만들려면 기계가 필요하고 기계를 제조하려면 철강이 필요하고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이 필요하고 석탄 채굴 후에는 수송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 철강업, 광업, 운수업, 동력업(動力業:엔진)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중국의 근대 수송체계도 철도건설부터 시작했으나, 시발점은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1873 년 영국의 란손 루이비사는 동치(同治)황제의 결혼선물로 혼례철도를 청나라에 만들어 주겠다고 건의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근대 문명발전의 추세는 가로 막을 수 없었으며 1878 년에는 리홍장이 당산개평(唐山開平)탄광을 개업했는데 그 석탄수송 때문에 소규모 철도를 건설하였다. 민중들의 분노가 무서워서 처음에는 마차(馬車)로 견인하다가 나중에는 소규모의 기관차로 바꾸었다. 1886 년에 와서야 궤도철도를 확대하였는데 그때의 궤도폭이 4 척 8 촌반(四尺八寸半)이었으며 그것이 나중에 중국철도 궤도의 기준이 되었으며 기관차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갑오전쟁(청일전쟁) 전까지 중국의 천진에서 다구(大沽), 환저우(灤州)까지의 철도를 부설하고 그것을 관외(關外)로 확대하였으며 전체 길이는 705 리였다. 인쇄업의 기술도입도 빨랐는데 1798 년에 체코의 발명가인 알로이스 제네펠더가 발명한 석판인쇄술(lithograph)이 아편전쟁 전에 광저우로 전해졌으나, 그 중에서 영향력이 컸던 것은 『신보』(『申報』)관주(館主)인 영국상인 E 마쵸가 중국에서 설립한 점석재석인국(點石齋石印局)이며 그는 1884 년 5 월에 상해에 “점석재화보”를 설립하고 그 후로 20 년간동안 석판술이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발전하였다. 서양의 석인술은 중국식 목각에 비해 우수한 점이 많아 1883 년에 황식권(黃式權)은 『송남몽영록』(『淞南夢影錄』)에서 [서양의 석판은 반듯하게 갈아서서 거울 같고 거울 투영방식으로 돌 위에 글을 찍고 그 다음 풀을 붙이고 유묵(油墨)을 바르면 대량의 서적이 하루 만에 완성되며 소 털처럼 부드럽고 코뿔소 뿌리처럼 밝다]고 기술하였다. 그 석판인쇄술과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난 한자연인술(中文鉛印術)은 현대중국의 인쇄술과 직접 연결된다. 석인술(石印術)과 연인술(鉛印術)의 채용은 서적과 신문의 고속 대량 인쇄를 가능하게 했고 또한 인쇄비용을 많이 절감시켜 문화서적의 보급과 대중화를 위하여 훌륭한 조건이 갖춰졌다. 상인이 돈벌이를 위해 실시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문화의 급속한

²宝璽等編『籌弁夷務始末』(同治朝)中華書局(北京)2008年版、第3476쪽

대중적인 전파를 밀어주는 꼴이 되었다.

근대적 도시건설도 시작 되었다. 1867년에는 “상해수룡공소(上海水龍公所)”가 성립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된 전문적인 소방대였다. 1881년에 영국인이 상하이에서 수도회사를 설립하여 도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음용수가 더욱 청결하고 편리해졌으며 1886년에는 상하이에서는 하수배관을 부설했으며 시가지의 오수가 그냥 흘러가는 일은 점차로 사라졌다. 1882년 상하이에 중국최초의 가로등이 설치되었는데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전기 불빛에 사람마음이 울렁거리 불안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는 루머가 일시 떠돌았으나 ……나중에는 무해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접근금지하는 것을 그만두었다]³. 이해 여름에는 전화(역음으로 [텔레폰])도 상하이탕에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소비구조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항구를 개방했더니 값싸고 질이 좋은 박래품(舶來品)이 막을 수 없는 기세로 국내의 전통물산의 고유시장에 밀려들어왔다. 1850년 상하이의 외국화물의 수입총액은 390.8 위안이었으나 1860년에는 3,667.9 만위안으로 9 배이상 급증했다⁴. 1899년 일본의 근대중국학 연구의 일인자인 나이트 코난(内藤 湖南)은 중국복방을 고찰하면서 베이징에서 장자커우(張家口)로 가는 도중에 난커우샤우전(南口小鎮)을 견학하고 [난커우의 여관에는 생각 밖으로 양식 욕조도 있고 서투른 필법으로 Bathroom 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또한 양변기도 제대로 있고 길에는 외국관광객도 많아, 영국인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⁵ 라고 기록하고 있다. 새것을 좋아하고 남다른 것을 추구하며 양식을 따르는 것이 패션이 되고 양화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상이 되었다. 복장은 인류의 생활문명의 변천을 상징하는 구체적이고 섬세하며 특히 외적으로 분별하기 쉬운 지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 복장은 품이 너르고 소매가 너른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몸에 딱 맞는 복장으로 변했으며 특히 공장노동에 적합한 복장으로 변했다.

도시 사람들에게 양복과 서양식 액세서리의 영향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천진위(天津衛)에서는 [서양인을 태운 인력차를 끄는 어린 마부는 소매가 짧은 옷에다 짧은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작은 짚삿갓을 쓰고 입에는 잎 담배를 물고 손목시계를 차고 가슴에는 배지를 달고 자기가 돌아보아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래도 몸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괜창게 생각하는]⁶ 모양새이다. 상하이탄의 패션은 [여성에게 없어서는 안될 장식으로는 높은 뽕족구두, 팔에는 검정담비 모피의 손토시 하나, 다이아몬드 또는 보석으로 된 단추 2,3 개 달리고, 가죽 목도리 하나, 금테 안경, 그리고 머리장식,비단 스카프 등이 유행되고 있었다. 한편 남성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으로는 양복, 외투, 서양모자, 가죽구두, 지팡이, 코안경, 어느 정도의 서양의 말(외국어)]등이 유행이었다⁷. 그들의 의복과 장식은 부근의 도시나 향촌에서 온 것이 아니라 대양의 저쪽에 있는 구미에서 온 것이며 그들은 [세계시민] (「世界公民」)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라 생각했다. 소비생활은 점차적으로 봉건적 등급제의 속박을 벗어나 개성화 되고 대중화되고 서양화된 특성을 나타냈으며 더욱 서양송배가 근대 소비생활의 중요한 기조가 되었다⁸.

공업화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되고 중국은 제 1 차 근대 도시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급속하게 발전되어 도시는 정치통치의 중심으로 각 부문이 수직적이게 되었으며, 수평적인 연결이 희박한 전통도시로부터 경제무역을 위주로 하는 망연결형 근대 도시 형태로 변형 되었다. 도시는 전례없이 경제면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얻었으며 도시를 주축으로 하는 경제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농촌은 도시의 지배를 받고 소도시는 대도시의 지배를 받고 대도시는 통상항만도시의 지배를 받으며 통상항만도시는 세계 각

³徐珂辑：《清稗口钞》，北京：中华书局，1986年版，第6038쪽

⁴张仲礼：《近代上海城市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0年版，第108—114쪽.

⁵内藤湖南、青木正二：《两个日本汉学家的中国纪行》，王青译，北京：光明日报出版社，1999年版，第84쪽

⁶張焘『津門雜記』卷下、天津古籍出版社1986年版、第137쪽

⁷《西装叹》，《申报》，1912年4月22日。

⁸譙珊：《近代城市消费生活变迁的原因及其特点》，载《中华文化论坛》，2001年第2期。

대시장의 상황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와의 일체화 물결에 휘말렸다. 그리고 장강삼각주, 주강 삼각주, 화북지구의 3 대 도시 밀집구가 점차 형성되고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하는 장강삼각주의 발전이 가장 눈부셨다. 1843 년에 항만개방 이전에 상하이 (上海) 의 인구는 50 만명밖에 안되며 기껏해야 중등규모의 도시로서 난징(1852 년에 90 만인구), 항저우(아편전쟁 전에는 60 만인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1862 년에는 상하이시의 인구만 해도 300 만명에 달하여 일약 중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⁹. 1893 년 대만과 동북을 제외한 중국의 도시는 1779 개였고 도시인구는 23,513,000 명으로 증가하며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은 6%였다¹⁰.

전체적으로 30 여년의 [동광신정] (同光新政)을 거쳐 중국의 국력은 크게 올라갔다. 그러나 기물 (器物:물질) 측면의 발전 만으로는 부족하며 기물 측면의 변화는 다른 영역의 변화를 끌어내게 된다. 중국은 [기물이 낙후된 것]만은 아니며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소질이 남보다 못한 것] (「人不如人」) 이다. 봉건적인 전통의 질곡(속박)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억압받고 사람들의 재질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질은 또한 단기간에 높이기 힘든 것이며 이것은 기술개혁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근대화 개혁은 서서히 더욱 폭넓은 방향으로 전개 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2. 문화

아편전쟁 이후 서양학은 완전히 동양학을 짓누른다. 그 과정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서양학은 우선은 사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속에서 반향을 일으키며 이런 사람들의 신분은 각기 다르나 모두 문화인인 것은 틀림없다. 소위[학자는 서양학을 배워야만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다]¹¹ 는 것처럼 학자들은 당연히 문화영역에 중심을 두고 있었으나 아편전쟁 시기와 전후의 한 시기에는 그들의 서양에 대한 인식은 혼돈되어 있었으며 표상적이었다.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은 술선수범해서 세계를 내다보고 있었던 선구자들의 자아인식의 한계가 있었다. 위원(魏源)의 『해국도지』 이든 서계척(徐继畲)의 『영환지략』 (『瀛環志略』) 이나 요영(姚瑩)의 『강유기행』 (『康輶紀行』)이나 모두 중국인이 최초로 쓴 서양의 개황을 소개하는 선구적인 서적으로서 귀중한 것이지만 그들이 서양을 소개함에 있어서 너무 천박한 지식과 단편적인 지식에 의한 것으로서 외부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저작은 기본적으로 서양학의 저작을 인용하여 자기의 지식체계를 만들어낸 것 이었다. 위원은 이런 방법은 [서양적인 서양학]¹²이라고 지적한바 있으며 주로 번역과 편집에 주력했다. 상기에서 보듯이 세계를 내다보았다는 선구자들은 번역과 편집이라는 수법으로 서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누락과 오류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다.

서양문화가 중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에 의한 것 이었다. 1850 년대 전후에 기독교의 포교활동은 우선 먼저 사회하층의 문인이나 민중 속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폭동인 태평천국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홍수전(洪秀全, 1814 ~ 64 年) 은 스스로 [천부] (「天父」) 신에게서 임명된 [진명천자] (「真命天子」) 로 자기를 인식하고 자신을 [태평천왕대도군왕전] (「太平天王大道君王全」) 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기독교의 리더들은 [배상제교] (「拜上帝教」) 를 국교(国教)로 정하고 신을 신봉하는 것은 어떤 곳이든 성전으로 여겼다. 1851 년초 [배상제교]라는 서양의 종교와 중국의 농민들과 결합된 특이한 부대가 [금전봉기] (「金田蜂起」) 를 일으키고 나라의 이름을 [태평천국] (「太平天国」) 이라 하였다. 1853 년 3 월 19 일에는 50 만명의 태평군이 난징을 점령하고 [천경] (「天京」) 으로 개명하여 수도로 정했다. 홍수전이라는 과거(科擧)에도 급제 못한 실패한 서생(書生)이 자기도 완전히 이해못한 서양의 종교를 이용하여 기세를 타고 청나라정부와 대립하는

⁹ 《北华捷报》, 1862 年 2 月 21 日, 1863 年 3 月 12 日。

¹⁰ [美]施坚雅 (G. William Skinner) 主编: 《中华帝国晚期的城市》, 叶光庭等译, 北京: 中华书局, 2000 年版, 第 264 页

¹¹ 劉大鵬『退想齋日記』山西人民出版社(太原) 1990 年版、第 102 页

¹² 魏源『海国图志』(大西洋)卷三十九(原叙)岳麓書社(長沙) 1998 年校注本。

새로운 정부를 설립한 것이다. 이 정권은 10 여년 유지 되었으나 기독교가 중국에서 광범한 토대를 갖고 있지 않았기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

양무운동파들은 [서방교회] (「西教」)나 [서방정치] (「西政」)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서양문명에 대한 관심은 [서양기물] (「西器」)이나 서양기술(「西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양무운동은 기물(器物) 측면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며 서학(西學)과 서양문화를 도입하고 중국근대 문화와 교육사업을 넓은 면에서 개설하기 시작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중국의 근대적인 신학당(학교)이 서양인에 의해 최초로 설립되고 1860 년까지 기독교신교(新教)는 중국에서 50 개이상의 각종학교를 설립하였다. 카톨릭 학교에 관한 통계자료가 부족하지만 신교가 설립한 학교보다는 적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인에 의해 설립된 신식학당은 양무운동파들이 설립한 것이 많은데 3 가지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동문관(同文館)과 같은 어학 학교이며 베이징, 항저우, 상하이 등지에 설립되어 외국어 교육이 진행되었다. 두번째는 군사 학교이며 1866 년에 좌종당(左宗棠)이 마웨이(馬尾)에 설립한 구시당예국(求是堂芸局)이며 이는 중국근대 최초의 해군학당이었다. 또한 리홍장이 텐진에 설립한 최초의 육군학당인 텐진무비학당(天津武備學堂)등은 중국근대의 군사교육의 선구였다. 세번째는 기업에 부속된 전문적인 기능을 훈련하는 간이학당(簡易學堂)이었다. 양무운동 시기에 중국정부가 설립한 근대적인 학당은 적어도 30 여개 된다.

19 세기 70 년대에는 양무운동파들이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유학생을 보냈는데 1872-75 년사이에 4 차례에 걸쳐 120 명의 학동(學童)을 유학보냈고 육군으로서는 1876 년에 독일에 7 명을 유학시켰으며 해군으로서는 1877-85 년사이에 77 명을 프랑스와 영국에 파견했다.

신문분야에서는 중국근대 최초의 신문업은 외국인이 만들었다. 1822 년 9 월 12 일에 카톨릭교가 마카오(澳門)에서 밀봉화보(『蜜蜂華報』)를 창간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간행된 최초의 외국어 신문이었다. 1890 년대 중반에는 중국에서 12 종류의 신문이 간행되었는데 주로 상하이에 집중 되어 있었다.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매체를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상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매체의 탄생에 연관되었으며 서로 보완관계에 있었다.

과학분야: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된 중국의 전통적 지식체계는 능통성과 모호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전통적 4 개의 분류법에 의한 학문은 경(經), 사(史), 자(子), 집(集)으로 집약되고 그것이 모든 지식을 망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지식의 축적에 의하여 각 학과분야는 근대적 노동분업의 세밀화와 전문화를 필요로 하며 그에 따라 근대적 과학체계에 따른 분류화와 전업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분류과정은 서양에서 시작되었다. 근대이래 중국인의 과학기술에 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학과류를 나누지 않고 굵기를 분별하지 않는] (「門類不分, 粗細不辨」) 중국의 전통적인 구학(舊學)을 바탕으로 해서는 새로운 학문의 발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새로운 학문에 적응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서양의 학문체계를 바탕으로 중국의 학문체계를 재구축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1862 년에 설립된 [경사동문관] (「京師同文館」)은 1867 년에 학과설정에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어학 외에도 산수, 화학, 만국공법, 의학생리, 천문, 외국역사 지리 등 과목을 설치하였다.

생물학: 1858 년에는 『식물학』(Elements of Botany)이 출판되었는데 그 원본은 영국의 식물학자인 린들리(John Lindley)의 저작이며 중국에 와있던 영국의 교사 윌리엄슨과 중국근대의 저명한 과학자인 이선란(李善蘭, 1811-82)이 공동으로 번역출판한 것이었다. 이 책은 처음으로 중국인에게 현미경에 의한 식물세포의 발견이 가능하다는 학설을 제시하고 또한 근대적 실험에 의하여 구축된 식물체 각 기관의 생리적 기능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고 지구상에서 위도(緯度)의 차이에 따라 식물분포도 다르며 또한 근대식물분류학도 소개하였다. 그 중에서 식물학과 식물학(botany)과 식물분류 단위로서의 과(「科」

family)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처음 만들어졌다¹³.

화학: 18 세기말부터 19 세기초까지 원소론(元素論)과 원자론(原子論)이라는 두 개의 근대화학의 초석으로 되는 이론이 탄생하며 19 세기 후반에는 서양에서는 무기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등 4 대 화학분야를 구축하여 근대화학의 기초가 형성된다. 1867 년에 경사동문관에서는 화학수업이 최초로 시작되고 1880 년에는 상하이격치서원(上海格致書院)에서는 중국의 과학자인 서수(徐壽)와 선교사인 프라이어(부란야:傅蘭雅)가 공동으로 번역출판한 화학감원(『化學鑑原』)등 서적이 교재로 사용되었으며 화학지식의 강의와 세미나도 진행되었다. 徐壽는 처음으로 요소, 바륨, 망간등 24 개의 화학원소명을 번역했다.

의학: 서양의학의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전환되는 시기부터 예수선교사에 의해 중국으로 유입되어 그 후 확대되었다.

지학: 지학(地學)의 연구는 중국에도 오랜 전통이 있으나 서양학과의 교류가 진행된 최초의 학과였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지학이며 또한 주로 지학의 두 개의 분류인 지리학과 지질학분야의 전 단계 연구에 그쳤다. 1872 년에 중국근대초기의 과학자인 화형방(華蘅芳)은 책 두권을 번역출판했는데 그것은 중국의 지학분야에서의 선구적 서적이었다. 라이알의 지질학강요(『地質學綱要』, 『地學淺釋』라는 중국어로 출판)와 미국인인 다나(J.D.Dana)가 쓴 광물수첩이었다. 1896 년에 추대균(鄒代鈞) 등은 우창(武昌)에서 중국최초의 지리학 연구기구인 역인서문지도공회(「訳印西文地圖公會」)를 설립하였다. 이 공회의 규약에는 [천하의 지학에 뜻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나 입사하여 협력하여 학문을 닦을 수 있다]고 쓰여 있다¹⁴.

이상에서 보듯이 양무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서의 학과가 대량으로 [이식] 될 뿐만 아니라 중국고유의 학과에 대한 개조와 재구축이 진행되며 중국문화에 대한 자각적 반성과 소위 [도는 역탐구에 있다](道在反求)¹⁵ 는 경지에도달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서학](西洋學問)이 유기적이고 계통적으로 [중학](中國學問)에 융합되어, 새로운 학문으로써 서양도 중국도 아닌 또 중국이기도 서양이기도 한 근대 [신학](「新學」)이 창출 되었으며 중국과 서양의 학술이 처음으로 하나의 새로운 학술체계 속에 통합되었다.

3. 제도

헌정제도(憲政制度): 중국인이 서방의 근대 정체(政體)에 관한 초기적 이해는 주로 3 개방면이 있었다. 국회제도, 헌법체계, 책임내각 이었는데 통 털어 말하면 헌정사상(憲政思想)이다. 한가지 재미나는 현상은 중국근대의 서양헌정사상에 대한 소개는 꽤키지로 총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선후가 있고 시간상에서도 같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초에 중국에서 전파된 것은 국회에 관한 사상이다. 19 세기 40 년대에 임칙서(林則徐)가 편찬한 『사주지(四洲志)』와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는 최초로 서방의 의회제도에 주목한다. 그 중에서 영국국회에 관한 소개에서 [국가의 큰일은 왕과 관민이 국회(Parliament)에서 의논한다]고 쓰여 있고 또한 미국국회의 관한 소개는 더욱 상세하여 [의원(議院, Congress)을 설립하여 나라의 법령을 제정하며 의원은 두 개로 나뉘어져, 하나는 참의원(Senate)이라하고 하나는 중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이라 한다. 무릇 경제무역, 과세징수, 법률소송, 군사의 중요한 일 등은 반드시 양원에서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¹⁶.

¹³ 汪子春「我国伝播近代植物学知識の第一部訳著」『自然科学史研究』1984年第1期、第90—96쪽.

¹⁴ 張静蘆『中国近代出版史料』(二編)群聯出版社(上海)1954年版、第76쪽.

¹⁵ 中国史学会主編『戊戌变法』(中国近代史資料縱刊)(一)上海人民出版社2000年版、第30쪽.

¹⁶ 魏源『海國圖志』卷六十.

양무운동 시기에 의회사상은 더욱 폭넓게 전파되었다. 1884년에는 조야의 일반적인 선전 뿐만 아니라 관료가 조정에 직접 상소 건의하는 일까지 나타났다. 그 해에 최국인(崔國因)에 의해 편찬된 의원 설립에 관한 건의가 조정에 상소 되었다¹⁷. 또한 더욱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양광(兩廣:광둥과 광서) 총독인 장수성(張樹聲)에 의한 의원설립에 관한 건의(유서로 됨)였다. 흥미로운 것은 의회와 헌법이라는 서양 정치제도에서는 통합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분리되어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의회사상이 먼저 도입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헌법사상의 도입은 뒤떨어졌다. 중국인의 헌정사상에 관한 이해는 의회제도로부터 시작되는 반면 헌법에 대해서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 원인은 의원(議院)이라는 것은 구체적 실물이기에 알기 쉬운데 헌정(憲政)이란 추상적이고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헌법은 의회에 비해 군주(君主)에 관한 근본적 법적제한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한 [주권재민] (「主權在民」),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헌법지상] (「憲法至上」), [제헌] (「制憲」), [위헌] (「違憲」) 등을 가지고 법률화 제도화와 신성화(神聖化)를 강조하고 있기에 전제정체(專制政體)가 견고한 시대에는 전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1895년전에는 헌법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중국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초기 계몽사상가인 정관응(鄭觀應)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가 1895년에 만든 책 『여진차랑부랑서』 (『與陳次亮(陳炯)部郎書』)에서는 [국회를 열고 헌법을 제정하는]것을 구국의 중요한 방책으로 제기한다¹⁸. 같은 시기에 제안된 『치안 5 책』 (『治安五策』)의 마지막 페이지에도 [헌법제정]이라 적혀 있다. 그 중에서 [의원설립도 중요하나 헌법도 제정해야 한다], [헌법이 없으면 전제(專制)가 어려워지고 관리의 권력이 크게 되면 백성들이 무권력이 되며 그렇게 되면 국정을 의논할 수가 없고 상하의 장벽이 생겨 민심이 분산된다]¹⁹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군사제도: 청나라의 군사발전을 대략적으로 말하면 3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함풍(咸豐) 이전의 8기(八旗)와 녹영(綠營)단계, 함풍으로부터 동치(同治)년간의 상군(湘軍)과 회군(淮軍)단계, 그리고 갑오년 특히 경자(庚子)년 후에 추진된 신군(新軍)의 단계이다. 제 2 단계와 제 3 단계는 중국근대의 군사제도의 최초 확립기였다.

재정제도: 청나라의 재정체제는 순치(順治)시기에 최초로 확립되고 옹정(雍正)시기에 완성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계률(戒律)이 엄격하고 해협향(解協響: 정부 부문 간에 서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19세기 4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정태적(靜態的)인 고정화된 재정체제는 항상 변동하는 시국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경직화된 수입체계와 동태적(動態的)인 지출체계 사이에는 갈수록 맞물리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다. 먼저 아편전쟁 등 연속되는 대외전쟁의 지출과 전후(戰後)의 조약배상(條約賠償)에 의해 청나라 재정은 전에 없이 예산 외 지출이 늘어나고 더욱 태평천국 혼란이 발생하면서 원래 중요한 재원 지역 이었던 곳이 태평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해협향(解協響)제도는 전면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대규모의 전쟁에 의해 국고는 고갈이 나고 옹정(雍正)년간에는 중앙금고에 6,7 천만냥(萬兩)의 은비축(銀備蓄)이 있었으나 함풍 3년 6월 12일 (1853년 7월 1일)에는 재정부 장부에 지출가능한 은(銀)이 22.7 만냥(萬兩)뿐이었으며 국가재정은 [지금까지 본적 없는 궁핍화 상황]²⁰에 직면했다.

국가재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 때문에 양무운동 전후에는 새로운 재원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 큰 항목으로는 리금 (厘金: 상품의 지방통과세, 역자주)이라는 세금이 점차적으로 토지세 이외의 제 2대 세수재원이 되고 관세(關稅)가 제 3대 세수원이 되며 그 외에도 외채, 공채 및 관청이 경영하는 양무기업(洋務企業)의 영리수입이 있었다. 그 중에서 리금 이외의 각 수입재원은 근대적 세금재원의 형태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것은 중국 경제사에서 크나큰 전환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²¹. 이러한 변화는

¹⁷ 孔祥吉「清廷關於設立議院的最早爭論」『光明日報』1988年8月24日。

¹⁸ 『鄭觀應集』上海古籍出版社1988年版、第360쪽

¹⁹ 侯宜杰「關於首倡君主立憲者之我見」『文史哲』1889年第5期、第50—53쪽。

²⁰ 中國人民銀行參事室史料組『中國近代貨幣史資料』第1輯上冊、中華書局(北京)1964年版、第176쪽。

²¹ 黃浚『花隨人聖庵撫憶』上海古籍出版社1983年影印本、第367—368쪽。

중국에서 오래동안 지속 되어 왔던 봉건적 재정체제가 서서히 근대적 재정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제도: 청나라의 행정제도의 변동은 먼저 외국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서로부터 시작되며 1850 년대에는 중국근대의 세관제도가 초보적으로 확립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외국인에 의해 조종(操縱)되었으며 소위 [양관] (「洋関」: 서양사람의 세관)에 지나지 않았다. 1860 년에 청나라는 [총리아문] (「總理衙門」)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양무운동의 시작을 나타내고 크나큰 의의가 있었다. 청회전 (『淸會典』: 청나라의 정치제도에 관한 사서, 역자주)에서는 이 기구의 직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다. 즉 [각국과의 조약을 관할하고 조정의 덕신(德信)을 명확히 하며 대부분의 수륙입출(水陸入出)에 과세하는 것을 관리하며 배(船)와 차량의 항행을 관리하며 서적의 출판관리, 화폐의 관리, 외국과의 국경관리, 문서의 번역과 전달(매체)의 관리, 국민교육의 관리 등]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중국의 관료기구의 근대화는 대외 교섭기구의 설립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하면 흥미진진하다.

결국은 양무운동 등으로 구성된 이런 변화를 거쳐 1911 년에 중국에서는 드디어 제도문명이 전환되는 대혁명-신해혁명(辛亥革命)이 일어났다. 신해혁명의 발발은 중국을 260 여년 통치한 청나라의 종언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2 천여년 지속된 봉건군주 전제제도(封建君主專制制度)를 근본적으로 전복시켰다는 것을 선고하였다. 근대 제도문명의 산물로써 헌법, 국회, 민국(民國) 등이 중국대지에서 처음 나타나고 그때로부터 공화(共和)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정통적인 정치체제로 인정되었으며 중국의 정치제도는 근대 문명체도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한걸음을 내디뎠다.

【발표 논문 7】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 :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영어신문 · 중국어신문 · 일본어신문

시오데 히로유키

[번역: 조수일]

들어가며

19 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는 영어신문, 중국어신문 그리고 일본어신문에 의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보도와 언론의 유통이 탄생했다. 본 보고에서는 이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공공권 탄생으로 보고, 대만출병과 류큐처분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의 관심은 ‘공공권(공공성)’¹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근대를 동아시아의 근대 안에 자리매김하는 것에 있다.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신문이 민주화를 촉구하는 공중을 만들어낸 것은 거듭 지적되어 온 바 있지만², 대부분의 경우 ‘공공권’은 일본이라는 네이션만을 단위로 하여 분석되어 왔다. 하지만 미디어로서의 신문이 본래 지니고 있는 글로벌적인 성질 때문에 ‘공공권’은 일국 단위로 완결될 수 없는 것이었다. 본 보고에서는 19 세기 후반의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를 그 범위로 하는 언론공간, 혹은 ‘동아시아 공공권’이 형성된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하에서 논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공공권이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이 주권국가원리를 채택하였으며, 동아시아 내부의 관계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분쟁이었다. 국제분쟁이 상호의 관심을 자극하였고,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언론의 유통을 생성한 것이다.

1 다언어신문 네트워크 형성

(1) 동아시아 각지의 개항과 영어신문

19 세기 중반 동아시아 각지에 설치된 개항지는 단순히 서양중심의 세계시장에 동아시아를 편입시킨 것은 아니었다. 개항지는 한편으로 그 자체가 영국의 잠재적 영향력 하에서 현지사회와 서양문명이 접촉하는 장이 되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각지를 전에 없는 규모와 형태로 묶어 사람 · 사물 · 정보의 일상적인 왕래를 탄생시켰다³. 개항지에서 탄생한 영어신문은

¹ Jürgen Habermas (細谷貞雄、山田正行訳) 『公共性の構造転換 第二版』未来社、1994 年。

² 鳥海靖 『日本近代史講義』東京大学出版会、1988 年、牧原憲夫 『明治七年の大論争』日本経済評論社、1990 年、稲田雅洋 『自由民権の文化史』筑摩書房、2000 年、三谷博編 『東アジアの公論形成』東京大学出版会、2004 年、奥武則 『幕末明治新聞ことはじめ』朝日新聞出版、2016 年。

³ 籠谷直人 『アジア国際通商秩序と近代日本』名古屋大学出版会、2000 年、古田和子 『上海ネットワークと近代東アジア』東京大学出版会、2000 年、川島真 「国際公共財の形成」 (三谷博・並木頼寿・月脚達彦編 『大人の

이들 쌍방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7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신문은 19세기에 서양인에 의해 동아시아로 전해졌다. 우선 19세기 초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1820년대에는 마카오와 광저우와 같은 해협식민지에서 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하고, 상하이 등 5개항을 개항하자 영국인에 의한 영어신문 발행이 본격화되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1870년대에는 홍콩의 *China Mail*(1845년 창간)과 *Hongkong Daily Press*(1857년 창간), 상하이의 *North-China Herald*(1850년 창간)와 *Celestial Empire*(1874년 창간) 등을 유력지로 꼽을 수 있다⁴. 나아가 1858년 안세이 5개국 조약을 통해 서양인이 나가사키와 요코하마 등지에서의 무역을 인정받자, 일본에도 영어신문이 도래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1870년대에서는 *Japan Herald*(1861년 창간), *Japan Gazette*(1867년 창간), *Japan Mail*(1870년 창간)이 유력지로서 모두 요코하마를 거점으로 하는 신문이었다⁵.

이들 동아시아의 영어신문들은 기사의 참조와 전재(轉載)를 통해 바다를 넘다르는 영어신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른바 나마무기(生麦) 사건을 예로 들어 이를 확인해 보자.

1862년 9월 14일(분큐 2년 8월 21일), 요코하마 근교에서 승마를 하고 있던 영국인 네명이 시마즈 히사미쓰(島津久光) 일행과 조우했을 때 사쓰마번사(薩摩藩士)가 무례를 이유로 칼을 들어 한 명이 즉사하고 두 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건 발행 후 얼마 되지 않아 *Japan Herald*(9월 16일)가 호의를 통해 제1보를 전하자, *North-China Herald*(10월 11일)는 이를 전제한 후에 조약상의 통행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기사도 시대라 할 수 있는 일본에서 길을 막아서고 사쓰마번을 모욕한 것은 부주의였다고 논평했다⁶. 이에 대해 *Japan Herald*(10월 25일)는, 시마즈 히사미쓰는 다이묘(大名)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일본이나 중국의 시점에서 보면 영국인은 현지인에게 앞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영국의 법과 관습 하에 살고 있다고 반론했다⁷.

이처럼 기사의 참조·전재는 정보의 유통에 그치지 않고, 종종 논평과 비판 등을 덧붙이면서 반복되었다. 중국과 일본의 영국인은 하나의 보도·언론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중국어신문의 탄생

중국에서는 17세기 말 이래 청조(淸朝) 정부의 정보를 전하는 저보(邸報)가 일간 수준으로 발행되고 있었지만, 저보의 내용은 궁정의 동정, 황제의 유지, 대신의 상소문 등으로 한정되었으며, 저보 이외의 정기간행물은 인정되지 않았다⁸.

최초의 중국어신문은 런던 전도 협회의 영국인 선교사가 광저우에서 직접 중국인에게 전도하는 행위를 금했기 때문에 영국 통치하의 말라카에서 1815년에 발행된 것이었다. 아편전쟁 이후 중국어신문은 선교사에 의해 상하이와 홍콩 등지에서 왕성히 발행되었고, 더불어 영어신문을 모체로 하는 중국어신문이 나타났다⁹.

ための近現代史 19世紀編』東京大学出版会、2009年）。

⁴ Frank H. H. King (ed.) and Prescott Clarke, *A Research Guide To China-Coast Newspapers, 1822-191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⁵ 蛭原八郎『日本欧字新聞雑誌史』大誠堂、1934年。J. E. Hoare, *Japan's Treaty Ports and Foreign Settlements* (Folkstone: Japan Library, 1994).

⁶ *Extra to The Japan Herald*, Sep. 16, 1862, “Assasination of C. L. Richsrdson in Japan,” *NCH*, Oct., 11, 1862. *JH*의 호외 기사는 영국의 *The Times*에도 전재되었다. “The Murder of Mr. Richardson in Japan,” *The Times*, Nov. 28, 1862.

⁷ *JH*, Oct. 25, 1862. 또한 *China Mail*과 *Japan Herald* 간에도 똑같은 응수가 반복되었다.

⁸ 저보의 기원은 송대까지 거슬러 오른다고 한다. 馬光仁『中国近代新聞法制史』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2007年、殷晴「清代における邸報の発行と流通」『史学雑誌』第127編第12号、2018年12月。

⁹ 卓南生『中国近代新聞成立史』ぺりかん社、1990年、小宮山『日本語活字ものがたり』。

또한 상하이에서 1872년 영국인 Ernest Major가 창간한 『신보(申報)』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서양인이 경영하면서도 중국인이 증주가 되어 편집하는 신문이 생겨났다. 이 신문은 논설과 중국인 독자로부터의 활발한 투서에 의해 청조 지방관료에 대한 비판 등도 담아내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대표적인 중국어신문이 되었다¹⁰. 그리고 홍콩에서 1874년에 왕도(王韜)가 창간한 『순환일보(순환일보)』는 중국인이 경영하는 중국어신문으로 첫 성공을 거두었다¹¹.

위에서 언급한 중국어신문은 상하이 등의 개항지와 영국령 홍콩에서 발행됨으로써 청조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고, 특히 개항지에서 서양인이 경영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영사재판권에 의해 신문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후술하겠지만, 영사재판권을 이용한 신문발행은 초기의 일본어신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완수했다.

초창기의 중국어신문에 관해서는 야베 준수쿠(八戸順叔) 사건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청조 정부는 1860년 초 이래 영어신문과 중국어신문에서 국제정세의 정보를 얻고 있었다. 그리고 1867년 초 중국어신문에서 ‘야베 준수쿠’라는 일본인이, 일본이 증기선 군함을 손에 넣었고, 조선을 정벌하려 한다고 전하는 기사가 발견되었다. 이 기사에 위기를 느낀 청조 정부는 조선 정부에 사실을 확인했고, 경악한 조선 정부는 다시 도쿠가와(德川) 정권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도쿠가와 정권은 “사실무근”이라 회답했지만, 조선은 일본에 대해 불신감을 품게 되었고, 이것이 메이지유신 이후의 조선개국교섭 분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¹². 다시 말해 신문 그 자체가 국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야베 준수쿠는 요코하마에서 미국인 Eugene Van Reed의 통역을 담당했고, 그와 함께 미국에 건너간 후 1866년부터는 홍콩과 상하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야베는 중국어신문의 독자였으며, 문제의 기사는 야베 자신이 투고한 것으로 추정된다¹³. 즉 이른바 야베 사건은 일본인의 글로벌한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일본의 지식인이 한학의 소양으로 중국어신문을 읽을 수 있었던 점은 이하에서도 논하겠지만, 동아시아의 다언어적인 보도·언론의 유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3) 일본어신문의 탄생

도쿠가와 정권 하의 일본에서는 재해와 사건을 전하는 요미우리 와판(瓦版) 등은 존재했으나, 그 발행은 단발적이었고, 또한 정치에 관한 출판과 보도는 일절 금지되고 있었다¹⁴. 정기간행물을 살펴봐도 중국의 저보와 같은 정부의 홍보물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도쿠가와 정권은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商館)으로부터 국제정세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지만, 이것 또한 출판되지는 않았다¹⁵.

그러나 개국 직후부터 일본 국내에 중국어신문과 영어신문이 유입되면서¹⁶, 도쿠가와 정권의 학자들은 중국어신문의 번각 출판을 시작하였고, 이어서 네덜란드 동인도 정부의 기관지를

¹⁰ Natascha Vittinghoff, “Readers, publishers and officials in the contest for a public voice and the rise of a modern press in late qing China (1860-1880),” *Young Pao* 87, no. 4 (Jan. 2001): 393-455.

¹¹ 卓『中国近代新聞成立史』、方漢奇編『中国新聞事業通史』第1卷、中国人民大学出版社、1992年、322～330頁、467～488頁、倉田明子『中国近代開港場とキリスト教』東京大学出版会、2014年。

¹² 佐々木揚『清末中国における日本観と西洋観』東京大学出版会、2000年、3～20頁、朝鮮總督府編(田保橋潔著)『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朝鮮總督府中樞院、1940年、『同文彙考』原編・洋船情形、同治6年(大韓民國文教部國史編纂委員會編『同文彙考』三、大韓民國文教部國史編纂委員會、1978年)。

¹³ 陳捷「幕末における日中民間交流の一例」『中国哲学研究』第24号、2009年、福永郁雄「ヴァンリードは“悪徳商人”なのか」(横浜開港資料館・横浜居留地研究会編『横浜居留地と異文化交流』山川出版社、1996年)。「選録上海新報 日本新聞」『中外新報七日録』同治5年12月12日(1867年1月17日)。

¹⁴ 今田洋三『江戸の本屋さん』日本放送出版協会、1977年、木下直之・吉見俊哉編『ニュースの誕生』東京大学総合博物館、1999年。

¹⁵ 松方冬子『オランダ風説書と近世日本』東京大学出版会、2007年。

¹⁶ 宮地正人『幕末維新期の社会的政治史研究』岩波書店、1999年、147、177頁。

번역하여 간행하였다¹⁷. 또한 요코하마에서 영어신문 발행이 시작되자 도쿠가와 정권에서는 야나가와 순산(柳河春三) 등이 이를 왕성히 번역하였다¹⁸.

1860년대 후반에는 일본어신문이 탄생하였다. 당초의 주요 담당자는 일본인 표류민으로서 미국 국적자인 Joseph Heco와 영국인 선교사인 Buckworth Bailey 등 요코하마 거류지의 외국인이었고, 주요 기사는 세계 각지에서 도착한 신문들의 번역이었다¹⁹. 또 1868년에는 보신(戊辰) 전쟁이 한창일 때, 신정부가 정부의 홍보물로서 『태정관일지(太政官日誌)』를 창간하는 한편²⁰ 도쿠가와 정권에 출사하고 있던 양학자인 야나가와 순산과 후쿠치 겐이치로(福地源一郎)가 신문을 발행했고, 신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언론활동을 전개했다. 머지 않아 신정부는 신문의 발행을 허가제로 변경했고, 영사재판권에 따라 지켜지고 있던 외국인의 일본어신문 외에는 폐간되었다²¹.

보신전쟁 종결 후 신정부는 허가제 하에서 신문을 육성하였고, 일본어신문이 속속 창간되었다. 단 1871년의 신문지조례가 ‘정법(政法)’에 대한 ‘방의(謗議)’를 금하고 있어 이들 신문은 정치에 관한 보도·언론활동에는 극히 소극적이었다. *Japan Gazette*의 전 편집자 J. R. Black이 1872년에 창간한 『일신진사지(日新真事誌)』는 예외였다. Black은 영사재판권에 의해 지켜지던 자신의 입장을 이용하여 일본어신문의 정론신문화를 주도했다²².

그러나 1874년 말 일본 정부는 구실을 만들어 Black을 『일신진사지』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였고, 야나가와 외국인에 의한 신문의 경영·편집을 금했다. 그럼에도 Black은 영사재판권을 방패 삼아 1876년에 『만국신문』을 창간했지만, 주일 영국 공사 Harry Parkes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국인의 일본어신문 발행을 금했다. 이로 인해 Black은 상하이로 건너가 영어신문 발행에 종사하게 되었다²³.

Black의 일본어신문이 좌절된 경위는 초기의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이 공통적으로 처해 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 준다. *North-China Herald* 등 상하이의 영어신문은 Parkes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그것은 『신보』 등도 청조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영국 당국으로부터 발행을 금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²⁴.

이처럼 일본어신문은 중국어신문과 마찬가지로 서양인에 의한 개항지에서의 신문발행에 촉발되어 탄생하였다. 서양어 신문과 선행하는 중국어신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점과 메이치유신이라는 큰 정치 변동은 일본이 중국과 조건을 달리한 점이지만, 영사재판권 하에서 서양인에 의해 발행된 일본어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다한 점은 중국과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4) 보도·언론의 다언어적 유통

동아시아 각지에서 영어신문·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이 보도·언론활동을 펼치게 되자 각각의 기사는 같은 언어의 신문끼리 참조·전재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번역 등을 통해 언어를

¹⁷ 小野秀雄「我邦初期の新聞と其文献について」(吉野作造編『明治文化全集』第17巻新聞編、日本評論社、1928年)、北根豊編『日本初期新聞全集』ペリかん社、全67巻、1986年～2000年。

¹⁸ 小野「我邦初期の新聞と其文献について」、北根編『日本初期新聞全集』。

¹⁹ 稲田『自由民権の文化史』25～39頁、奥『幕末明治新聞ことはじめ』23～46頁、77～83頁。

²⁰ 山口順子「『太政官日誌』の発刊」『出版研究』第42号、2011年。

²¹ 稲田『自由民権の文化史』41～68頁、奥『幕末明治新聞ことはじめ』84～108頁。

²² 鳥海『日本近代史講義』、稲田『自由民権の文化史』、奥武則『ジョン・レディ・ブラック』岩波書店、2014年。

²³ 奥『ジョン・レディ・ブラック』260～294頁。

²⁴ 영국의 정책전환에 따라 1881년 이후에는 현지어신문에 대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그때까지는 『신보』의 주자인 Major 자신도 Black과 같은 처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Rudolf G. Wagner, “The Shenbao In Crisi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Conflict Between Guo Songtao and the Shenbao,” *Late Imperial China* Vol. 20, No. 1 (June 1999): 107-138.

초월하여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은 영어신문에 촉발되어 탄생한 경위가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영어신문의 번역기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영어신문 측에서도 현지 정보 수집의 필요상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의 기사를 관심 영역에 맞게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예를 들어 *North-China Herald*는 창간 이래 청조 정부의 저보를 번역 게재하고 있었는데²⁵, 『신보』가 언론의 장으로써 활성화되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종종 논평과 기사를 번역하여 게재하였다²⁶. 일본에서는 1871년 『신문잡지』의 논설 「신봉건론」이 *Japan Mail*에 번역 게재되었고, 이에 대한 *Japan Mail*의 논평이 다시 『신문잡지』에 번역 게재되는 등의 응답도 이뤄졌다²⁷.

이상의 내용과 비교하면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간에 이뤄진 언론의 유통에는 주목해야 할 비대칭성이 존재했다. 19세기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한학은 일반적인 교양이었고²⁸, 중국어신문 기사의 한문 또한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일본어신문은 중국어신문의 기사를 번역 게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²⁹, 때로는 원문 그대로 혹은 훈점을 붙여 전재했다³⁰. 그러나 중국어신문에서 일본어신문을 바로 전재하는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언어 간의 겹에는 확실히 중화문명권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중심·주변관계가 반영되어 있었다.

하지만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요코하마의 영어신문이 일본어신문의 기사를 번역 게재하자, 중국어신문은 그 기사를 다시 번역 게재하여 소개하게 되었다. 1872년에는 『일신진사지』에 게재되었던 어느 투서가 영어신문을 통해 『신보』에 번역 게재되었다. 이 투서란, 조선이 3년 전 신정부로부터 조공(통신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의 부활을 요구받은 것에 대해 보내온 답신이라고 칭하는 문서를 들어 일본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답신의 내용은, 조선은 ‘다이코사마(太閤様)’의 침략 즉 임진왜란을 잊지 않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의 침략도 물리쳤고, 야만적인 서양인을 모방하는 일본과는 교류하지 않겠다 하여 교전을 제안한 것으로 투서자의 창작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Japan Gazette*는 이 답신을 번역 게재하였고³¹, 『신보』는 이를 다시 번역 게재하여 조선이 국제정세를 낙관하고 있다는 염려를 나타냈던 것이다³².

즉 일본어신문과 중국어신문 사이에는 일본 측이 중국어신문을 한문으로 읽고, 중국 측이 일본어신문을 영어신문의 번역을 통해 읽는 형태로 비대칭적이면서도 상호참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후 이와 같은 관계는 동아시아의 국제분쟁에 의해 활성화되어 갔다.

2 동아시아 국제분쟁과 저널리즘 논쟁

²⁵ “Select Extracts from the Peking Reporter: Nos. 52, 53, 54, June 12th, 17th, 1850,” *NCH*, Aug. 3rd, 1850.

²⁶ “The Press and The Mandarins,” *NCH*, Feb. 12, 1874, “The Yang-Yeh-Liu Case (Translated from the Shen-pao of 22nd Jan.),” *NCH*, Feb. 2, 1872. Vittingoff, *ibid*.

²⁷ 松尾正人『廢藩置縣の研究』吉川弘文館、244~257頁、2001年、池田勇太「明治初年の開化論と公論空間」(塩出編『公論と交際の東アジア近代』)。

²⁸ 渡辺浩『東アジアの王権と思想』東京大学出版会、1997年、115~141頁、広田照幸「近代知の成立と制度化」(歴史学研究会・日本史研究会編『日本史講座第8巻 近代の成立』東京大学出版会、2005年)。

²⁹ 예를 들면 「選錄上海新報」『横浜新報もしほ草』第6篇、1868年6月15日(慶応4年閏4月25日)、「支那刊行教会新報ノ抄訳」『東京日日新聞』1872年11月19日(明治5年10月19日)、「香港華字日報」『横浜毎日新聞』1873年5月16日。

³⁰ 『東京日日新聞』1872年9月19日(明治5年8月17日)、「隣邦可相援論」『朝野新聞』1879年1月23日。

³¹ “Corea and Japan,” *JWM*, July 20, 1872, “Japan and Corea,” *NCH*, Aug. 10, 1872에 의함. 당해기의 『일신진사지』와 *Japan Gazette*는 보고자의 좁은 식견으로는 찾아낼 수 없으나 *Japan Mail*에 의하면 *JG*, July 18, 1872에 번역 게재되었다.

³² 「論高麗約日本交戦書」『申報』1872年8月7日(同治11年7月4日)。

(1) 대만출병을 둘러싼 논쟁³³

1874 년의 대만출병은 영어신문이 주도한 보도·언론활동에 자극을 받아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이 활성화되고, 보도·언론의 유통이 다방향화된 계기로써 주목할 수 있다.

대만출병의 발단은 1871 년, 대만에 표착한 류큐인이 선주민인 파이완족에게 침략자로 간주되어 대부분이 살해된 모란사사건(牡丹社事件)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원래 드물지 않은 일이었지만, 메이지유신을 거친 일본 정부는 류큐를 일본의 완전한 일부로 삼는 관점에서 죄를 묻기 위해 대만으로의 출병을 검토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전 미국 샤먼(廈門)영사인 C. W. Le Gendre 로부터 대만 동부는 중국의 주권 하에 놓여 있지 않다는 조언을 받아 놓은 상태였다. 또한 일본 정부는 1873 년에 청조 측이 파이완족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사건의 책임을 부정하였기에 1874 년에 출병을 결행하였다. 그러나 청조 측이 대만은 중국령이라 주장하며 병력 철수를 요구하여 양국은 개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당초 대만출병에 관한 보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영어신문이었다. *Japan Gazette*(1874 년 3 월 30 일)는 일본 정부의 공표에 앞서 출병 결정을 보도하였고, 주일 영국 공사 Parkes 는 이 보도를 보고 일본 정부에 청조 정부의 승인을 얻었는지 문의했다. 또 *Japan Herald*(4 월 7 일, 17 일)는 일본이 대만 영유를 노리고 있다 보고, 청조 정부의 항의를 예상하여 출병에 미국의 선박과 사관이 고용되어 있는 것에 주일 미국 공사 J. A. Bingham 이 목인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기에, Bingham 은 일본 정부에 항의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단 출병중지를 결정했으나, 지휘관이었던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従道)의 독주에 의해 출병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요코하마의 영어신문이 보도함에 따라 중국어신문은 적극적으로 보도·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상하이의 『신보』(4 월 14 일, 16 일, 17 일)는, 대만은 중국의 판도로, 일본이 제재나 침략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라고 경계했다. 대만에 상륙한 사이고 쓰구미치에 대해 민절(閩浙) 총독인 이학년(李鶴年)은 5 월 23 일에 청조 정부의 철병요구를 전했지만, 『신보』(6 월 8 일)는 양자의 왕복문서를 입수하여 그대로 공개했고, 철병요구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 문서는 각지 영어신문에 번역 게재되었고, 다시 일본어신문에도 전재되었다.

한편 *Hongkong Daily Press*(5 월 6 일)는, 중국은 국제법을 이용하면서 주권에 따르는 권리만을 요구했고, 주권은 무시해 왔다고 비판하며, 만약 일본이 대만을 얻는다면 일본의 현상으로 볼 때 대만은 보다 유효한 통치하에 놓인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아편전쟁 종결 후 대만에 종종 서양인 조난자가 표착하였고, 선주민에 의한 습격·살해사건이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조 정부가 일관되게 대응을 거부해온 경위가 있었다.

대만출병에 대한 일본어신문의 반응은 Black 의 『일신진사지』(4 월 20 일)가 “세계인의 비웃음을 면치 못해”라고 비판한 것을 제외하고 당초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도쿄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5 월 26 일)은 “청국구서(淸國歐西)의 논평” 즉 중국어신문과 영어신문의 출병 비판에 대항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아 출병 지지의 입장에서 보도를 전개했다. 단 『도쿄일일(東京日日)』도 제재 목적에 한하여 출병을 지지했기 때문에 청조 정부의 철병 요구가 각지에 번역 게재되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일본어신문의 투서란에서는 이 철병 요구에 대하여 출병의 시비가 활발히 논의되었지만, 그것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언론유통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우편보지신문(郵便報知新聞)』(7 월 10 일, 12 일)에 투서한 다치바나 미쓰오미(立花光臣, 후루사와 시게루(古沢滋)의 필명)은 *Japan Gazette* 의 출병 비판을 인용하여 외국인이 “횡문자”로 일본 정부에게

³³ 이 항목은 주를 달지 않는 한 塩出浩之「台湾出兵をめぐる東アジア公論空間」(同編著『公論と交際の東アジア近代』東京大学出版会、2016 年)에 의함.

“멋대로 평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문자 신문”이 “관리들의 기휘에 저촉되는” 바를 쓸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불공평하다 하여 “중문자도 횡문자도” “자유인민”을 위한 “훌륭한 자유의 문자”가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도쿄일일신문』(8월 31일)의 어느 투서자는 『순환일보』의 기사(『회보(匯報)』로부터의 전재)를 번역하여 “홍콩과 상하이 등의 신문지”의 일본보도가 대만출병 이후 “매우 정밀하고 상세”해졌다고 분석했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귀국한 중국인의 관찰을 소개한 것이며,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지만, 투서자는 현지에 수천 명 아니 그 이상의 독자가 있다고 하며 “지금 이를 피하는 것은 귀를 막고 번개를 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난항 끝에 합의에 도달하자 영어신문·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은 한결같이 전쟁 회피를 환영했다. 하지만 본 보고의 관심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보도와 언론의 유통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5년 후의 류큐처분에 제하여 더욱 현저히 나타나게 된다.

(2) 류큐처분을 둘러싼 논쟁³⁴

1879년에 일본 정부가 강행한 류큐왕국의 병합, 이른바 류큐처분에 대해 그 시비를 둘러싼 논의가 영어신문뿐만 아니라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에서도 활발히 이뤄졌다. 또한 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 간에 상호의 주장이 활발히 참조되었다.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은 류큐의 귀속을 둘러싸고 상호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가능성에 강한 위기감을 품었기 때문에 상호의 의사를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대만출병 결착 후, 일본 정부는 류큐의 완전한 병합을 위해 1879년 4월, 마침내 ‘폐번치현(廢藩置縣)’의 명령을 왕국의 상소에 수락시켰고, 오키나와 현청을 설치했다(류큐처분). 청조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항의했고,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전 미국 대통령 U. Grant의 중재로 양국 간에 미야코(宮古)·야에야마(八重山)에 류큐를 부활시키는 안이 1880년에 일단 타결되었지만, 청조 정부는 러시아와의 분쟁과 류큐사족의 반대에 부딪혀 교섭을 중단하였고, 류큐처분은 점차 기정사실화되었다.

류큐처분이 단행되기 직전부터 류큐와 중국은 일본에게 병합 중지를 요구하였고, 저널리즘에서도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미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의 상호참조도 이뤄지고 있었고, 『신보』(1879년 2월 11일)는 “일본신보의논(日本新報議論)”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로 군·신·민 모두 류큐를 병합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류큐와 중국의 관계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야신문(朝野新聞)』(2월 15일)은, 류큐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귀속이며, “지나 신문지(支那新聞紙)”의 설은 “망탄무계(妄誕無稽)”하다고 주장했다.

류큐처분이 실행되자 『신보』(4월 22일)는 류큐가 일본·중국 양쪽에 귀속되어 온 점을 인정한 후에 류큐를 멸망시킨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지만, 『우편보지신문』(5월 2일, 3일)은 이것을 “지나의 제멋대로론”이라 평했다. 또 『순환일보』(6월 7일)가 류큐는 예부터 중국의 귀속이라 주장하자 『우편보지신문』(6월 21일, 23일)은 그렇다면 중국은 어찌하여 류큐를 보호해 오지 않았는가, 일본은 류큐를 실지배하여 보호해 왔다고 반론했다. 『조야신문』(6월 29일)도 『순환일보』(일자 불상)에 대해 류큐의 중국에 대한 조공보다도 일본과의 관계가 오래다고 주장했고, 또 대만출병의 결착을 근거로 류큐처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이러한 상호참조를 통해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양측 다 일본과 중국 쌍방의 논리가 서로 들어맞지 않는 것 자체를 차츰 이해하기 시작했다. 『신보』(1879년 4월 15일)는 류큐에 관한

³⁴ 이 항목은 주를 달지 않는 한 塩出浩之「1880年前後の日中ジャーナリズム論争」(劉傑・川島真編著『対立と共存の歴史認識』東京大学出版会、2013年)에 의함.

일본 신문의 주장은 일본 사람들의 입맛을 반영하고 있으며, “무리”가 있고 “망론”이기는 하나 “허사(虛辭)”는 아니라 썼다. 한편 『조야신문』(1879년 9월 21일) 또한 양국 쌍방에 “리(理)”와 “증(証)”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며, 어느 한쪽이 입을 다물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다고 적었다.

더욱이 양국 쌍방이 당초부터 중시했던 것은 전쟁의 회피였다. 『신보』(1879년 5월 31일)는 류큐를 둘러싸고 일본과 싸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리(理)”를 인정하면서도 러시아와의 분쟁에 대한 영향을 염려하여 전쟁을 반대했다. 한편 『조야신문』(6월 22일, 8월 1일, 8월 7일)은 “상하이와 홍콩의 신문지”가 일본 측에게 개전의 의도가 있다고 논하고 있지만, 그것은 “망단억측(妄斷憶測)”이라고 주장했다. 전쟁은 가령 이기더라도 “동양정략(東洋政略)”과 “동양무역(東洋貿易)” 상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회피와 더불어 모색된 것은 서양열국의 지지확보에 의한 해결이었다. 『신보』(9월 13일, 11월 9일)는 일본이 만국공법의 ‘공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중국과 서양열국이 힘을 합세하면 일본과 필적하여 류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논했다. 이러한 논조에 대해 『우편보지신문』(1880년 1월 17일)은 “홍콩과 상하이의 지나 신문지”에는 “남에게 기대는 마음”이 있고, 중국에게 개전의 의사는 없다고 분석했는데, 열국이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는 당연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문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Grant 전 대통령을 수행한 *New York Herald*의 기자 J. R. Young은 *New York Herald*(8월 15일, 16일, 9월 1일)에 중국, 일본에서의 요인들과의 회담내용에 대해 상세히 전하며 Grant에 의한 중국과 일본 간의 중재를 밝혔다. 이들 기사는 바로 동아시아의 영어신문·중국어신문·일본어신문 각지에 전재되었다³⁵.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간에는 독자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협조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순환일보』(1879년 10월 18일)와 『신보』(1880년 3월 18일)가 “아주대국(亞州大局)”에 주의를 촉구하며, 중국과 일본의 대립으로 러시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논하자, 『조야신문』(1879년 11월 5일)과 『우편보지신문』(1880년 4월 28일)은 이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조야신문』 관계자는 1880년에 흥아회(興亞會)를 조직하였고, 그 모임의 잡지인 『흥아회보고(興亞會報告)』에 일본·중국·조선이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항하자고 주장한 한문 논설이 게재되자 『순환일보』(1880년 5월 10일, 11일, 12일)는 이에 대해 “식견탁월”이라 평하며 소개했다. 또한 왕도(王韜) 자신도 흥아회에 입회했다. 이러한 협조의 움직임은 일본과 중국 저널리즘 간의 상호참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양자는 상호의 득실 차이를 자각하고 있었다. 중국어신문의 입장에서 중일협조는 러시아와 일본에게 협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부득불 류큐문제에 있어서의 “체면”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류큐처분의 기정사실화를 노리는 일본 측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었다. 홍콩을 방문한 흥아회의 일본인에게 왕도(王韜)는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해 류큐의 “복국(復國)”을 요구했지만, 일본인의 반응은 냉담했고, 왕도는 실망감을 표했다(『순환일보』 1880년 5월 14일). 한편 『우편보지신문』(1881년 3월 3일, 4일, 7일)은 일본과 중국에 예로부터 “보거순치의 친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에 무수한 적국을 발견”하여 그 필요를 느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만출병과 류큐처분으로 중국의 정부□인민은 일본에게 의심을 품고 있으며, 이제는 “홍콩과 상하이의 제 신문”이 일본의 “조선을 향한 야심”을 논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머지 않아 조선을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의 대립이 표면화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³⁵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조하는 *Tokio Times*(10월 11일)는 일본 정부가 Grant와의 회담에서 제시한 일본·류큐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며 청조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Japan Gazette*(11월 29일~1880년 1월 10일)는 *Tokio Times*의 주장을 일본 정부의 공식견해로 간주한 후에 역사적 경위를 재검토하여 비판했고, 일본 정부에게 공개의 장에서 정정 혹은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Yamaguchi, Eitetsu and Yuko Arakawa eds., *The Demise of The Ryukyu Kingdom* (Ginowan: Yojushorin, 2002). 山下重一『続琉球・沖縄史研究序説』御茶の水書房、2004年、221頁。

나가며

아편전쟁 이후 홍콩과 상하이에 영국인이 들어온 영어신문은 일본의 개국 이후 요코하마에서도 발행되었고, 기사의 전재□ 참조를 통한 보도·언론의 네트워크가 동아시아에 형성되었다. 영어신문에 촉발되어 탄생한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도 번역을 통해 1870년대에는 이 네트워크에 가세했다. 이는 동아시아가 세계시장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지역으로써 기능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언론유통의 기반을 이룬 것이 동아시아의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이라고 한다면 언론유통의 활성화를 촉진한 것은 대만출병과 류큐처분 등 동아시아에서 빈발한 국제분쟁이었다. 특히 류큐처분 시에는 중국어신문과 일본어신문 간의 상호참조도 활발히 이뤄졌다. 그 큰 요인은 중국과 일본이 전쟁의 위기에 빠졌고, 쌍방이 그 회피를 지향한 것에 있었다.

이러한 언론의 유통을 통해 영어신문과 중국어신문, 일본어신문 간에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상호다른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론(異論)의 가시화’라고도 일컬어야 할 이 상황을 보고자는 동아시아 공공권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金玉均의 일본 亡命에 대한 日本社會의 인식과 대응

한성민

1. 서론

甲申政變(1884)에 실패한 金玉均 등의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이들은 近代 日本社會가 받아들인 최초의 정치적 망명자였다. 이후 ‘김옥균 인도 문제’는 朝鮮·日本·淸國 정부의 중요한 외교 쟁점이 되었고, 그의 활동은 항상 주요 관심 사항이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김옥균에 대한 처우는 일본정부의 최고 의결기관인 閣議에서 결정되어 시행되었다. 따라서 망명 이후 김옥균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갑신정변 이후 한일관계 또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사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망명 이후 김옥균과 관련한 연구는 망명 직후 김옥균의 인도 문제를 둘러싼 조선정부와 일본정부 사이의 교섭과 분쟁, 1894 년 김옥균 암살사건의 배후 규명 등 주로 國際政治史 또는 外交史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그동안 최초의 근대적 정치 망명자를 수용한 일본사회의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고, 상황에 따라 김옥균과 교류하던 인물들과의 에피소드(episode)를 소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정치 망명자들을 근대 일본사회에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김옥균의 일본 망명

김옥균·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으로 亡命하여 1884 년 12 월 13 일 長崎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망명 사실은 곧바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갑신정변의 사후

조치로 조선 및 청국과 교섭이 예정되어 있던 일본정부는 개화파의 망명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¹ 언론에 대해서도 보도통제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언론은 15일 처음으로 갑신정변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으나, 상당 기간 김옥균 등의 망명 사실이나, 갑신정변에 대한 일본의 관련은 보도하지 않았다.²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일본사회의 반조선·반청국 감정을 자극하였고, 개화파를 ‘日本黨’이라 칭하는 등 김옥균 및 개화파에 큰 동정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과 달리 망명 개화파들은 갑신정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이었다. 망명 직후 김옥균 등은 福澤諭吉 등 일본 내 知人들의 도움을 받아 생활했으나, 기대했던 일본정부로부터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1885년 5월 朴泳孝·徐載弼·徐光範은 福澤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고,³ 김옥균은 일본에 남아 갑신정변 당시 일본정부의 개입을 폭로하는 동시에 갑신정변의 과정을 회고하여 甲申日錄 을 저술하였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갑신정변에 대한 책임문제는 ‘한성조약’의 체결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김옥균 등 망명자 인도 요구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조선과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망명자들은 國事犯이기 때문에 萬國公法の 규정에 의해 인도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⁴

3. 망명 직후 일본사회의 인식과 대응

조선정부는 김옥균 인도 요구가 일본정부로부터 계속 거부당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자객을 파견하였다. 당시 張激奎(張甲福), 池運永 등 자객들의 암살시도는 김옥균 등의 책략에 의해 실패했다. 이 직후인 1886년 6월 1일 김옥균은 井上馨 외무대신에게 서한을 보내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일본정부는 국외 퇴거 명령으로 회답하였다.

예상치 못한 국외 퇴거 명령에 김옥균은 일단 일본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인 橫濱로 숙소를 옮기고, 주일외교단을 통해 자신의 구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일본은 東京에서

¹ 『日本外交文書』 卷 17, 351 쪽.

² 『時事新報』 1884년 12월 18일 ; 『朝野新聞』 1884년 12월 23일, 社說

³ 『時事新報』 1885년 5월 28일.

⁴ 『日本外交文書』 卷 18, 122~125 쪽.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한 列國會議을 개최하고 있었다.⁵ 김옥균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던 이 시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6월 7일 井上馨은 조선 주재 高平小五郎 임시 대리공사에게 아래의 훈령을 하달하였다.

김(옥균)은 증거에 따른 모든 힘을 동원하여 재판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일본정부의 보호를 요구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로 결과는 심각해질 것이다. ... 정부는 준비되는 대로 김(옥균)을 우리 領土의 밖으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김(옥균)은 여전히 몇몇 外國人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제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본에서 池運永의 不在이다. 조선정부에 이 상황을 알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提案으로 조선정부가 지운영에게 즉시 일본을 떠나라고 電報하도록 충고하라.⁶

이처럼 일본정부는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한 열국회의의 중에 ‘김옥균 암살 미수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지운영을 조선으로 귀국시키려 했다. 일본정부의 요청에 의한 조선정부의 귀국 명령을 그가 귀국을 거부하자, 일본정부는 23일 지운영을 조선으로 강제 송환하였다.⁷ 한편 김옥균에게는 11일자로 내무대신 山縣有朋로부터 정식 국외퇴거 명령이 내려졌다.⁸

그러나 일본은 결코 김옥균의 국외 추방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무대신 井上馨은 6월 2일 김옥균의 ‘국외 퇴거’를 명령하면서 그와 동시에 “李鴻章 등의 요청대로 김옥균을 체포하여 청국이나 조선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언명하였다.⁹ 그렇다고 일본정부는 김옥균을 도쿄에 그대로 존치할 수도 없었다. 그럴 경우 조선의 암살 시도는 계속될 것이고, 이는 일본의 불평등조약 개정 문제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태도는 栗野가 조선정부의 요구에 회답한 아래의 답변에서도 잘 나타난다.

정치범의 인도 문제는 國際法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으면 인도되지 않는데, 하물며 정치범의 인도는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 김옥균을 인도할

⁵ 조약 개정을 위한 열국회의는 1886년 5월부터 1887년 4월까지 총 28회까지 개최되었다(日本國際政治學會 편, 1957 『日本外交史研究』 明治時代, 有信堂, 208쪽).

⁶ 『日本外交文書』 卷 19, 556쪽.

⁷ 『日本外交文書』 卷 19, 567~569쪽.

⁸ 『日本外交文書』 卷 19, 574~575쪽.

⁹ 요시노부 세가와, 1981 「日本近代史에서 본 亡命者問題」, 『韓日關係研究所紀要』 10·11, 영남대 한일관계연구소, 169쪽.

경우 일본정부는 歐美 各國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지도 모른다.¹⁰

불평등조약 철폐를 외교 활동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었던 당시의 일본정부는 적극적인 서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열강으로부터 문명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망명자에 대한 암살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나 국내 치안과 관련하여 열강에게 구실 잡히는 것을 기피하였다.

국외퇴거 명령은 김옥균의 小笠原島 유배를 위한 구실이었다. 그를 도쿄에 존치시킬 수도, 국외 추방시킬 수도 없었던 일본정부가 이 시기 김옥균에 대한 대응으로 선택한 것은 유배였다. 하지만 명목상 망명자이며, 법률을 위반하지도 않은 김옥균을 유배 보낼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국외퇴거령에 대한 위반을 구실삼은 것이다. 일본정부는 7 월 김옥균에 대한 국외퇴거 방침을 오가사와라도 유배로 변경하였다.¹¹ 그리고 山縣有朋는 경시총감과 오가사와라도 출장소장에게 김옥균의 처우를 세세히 규정한 훈령을 보냈다. 이에 따라 김옥균의 유배 생활은 월별로 정리되어 내무성 및 외무성에 보고되었다.

오가사와라도에서 김옥균의 생활은 정기선 때마다 취재되어 일본의 신문을 통해 일본 사회에 알려지고 있었는데,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는 주로 禪書를 읽거나, 바둑으로 시간을 보냈다.¹² 오가사와라도의 무덥고 습한 기후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어 김옥균은 야마가타에게 계속적으로 병고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청하였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³

그러나 1888 년 들어 다시 김옥균과 일본 국내 반정부 세력과의 결탁이 우려되고, 암살 기도 움직임이 있자, 신임 외무대신 大隈重信는 김옥균을 도시 가까이에 두고 감시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같은 해 8 월 김옥균을 北海道의 札幌로 이배하였다.¹⁴

4. 일본의 대청정책 변화와 김옥균의 도쿄 귀환

¹⁰ 國史編纂委員會 소장, 마이크로필름 NO. 03059, MT1124 「栗野愼一郎復命書」, 00430~00431.

¹¹ 『日本外交文書』 卷 19, 582~583 쪽.

¹² 김옥균은 교류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小笠原島의 아이들을 친구삼아 지냈는데, 훗날 上海까지 수행하였던 和田延次郎는 그 소년 중의 한 사람이었다(閔泰璵, 1947 甲申政變과 金玉均, 국제문화협회, 82 쪽). 그 외에는 유혁노가 3 개월에 한번 있는 정기선 때마다 와서 조선과 일본의 정세를 보고하고, 주문받은 휘호를 받아간 것과 1887 년 本因坊 秀榮가 위로차 찾아와서 약 3 개월 정도 함께 생활했다는 것 정도이다.

¹³ 『日本外交文書』 卷 19, 584~586 쪽.

¹⁴ 『日本外交文書』 卷 22, 427~428 쪽.

김옥균은 1890 년에 도쿄로 돌아왔다. 내무대신 西郷從道의 제안에 의해 각의를 거쳐 11 월 21 일 유배가 해제되었다. 西郷가 제시한 유배 해제의 이유는 김옥균과 야당과의 결탁, 조선의 자객 파견 등 그동안의 우려가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김옥균의 신병 치료였다.¹⁵ 하지만 내지 이주 허가의 실제 이유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옥균의 도쿄 이주 요구는 이미 小笠原島 유배 시절부터 계속되었으나, 그때마다 일본정부에 의해 거부되었고, 다만 北海道로 이배되었을 뿐이었다. 또 조선의 자객 파견 문제에 대해서도 조선 주재 임시대리공사 近藤眞鋤는 1889 년 김옥균의 1 차 도쿄 거주 때부터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다.¹⁶ 그리고 김옥균과 民黨의 결탁에 관한 우려도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

김옥균의 내지 이주 이래 그가 청국으로 가기 전까지의 기간은 일본의 제 1 의회에서 제 5 의회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당시 일본정부와 민당은 ‘해군력 확장’과 ‘民力休養’, ‘조약개정’ 등의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 김옥균과 관련한 정치 및 외교 상의 우려는 여전한 것이었음에도 일본정부는 돌연 내지 이주를 허가한 것이다. 당시 일본의 각 신문들은 김옥균의 내지 이주 허가를 ‘자유 해방’이라고 보도했으나, 김옥균에 대한 일본정부의 감시는 계속되었고, 비밀 문건으로 보고되었다.¹⁷

이것은 일본정부가 김옥균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던 이전의 수동적 입장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1890 년대에 들어서 일본정부는 대외적으로 청국 또는 조선으로부터 김옥균 암살 시도가 있으면, 이를 청국과의 분쟁거리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와 대립 중인 민당 세력이 김옥균을 이용하여 정부를 공격하고자 한다면 이를 빌미로 ‘大井憲太郎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민당 세력을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金玉均 暗殺事件과 일본의 對淸 개전여론의 조성

¹⁵ 『日本外交文書』 卷 23, 335 쪽.

¹⁶ 『日本外交文書』 卷 22, 428~429 쪽.

¹⁷ 김옥균의 동정은 완전히 내무 당국에게 파악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문서의 외견에는 “秘”라고 붓으로 쓰여 있다(琴秉洞, 1991 『金玉均と日本-その滞日の軌跡』, 緑陰書房, 703~704 쪽).

내지이주와 자유활동이 허가되어 김옥균이 도쿄로 돌아오자, 조선정부의 김옥균 암살시도는 다시 시작되었다. 金玉均 암살의 기획자인 李逸植이 일본에 온 것은 1892년 4월 9일이었다.¹⁸ 그는 權東壽·權在壽·金泰元·川久保常吉 및 上海에서 김옥균 암살의 실행자인 洪鍾宇 등을 동조자로 규합하여 망명자들에게 접근하였다. 和田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김옥균은 이일직·홍종우 등이 자객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김옥균은 이들을 통해 李鴻章과의 담판을 위한 청국행 여행경비를 마련하려 했다. 이일직 등은 김옥균의 渡淸 계획에 맞춰 암살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옥균의 청국행은 그 위험성 때문에 朴泳孝·頭山滿를 비롯한 知人들로부터 크게 만류 받았고, 김옥균 자신도 그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신정변 이래 동지로 믿고 있었던 福澤를 비롯한 일본의 자유민권자들은 급격히 國權論者로 변화하여 갔고, 대청개전을 상정한 일본정부는 계속적으로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급기야 1890년 제국의회에서 內閣總理 山縣有朋은 ‘主權線 利益線’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의 이익선 실현을 공언했다. 1894년 당시 일본사회는 대외팽창욕구로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움직임은 파악한 김옥균에게 淸國行은 아무리 큰 위험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上海로 출발 전 김옥균이 宮崎滔天과 나눈 대화는 그가 上海행을 어떠한 각오로 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 人間萬事 運命이다. 호랑이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 李鴻章이 나를 피어 잡으려고 획책한 것이라 해도 환영한다. 나는 포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 배에 탄다. 그곳에 가서 바로 죽게 되든 억류되든 상관없다. (단지) 5분이라도 談話의 시간이 있으면 나의 것이다. 어쨌든 문제는 1개월 (안에) 결정난다.¹⁹

1894년 3월 23일 김옥균은 上海로 출발하였다.²⁰ 이때 김옥균의 동행인은 수행원으로 和田, 통역으로 주일청국공사관원인 吳葆仁 그리고 자객 洪鍾宇의 3인이었다. 김옥균은 27일 오후 上海에 도착했는데,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경 숙소인 東和洋行의 객실 안에서 홍종우의 저격을 받아 사망하였다. 그의 사망 사건은 上海 주재 大越成德 총영사대리로부터 김옥균의 거동을 감시하라는 내명을 받고 있던 동화양행 주인 吉島徳三에²¹ 의해 조계지 경찰당국인 工部局 警察部に 신고되었다.

¹⁸ 古筠金玉均正傳編纂委員會, 1984 『古筠金玉均正傳』, 앞의 책, 473 쪽.

¹⁹ 河村一夫, 1987 「李鴻章と金玉均との關係」 『日本外交史の諸問題』, 南窓社, 14 쪽 재인용.

²⁰ 『時事新報』 明治 27 年 3 月 27 日.

²¹ 『日本外交文書』 卷 27-1, 487 쪽.

김옥균의 암살사건은 곧 朝鮮・淸・日本の 3 국 정부에 알려졌고, 관련국 모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김옥균 암살과 그 처리과정에서 가장 빠르고 주도적으로 움직인 것은 일본정부였다. 일본정부는 암살사건 한달 남짓 전부터 香港 주재 일본영사 中川恒太郎의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암살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보고는 2 월 10 일 외무성에 접수되었다. 사안의 특성상 그리고 김옥균에 관한 조치들이 이전에 閣議에서 결정되던 관례로 볼 때 일본의 내각에 김옥균 암살음모가 보고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옥균의 사망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 김옥균이 암살되기 하루 전인 3 월 27 일 陸奧는 전임 외무대신 青木 駐英公使에게 보낸 서한이다. 이 서한에서 陸奧는 “국민이 깜짝 놀랄 사건을 하지 않으면 人心을 진정시킬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條約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힘든 상황을 토로했다.²²

국회개설 이래 정부와 의회간의 대립은 1894 년에 절정에 달하였다. 하지만 의회의 地租輕減 및 군사비 삭감 투쟁은 明治天皇의 「建艦詔勅」 한마디에 어이없이 붕괴하고 말았다. 이후 의회가 정부의 대외정책을 연약하다고 비난하고 국권확장을 주장한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정부와 대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의회가 충분히 발언을 하지 못하고, 정회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해산시키는 정부의 압제는 반정부적 기운을 의회로부터 국민에게로까지 확대시키게 되었다. 1894 년 3 월의 총선거에서도 여전히 민당 우세였다. 일본정부의 지도자들은 국내의 정치적 불안을 타개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전쟁에서 구하게 되었다.²³

甲申政變 이래 대청개전을 목표로 일본은 軍備를 증강시켜 왔고 어느 정도 전쟁준비는 갖추어져 있었다. ‘이유 없는 전쟁’으로서 内外로부터 지탄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전의 구실만 찾아내면 되었다. 위의 陸奧 외무대신의 書翰은 정부 당국자가 내심으로 품은 생각을 표명한 것이었는데,²⁴ 다음날 上海에서 ‘김옥균 암살소식’이 타전되었다.²⁵

암살소식이 전해진 28 일 일본정부는 즉시 조선 주재 大鳥 공사를 통해 ‘김옥균 암살’을 조선정부 및 袁世凱에게 전달하였다. 조선정부는 袁世凱와 협의하여 김옥균의 死體 인도를 협의하였다. 29 일의 검시 후 사체는 和田에게 인도되었고, 홍종우는 會審衙門에 기소되었다.

²² 信夫淸三郎, 1974 『日本外交史』 1, 毎日新聞社, 166 쪽.

²³ 信夫淸三郎, 앞의 책, 150 ~ 166 쪽.

²⁴ 藤原彰 저・嚴秀鉉 역, 앞의 책, 101 쪽.

²⁵ 『日本外交文書』 卷 27-1, 484 쪽.

이때까지만 해도 上海 주재 일본총영사관은 和田에 의한 사체의 일본수송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사관의 방침은 본국의 훈령에 의해 곧 변경되었다. 같은 날 陸奧 외무대신은 “그 어떠한 日本人이 관련되어 있더라도 영사는 절대 과도하게 보호하지 말 것”의 훈령을 大越에게 하달하였다.²⁶ 다음날인 31 일에는 “김옥균의 死體가 일본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訓令을 하달하였다.²⁷ 따라서 김옥균 사체를 일본으로 이송하려던 和田의 노력은 일본영사관의 방해로 저지되었다.

김옥균의 사체와 홍종우는 청국 군함 威靖號에 탑재되어 조선으로 이송되어, 4 월 14 일 조선정부에 인도되었다. 이날 밤 楊花津에서 김옥균의 사체는 陵遲處斬되었고, 그의 목에는 “謀叛大逆不道罪人인 (金)玉均을 오늘 楊花津에서 때를 기다리지 않고 능지처참한다”라는 木牌가 내걸렸다.²⁸

김옥균 암살 이후 삼국의 대응과정을 보면, 조선과 청국은 처음부터 협력관계에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일본정부는 이미 김옥균에 대한 암살음모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과 암살의 전과정에서 조선과 청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것은 항상 일본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암살의 정국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용한 것도 일본정부였다.

김옥균 암살의 소식은 3 월 30 일부터 신문을 통해 일본사회에 일제히 보도되었다.²⁹ 이후 일본의 신문들은 수개월간 대대적인 보도를 계속했는데, 이 암살사건이 일본국민에게 준 충격은 대단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김옥균 암살에 대한 哀悼의 논조가 대부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여 4 월 5 일부터는 “金玉均 追悼義損金”모집을 위해 15 개 신문사가 합동으로 紙上 캠페인을 시작하였다.³⁰ 30 일까지 전개된 이 캠페인은 일본사회에서 그때까지 유래가 없는 것으로 김옥균의 추도를 전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캠페인의 와중에 조선으로부터 김옥균 사체의 陵遲處斬 소식이 전해졌다. 조선정부의 野蠻性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이 연일 계속되었다.³¹ 그러면서 신문들의 논조는 애도에서 점차

²⁶ 『日本外交文書』 卷 27-1, 486 쪽.

²⁷ 『日本外交文書』 卷 27-1, 495 쪽.

²⁸ 『日本外交文書』 卷 27-1, 507 ~ 509 쪽·506 쪽.

²⁹ 『時事新報』·『東京日日新聞』·『國民新聞』 明治 27 年 3 月 30 日.

³⁰ 『時事新報』 明治 27 年 4 月 5 日.

³¹ 『東京日日新聞』 明治 27 年 4 月 18 日 ; 『時事新報』 明治 27 年 4 月 18·24 日 ; 『國民新聞』 明治 27 年 4 月 29 日.

조선과 청국의 야만적 행위에 대한 규탄으로 발전하였다.³² 한편 사건 직후 頭山滿 등 김옥균의 故友를 자처하는 재야 대외강경파들은 ‘金氏友人會’를 결성하여 대대적인 추모사업을 전개하였다. 여론은 점차 文明의 힘으로 野蠻을 응징해야 한다는 즉 對清開戰의 요구로 발전해 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조치는 외견상 철저한 방기였다. 당시 반조선·반청 여론 조성에 대표적인 신문은 福澤의 時事新報와 東京日日新聞이었다. 時事新報는 이미 1885년 후쿠자와의 「脫亞論」을 계기로 대외침략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東京日日新聞은 明治政府의 기관지였다.³³ 이것은 일본정부가 언론을 통해 김옥균 암살사건을 대청개전여론의 조성에 이용했음을 말해준다.

5월 15일에는 衆議院에서 김옥균 암살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비판과 대청개전도 불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이 행해졌다. 31일에는 정부의 軟弱外交를 비판하며 「內閣彈劾上奏案」이 가결되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김씨우인회의 주도로 貴族院·衆議院 의원들 및 전국 82개 신문사 대표들이 장례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김옥균의 장례식’이 성대히 치루어졌다.³⁴ 또한 일본의 문화계에서는 김옥균의 암살을 주제로 한 演劇이 대흥행을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역시 김옥균 암살에 대한 조선 및 청국에 대한 규탄과 이에 대한 응징을 담고 있었다.³⁵

김옥균의 장례식이 치러진 다음날 的野半介는 玄洋社の 대표로 川上操六 참모차장을 찾아가 청국과의 개전을 주장하였다. 川上은 ‘伊藤 首相이 非戰論의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전쟁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했으나, 곧 말을 바꾸어 ‘누군가 한 사람 불을 지르는 자가 없는가. 불꽃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불을 끄는 것은 우리들의 任務’라고 대답했다.³⁶ 이처럼 일본정부는 대청개전여론의 조성에서 공식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수동적으로 개전여론을 따라가는 자세를 취했는데, 이것은 淸日戰爭에서 열강의 간섭을 염려한 일본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다.³⁷ 이즈음 일본의 여론은 대청개전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실제 여론에서 강경론과 개전요구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일본에서 일반적인 대청강경여론이 구체적인 대청개전요구로 변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김옥균 암살사건이었다.

³² 『東京日日新聞』 明治 27 年 4 月 17 日・20 日；『時事新報』 明治 27 年 4 月 24 日.

³³ 松下芳男, 1960 『日本軍制と政治』, むろしお出版, 211~218 쪽.

³⁴ 『時事新報』 明治 27 年 5 月 22 日.

³⁵ 琴秉洞, 앞의 책, 867~868 쪽.

³⁶ 玄洋社社史編纂會, 1917 『玄洋社社史』, 435~437 쪽；黑龍會 編, 『東亞先覺志士記傳』 上, 原書房, 143~144 쪽.

³⁷ 陸奥宗光 지음·김승일 옮김, 1993 『建建록』, 범우사, 36 쪽.

일본 국내의 통일된 강경여론을 바탕으로 일본은 신속히 전쟁준비에 착수하였다. 참모본부는 이미 5월 하순부터 조선파병을 위한 수송준비에 착수했고, 6월 5일 戰時大本營을 설치, 다음날인 6일 淸兵의 派兵소식을 접하자, 즉각 조선에 파병하였다. 7월 16일에는 새로운 「日英通商航海條約」이 조인됨으로써 일본정부가 가장 우려하던 청일개전에 대한 열강의 간섭도 배제되었다.³⁸ 이렇게 개전에 대한 國內外의 이해를 획득한 일본은 23일 한국의 景福宮 점령을 시작으로 淸日戰爭에 돌입하였다.

5. 맺음말

망명 이래 김옥균의 처우는 일본정부의 대조선 및 대청국정책에 따라 변화되었다. 일본정부는 망명 직후 갑신정변의 책임회피를 위해 이들의 망명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이후 ‘조러밀약’, 巨文島事件으로 朝鮮이 列強의 각축장으로 대두되자, 갑신정변 후 조선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청견제력을 상실한 일본은 김옥균의 인도문제를 對淸共助를 위한 협상카드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암살시도가 이어지고, 일본 내 반정부세력과 김옥균과의 연계가 우려되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최대문제였던 不平等條約 개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였다. 김옥균을 국외추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내에 그대로 둘 수도 없었던 일본정부는 김옥균을 小笠原島·北海道로 유배하였다.

1890년 이후 일본정부의 대외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김옥균의 자유이주가 허가되었으나, 감시는 계속되었다. 이것은 김옥균의 身邊上의 변화는 조선·청국·일본 3국의 외교분쟁이 될 수 있음으로 이를 피하려 했던 일본이 이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김옥균 활용정책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옥균의 암살사건은 청일전쟁을 위한 일본 국내의 여론통일과 대외적인 명분획득에 이용되었다.

³⁸ 『日本外交文書』 卷 27-1, 113 쪽.

【발표 논문 9】

근대중국여성의 모빌리티 경험과 여성 ‘해방’ 프레임에 관한 재고

친 팡

[번역 : 김단실]

본논문은 20 세기 초반 중국 여성들의 모빌리티 (mobility 이동) 경험을 조명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성 “해방”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른바 모빌리티는 이 시기 일부 양반(중국에서는 “사신 士紳”이라 칭함) 계층 출신 여성들이 여학(女學), 자선 慈善 혹은 정치운동 등에 참여함으로써 그녀들의 신체 이미지 또는 담론이 다양한 공공(公共)공간에 두루 나타나 회자된 현상을 지칭한다. 이러한 모빌리티 경험은 물질적으로 19 세기 후반 신식 교통수단 및 근대 대중매체의 발흥과 맞물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기에 “유편”로부터 “풀어주기”로 전환된 담론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상상속에서 여성의 모빌리티 경험을 낙관시하고 미화했고 모빌리티는 여성 해방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모빌리티에 대한 이러한 숭상은 역사나 역사서술면에 있어서, 당시 보통사람들과 지식인들이 사실상 근대성이 지닌 진보적 해방적 특징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해방’은 결코 자명한 개념이 아니다. 이 담론에는 실은 식민주의 언론패권의 역사적 프레임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빌리티에 부착된 여성 “해방” 사상에 대해 고도의 경계심을 품어야 할 것이다.

1905 년 추근秋瑾(1875-1907) 은 젊은 여성들의 일본유학을 격려하고자 다음과 같은 낭만 넘치는 글을 남긴바 있다. “우리 나라 자매들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허락된 기간 또한 짧아 품은 뜻을 이루지 못한 이들은 모두 가벼운 차림으로 단힌 규방을 나와 즐겁게 기선 타고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일본으로 건너가 예비수업을 하였다”¹ 사실상 20 세기초반 추근이 그러했듯 집밖 세상에 대한 낙관적 상상에 설레는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양반 계층 출신 여성들은 학교 교육을 받기 위하여 또는 국가 민족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자주 집을 나섰고 도시, 성(省), 심지어 국경까지 넘나들면서 공적 사적 공간을 이동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었다. 당시 공공공간에서 가장 활약했던 여교사와 여학생이 그 예라 할수 있다. 여학으로 인하여 예전에는 깊숙한 규방에 기거하던 여성들이 가정을 나와 교편을 잡거나 배움의 길에 들어섰다. 가까운 곳으로는 매일 집을 나서 도보로 학교에 갔고 때로는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서 출발해 도시의

¹秋瑾：《<實踐女學校附屬清國女子師範工藝速成科略章>啓事》，郭長海編：《秋瑾全集口注》，長春：吉林出版社，2003 년，제 368 쪽。

기타 공공공간의 여러 행사에 참여했다. 멀리로는 증기선이나 기차 등 근대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장거리를 이동해 낯선 학교로 갔고 심지어 외국에 건너가서 여교사 또는 여학생의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이러한 모빌리티는 신체 이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여성의 언론 문자 심지어 사진 이미지가 세간에서 전파 유통됨도 이에 포함된다. 기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청나라 말기 여학의 사진을 예로 들면 19 세기말 20 세기초엽 촬영술이 도시에 널리 퍼져 인기를 모으면서 여성 교사와 여학생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촬영하였고 사진을 서로 선물하거나 출판을 통해 그들의 이미지를 퍼뜨렸다. 사진 촬영과 유통은 신체의 이동처럼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유전 범위와 영향이 신체의 이동 못지 않았다. 사진은 비록 문자처럼 자체 해석시스템은 없어도 촬영한 이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극명하게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준다. 인물이 취한 포즈, 의상, 액세서리와 배경 등이 피사체의 신분을 나타낼 뿐더러 그 사진이 세간에 전해지는 경로 역시 자기설명의 유효한 수단이다. 이 점에서 신체의 이동이든 이미지의 전파이든 모두 “중요한 능동성의 장”을 형성한다² 그 속에서 여성들은 본인의 신체, 행위, 이미지와 사회관계에 대한 성찰과 컨트롤 능력을 보여주었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성별 규범과 도덕의 경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보다 큰 차원에서 모빌리티가 중요한 까닭은 청조 말기 여성들의 외부 체험이 이로 인해 풍부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빌리티를 통해 “유폐(幽閉)”에서 “풀어주기(釋放)”으로 바뀐 시대적 담론의 변화를 엿볼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 중국사회에서 특히 송宋 이후 유가사상이 세속화됨에 따라 중국 여성들은 대가 아늑함 단아함 정숙함과 조용함(幽、嫻、貞、靜)을 도덕행위규범 삼아 왔었다. 물론 내외분별을 지킨다고 해서 실생활속에서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있었다는 건 아니다. 실은 정반대였다. 명청 明 淸 역사 연구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명청 시기만큼은 양반士紳계층 여성들이 언제든지 외출하여 친지를 만나고 교외에 소풍 가고 절당에도 다녔고 때로는 가정교사를 맡아 다른 집에서 식숙하거나 가족들과 먼 여행길을 떠나기도 하고 가사를 도맡기도 했다³. 단지 그녀들은 외출시 외계와의 접촉을 가급적 삼가하는 처신으로 개인도덕과 사회지위를 드러내고 실천했었다. 이러한 자아행위규범과 공공공간에 대한 경계심은 근대까지 이어졌다. 예컨대 중국번(曾國藩)의 딸 증지편 曾紀芬 (1852-1942) 은 본인이 작성한 연보에서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자매들이 하는 대로 총독아문밖을 한발작도 나간 일이 없었다.”⁴ 증씨가 청년시절에 내외유별이라는 규범을 실천했을 뿐만아니라 80 대 고령에 연보를 수정하면서 본인이 그 시절

² Judith Butler,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3, p. x.

³ Timothy Brook, *The Confusions of Pleasure: Commerce and Culture in Ming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pp. 182-185; Dorothy Ko,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4, pp. 115-142, 219-224;

⁴ 《崇德老人自訂年譜》，李又寧編：《근대中華여성自叙詩文選》，제 1 집，台北：聯經事業出版公司，1980 년，제 15 쪽.

규범을 충실히 지켰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은 퍼그나 흥미롭다.

그러나 이러한 “아늑함幽”을 숭상하는 담론과 실천은 19 세기후반부터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에 건너온 서양인(주로 선교사)과 중국의 엘리트계층이 여성해방자를 자처하면서 이에 상응한 규방에 갇히고 노리개로 전락한 중국 여성상을 만들어냈고 여성이 그옥한 집안에 있으면서 행동거지가 단정함을 부정적 시각으로 비판했다. 여성들 스스로가 선택한 “아늑함幽”이라는 덕목이 점차적으로 수동적이며 무력함의ニュ앙스를 내포한 “간힘困”이란 惡俗으로 지목되었다. 예컨대 林樂知 (Young J. Allen) 의 “유폐”론은 전형적 담론이다 그는 중국 여성을 둘러싼 3 대 악습의 두번째로 “유폐”를 열거했다. “중국의 지체높은 여자는 문밖의 악습에 물들까 우려하여 평생 규방을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을 풀어주지 아니함은 교화가 아름답지 못함을 보여주고 영원히 여성을 가두는 것 또한 교화가 마침내 진전되지 아니함을 말해주도다”⁵ 따라서 林樂知 (Young J. Allen) 는 “풀어주기(釋放)”라는 워딩을 권장하면서 “유폐(幽閉)”를 타파하는 처방으로 삼았다. “이른바 풀어주기란 무엇인가? 世人을 풀어줌이 첫째로 요긴한 과제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을 풀어주는 것이 동방 여러나라들을 구원하는 좋은 방법이라 중국은 특이 심각하니 증상에 따른 약을 투여하는 바 이 처방 아니면 효과를 보지 못할터이다”⁶. 선교사와 중국 엘리트층이 재서술하고 해석 및 선양하는 과정을 통하여 중국 여성들이 과거에 절대적 가치를 두었던 “깊숙한 규방” 라이프 스타일과 이와 맞물린 도덕의의가 이 시기에 처절한 전환을 맞이했고 중국 여성들의 원죄로 되어 변혁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규방에 갇친 여성상과 선명히 대조되는 것이 같은 시기에 형성되어 청송의 대상이 된 과감히 곤궁을 박차고 나오는 외향적이고 발랄한 신女性像이었다. 중국 여성 나아가서 광범위한 동방 여성들에게 “결연히 기존 질서를 타파하고 거침없이 행동”하는 주체가 되라고 “널리 벼을 사귀라. 속박을 벗어나 번개처럼 성난 파도처럼 나오라. 그대들의 진보의 속도는 무섭다”라는 식의 기대가 쏟아졌다⁷ 오로지 막아선 벽을 깨야 여성들은 자유로운 신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여성 기질에 관한 담론의 이같은 변화는 청 말기 중국 여성들의 신체, 언어, 이미지 심지어 주장까지 현실과 상상공간을 넘나들게 만든 모빌리티에 합리성과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목해야 할 바는 청조 말기의 모빌리티 담론이 보여준 근대성의 진보적 개방적 문명적 특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낙관적 상상과 미화와 별개로 이를 현실에서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길은 지극히 곡절적이었다는 점이다. 여성들이 나라를 위해、女學을 위해、독립을 위해 도시공간과 매체 공간을 오갈때 모빌리티가 활동 범위를 넓혀주고 그들의

⁵ 林樂知撰、任保羅述：《論中國變法之本務》，《万国公報》，1903 년제 169 기，제 7-8 쪽。

⁶ 林樂知撰、任保羅述：《論中國變法之本務》，《万国公報》，1903 년제 169 기，제 7 쪽。

⁷ 《동방女界의 新현상》，《만국공보》，1906 년제 215 기，제 63-64 쪽。

정체성을 바꾼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内外 분별과 양천지별 良賤之別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고 이로 인해 양반 출신 여성들의 문명적 여성상이 외려 도전에 직면하였다. 그 결과 본디 모빌리티를 숭앙했던 사회분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여성들로 하여금 전통적 성별 규범을 견지 강화하게 만듦으로써 결국은 “자유롭지만 도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혼합적인 여성 기질이 형성되었다.⁸

앞서 신나게 기선 타고 일본 가자고 여성들을 고무했던 秋瑾이지만 자매들한테 숨긴 사실이 있었는데 그녀는 여행중 내내 왜도(倭刀)를 한자루 지녀야 할 필요가 있었다.秋瑾의 벗 우지잉吳芝瑛이 회상하기를 “여사는 일본에서 귀국길에 상하이를 거치며 힘든 유학상황을 말씀할 때 신규 입수한 왜도(倭刀)를 보여주면서 ‘힘 약한 여자의 홀몸으로 만리 구도의 길 떠나 3 등실 기선 타고 수차례 왕복하면서 쿨리 등 잡부들속에 섞여 먼 길 무더위에 쓰러진 일도 여러번이었다.자위수단은 일시도 내 몸을 떠난적 없는 이 칼뿐이었다’”⁹라고 한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기생과 신여성은 모두 사진 촬영을 많이 했는데 전자는 촬영패션의 선도자이기도 했다. 신여성들은 양천良賤구분을 강조하기 위해 촬영시 흔히 포즈, 의상, 배경 등 디테일로 이들과 차별화함으로서 자신의 문명 및 현대적 정체성을 드러냈다.게다가 대부분 신여성의 사진은 근대적 계몽과 계발을 취지로 발간되는 진보적 정기간행물 (특히 여성잡지)에 게재되었다.¹⁰이 부류 간행물의 창간인들은 여성교육, 젠더평등, 국가와 민족 위기 등 시대적 어젠더에 관심이 많았다.신여성들의 사진이 세속적 오락 취향의 태브로이드 신문에 실리는 일은 결코 없었다.말하자면 신여성과 유명한 기생은 모두 대중의 응시에 노출되었으나 각기 다른 잡지에 실리거나 사진의 유전 경로가 다른 것이 양천良賤을 가르는 분계선이 되었기에 신여성들은 대중의 응시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문명성과 진보성을 보전할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것은 이같은 모빌리티에 대한 숭앙이 실은 농후한 권력적 담론의 침투하에 형성된 일종 상상이고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근대성이 지닌 진보, 개방과 발전이란 특질을 바라보는 낙관적 상상과 지나친 미화의 반영이라는 점이다.이 경향은 21 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설령 가장 비판적인 페미니즘 학자들조차 아직도 이에 대한 경각성을 환기시키지 못하고 있다.예를 들면 Elizabeth A.Pritchard 가 날카롭게 지적했 듯이 서양의 젠더역사연구에서 여성사분야 학자들이 무의식간에 모빌리티와 서구의 포스트계몽시대의 발전 및 진보에 관한 담론을 연결 시켰고 그 결과 이른바 해방성을 설명하는 프레임이 때로는 여성의 권익을 해치는 함정이 되었다.¹¹

⁸純夫：《女子교육》（其一），《중국어女報》，1907 년제 2 기，張玉法、李永寧編：《근대중국女權운동史料》，台北：龍文出版社，1995 년，제 642 쪽。

⁹吳芝瑛：《記秋女俠遺事》，中華書局上海編集所編：《秋瑾集》，上海：中華書局，1960 년，제 190 쪽。

¹⁰煉石：《發刊詞》，《중국어新女界雜誌》，1907 년제 1 기，제 3 쪽。이들과의

¹¹ Elizabeth A. Pritchard, “The Way Out West: Development and the Rhetoric of Mobility in Postmodern Feminist Theory,” *Hypatia* 15:3 (Summer 2000): 57.

다시 추근의 사례를 보자. 이들 신여성은 대중을 상대로 홍보할때 아름다운 면을 강조하지만 사적 교류와 현실생활속에서는 신흥 교통수단과 모빌리티 경험에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이 경계심은 여성해방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 담론이 집을 나가도록 여성들을 부추겼지만 이 시기는 근대적 담론 자체 (예를 들면 내셔널리즘, 페미니즘 등) 가 지속적으로 개념의 경계와 의의를 형성해가는 중이었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기에 여성들이 준수하고 실천할 온전한 규범을 제공하지 못한데서 기인된다. 행위규범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규범은 일상생활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만 비로소 체화되어 자연스레 한 인간의 심리적 정체성과 행위준칙이 되기 때문이다¹².추근이 좋은 사례이다. 그녀가 규방을 나와 기선에 앉아 중일간을 넘나들때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와 해방에로의 동경은 그녀가 기타 사회계층 남성들과 같은 선실을 사용하는 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결코 알려주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그녀가 택한 것은 아주 전통적인 자위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의 모빌리티 경험에 환호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 버턴을 누르고 여성“해방”이라는 관행적 사유패턴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성찰에는 두가지 측면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성“해방”은 실제 역사경험이자 실존인 동시에 학술적 차원 및 사회운동 차원의 이론분석 프레임이며 사고패턴이기도 한 것이다.

근대이래 수많은 사회 사조와 관념들이 구미와 일본으로부터 중국에 건너 왔다.국가, 민주, 과학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관념과 단어들이 중국에 전파되어 수용되는 과정과 비교하면 우리는 여성“해방”에 내재된 식민주의 이데올로기 패권에 대해 경각심이 가장 미약하다.그 결과 여성“해방”은 근대중국 여성사에 있어서 가장 관건적 키워드임과 동시에 많은 학자들이 생각없이 사용하는 자명한 단어로 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나는 다음 두 방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동원되는 과정에서의 여성들의 도구성이다.근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민족주의자, 페미니스트거나 정당조직 또는 국가정권을 막는하고 흔히 여성 동원을 중요한 어젠더로 삼았고 여성을 국가와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하였기에 여성해방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 결과로 20 세기 심지어 21 세기에 도 여성 해방을 지지하든 반대하든과 무관하게 그 자체가 우리들이 여성문제를 사고하는 기준선이 되고 일종 일상과 상투적인 사상으로 자리잡았다. 둘째, 여성해방의 결과로 보면 신체의 개변, 교육의 획득, 직업적 발전, 경제적 독립, 자주 의식 형성 등을 포함해 근대여성들의 생활경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어느 순간부터 “해방”을 통하여 여성들은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닌 집단으로 탈바꿈했으니 이는 얼마나 고무적인 성과인가!

¹² Tani E. Barlow, “Theorizing Woman: *Funü, Guojia, Jiating*,” in *Body, Subject and Power in China*, eds., Angela Zito and Tani E. Barlow,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 261.

그러나 Joan W. Scott 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여성들이 주체성을 획득하면 곧 해방의 일종 승라라고 착각하지만 주체성이라는 어젠더가 어찌면 가짜명제 일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한번도 성찰한 적 없다.¹³ 왜 우리는 주체성을 근대여성해방 승리의 하나의 징표라고 보는가? 이 물음은 전통적 여성은 주체성이 결여된 집단이라고 보는 우리의 잠재적 인식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 이와 같은 결핍-획득, 전통-현대라는 이원대립적 프레임은 우리가 기타 연구영역에서는 늘 반성하는 바가 아닌가? 무엇때문에 유독 여성“해방” 혹은 여성사에서만은 이처럼 “해방”을 낙관하고 미화하면서 승리를 경축하는 것 일까? 그러기에 우리는 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관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하며 여성사를 기술하고 해석할때 사용되는 기본 프레임과 개념에 대해 역사적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며 21 세기를 사는 우리가 역시나 너무 안이하게 근대성이란 안전지대 (comfort zone) 안에서 이러한 프레임과 개념을 당연시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일이다. .

필자는 예를 들어, 역사성을 부여받아 마땅한 일부 어젠더와 사유가 어떤식으로 21 세기의 오늘날에 있어서도 여전히 우리들에 의해 지극히 자연스레 수용되어 역사와 현실속 여성문제에 대한 상상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부류의 경력들은 흔히 “해방”으로 간주된다.예: 전족 해제, 학교교육을 받은 것, 집을 나온 것, 모빌리티, 이익 창출, 혼인자유 등 ; 반대로 다른 어떤 경력은 해방의 대립면인 “억압”으로 간주된다. 예:전족, 문맹, 집에만 갇힌 것, 이익을 나누어 가진 것, 부모가 배우자를 정하는 포관 혼인(包辦婚姻)등. 그런데 우리는 전자가 어떤 이유로 선택받아 “해방”의 프레임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후자는 어떻게 이와 상반된 “억압”프레임에 놓이게 되었는지 고민해본적이 별로 없다.이는 청조 말기부터 여성기질을 정의하는 체계 (defining system) 에 발생한 변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오랫동안 양반(士紳)계층의 여성들은 스스로를 유가儒家 성별규범의 규정자, 실천자이자 수호자로 자처해 왔다.그러나 청조 말기에 이르러 그들 스스로 결정했던 신분 징표들이 하나씩 부정당하는것을 목도했다. 전족은 야만의 심볼이고 가정내 생활은 생산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나눠챙기는 병폐이고 딸, 안해, 어머니로서의 삶은 가족만 알고 국가를 무시한다고 비판 받았고, 뛰어난 재원의 역할은 국가 민족이 봉착한 위기와 친화적이 아니기에 심한 비난의 대상이 됐다.이렇듯 그들의 엘리트 위상은 직접적 도전에 직면한다.이 국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엘리트 리소스와 계층적 우위를 살려 전족해제, 학교교육, 공공도덕, 국가민족 등 새로운 근대의 특징에 맞는 “준비尊卑가치 위계질서”¹⁴를 재정립함으로써 종전대로 새로운 신분사회의 최상단에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다.여성 엘리트들이 이처럼 스스로 권리부여하고 본인들이 마땅히 여성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자처하는 마음가짐은 양반(士紳)계층 출신자의 뿌리깊은 엘리트의식과 그 리소스에 기반한 것이다. 그리하여

¹³ Joan W. Scott, “The Evidence of Experience,” *Critical Inquiry*, 17:4 (Summer, 1991): 773-797.

¹⁴劉人鵬：《근대중국女權論述：国族、翻譯과 性口정치》，台北：學生書局，2000 년，제 166-167 쪽.

전통사회의 계층구조 위에 이같은 근대 표지를 준칙으로 한 새로운 정치권력이 들어서게 된다. 이들 여성 엘리트들은 신흥 여성문화, 성별 메커니즘과 사회위계 시스템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했다.

둘, 여성 지위론. 말하자면 “여성의 수준은 한 국가의 문명정도의 상징이다”라는 논리인데 오늘날도 이 관념은 사회에 널리 퍼져 있고 이미 의심할 나위 없는 진리로 굳어진 듯 하다. 그런데 사실상 이 관점은 19 세기말 서양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장과 동시에 중국에 전래한 것이다. 林樂知 등 선교사가 《만국공보》에 발표한 문장에서 “한 나라의 교화를 논하려면 마땅히 여인들의 지위를 살펴 그 나라의 교화 등급을 정할지다. 서방의 문명교화된 나라는 여인을 평등하게 대하지만 동방 반교화 국가에서는 여인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교화가 아니된 자들은 여인을 노복이나 짐승과 다름없이 대한다. 중화는 동방 교화지대국인지라 여인을 대하는 바를 살펴보면 이 나라의 교화 등급을 바로 알수 있을지어다.”¹⁵ 그들은 지위와 성별, 국가민족을 연관 지어 국가를 단위로 한 하나의 등급 관념을 구성해 냈다. 이 관념은 세계적 식민질서와 고도로 일치했다 예컨대 여성의 지위가 낮은 국가를 논할때마다 林樂知 등은 흔히 인도, 고려, 중국과 같은 식민 확장에 있어서 열세에 처한 나라들을 거론했다. 그 후 페미니스트나 내셔널리스트들은 아무런 의문도 없이 여성의 지위로 일개 국가와 민족을 평하는 기준을 받아들였고 그 배후의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셋, 남녀젠더평등. 근대 중국역사에서 여성들은 절대 평등과 상대적평등 사이에서 흔들렸음을 볼수 있는데, 이로하여 수많은 역사문제가 야기되었고 오늘에 이르기 까지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이 양극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들은 집 밖에 나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고 가족을 부양하는 한편 여성으로서 가사 노동, 출산과 자녀 양육 등 가정내의 책임을 짊어지도록 요구당한다. 전자와 후자 가운데서 어느 하나만 훌륭하게 해내거나 못 해내면 가차없이 비판과 부정을 당하게 된다. 오늘날 여성의 이상상은 가정 안팎에서 모두 훌륭한 역할을 해내는 수퍼우먼이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족 특이 아이를 완벽하게 돌보는 여자여야만 한다.

젠더 평등문제는 근대이래의 여성해방 프레임속에 나타난 일종 성별 본질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단순히 말하면 중국 유가의 위계질서 체계에 있어서 남녀, 건곤乾坤, 음양陰陽 등은 모두 관계적 존재로서 상호보완하면서 상생하고 남녀는 동일한 “인간”이란 평등한 지위라고 하지만 역시 “有別”하여 상하구분이 있는 것이다.¹⁶ 근대에 와서 유가 윤리규범중의 관계적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도전에 직면하였고 마침내 뒤엎어져 점차적으로 John Fitzgerald 이 제기한 이른바 “부류별 정체성”(categorical identity)이 형성된다. “여성”이라는

¹⁵ 林樂知撰、任保羅述：《論中國變法之本務》，《万国公報》，1903 년제 169 기，제 7 쪽。

¹⁶ 리우렌펑(劉人鵬)：《근대중국女 논술》，제 1-72 페이지。

부류를 예로 들면 이 부류중에서 모든 여성들은 공통의 성별특질을 향유하여 마땅하다. 설령 추근과 같은 스스로 남편과 자녀결을 떠나 일본에 유학한 여성도 “여계의 롤모델”이라고 불렸다. 이같이 여성을 하나의 부류로 묶고 젠더 평등을 일종의 사회이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대 국가의 출현 및 국민을 하나의 새로운 도덕질서 유형으로 간주하는 사상과 맥이 닿아 있고 근대국가평등과 종족평등을 이상적 질서로 간주함도 마찬가지로 맥락이다.¹⁷ 예컨대 청왕조 말기에 많은 신여성이 “여계(界)”를 자칭하면서 “남계”에 상부상조를 호소했다. 또한 “여계”와 “상계” “군계”, “학계”와 같이 병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남성계는 유독 여계와 대응관계를 형성할 따름이고 기타 각계와 나란히 열거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상계, 군계, 공계, 학계 등은 당연히 남성들로 구성된 “계”로 간주됨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여성들이 근대성 기준에 따라 해방된 이후에도 무엇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신세계의 쾌락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정반대로 오늘날 여전히 거둬 그리고 빈번히 예전과 다르지않은 고통과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 과거에 우리는 이와같은 가정내 및 가정외로부터의 이중 부담이 발생한 원인은 여성해방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해석했고 따라서 중간에 각종 좌절이 발생한다해도 그 성질은 보수적인 것이요 시간상으로는 일시적일 것이며 그것은 영원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들의 발걸음과 빛나는 미래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방”이 철저한지 아닌지를 가늠한 단 말인가? 혹자는 우리가 접근방식을 바꿔 대관절 해방이 철저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해방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애초부터 문제있는 것은 아닌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가능할까? 우리는 이 프레임 자체에 내재된 권력적 담론과 구조를 의식하지 못했거나 심도있는 성찰없이 다만 드러난 근대성과 합법성을 그대로 수용한 후 이를 이용하여 중국 사회와 여성을 개조하고자 했다. 결국은 중국사회에서 삽입된 어떤 신사상이 일으킨 거부반응이 나타났고 여성들은 이러한 거부반응때문에 대가를 지불했다 (사실상 남성 역시 마찬가지였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성 “해방”이라는 사유패턴의 역사성을 사상적으로 인지하고 여성들이 해방된 후 직면한 일층 복잡해진 국면을 엄중하게 주시하면서 국가, 사회 및 제도적 면에서 이 복잡한 국면에 어떤식으로 대처해야만 여성들이 스스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해방”을 택하든 “억압”을 택하든——이로 인해 정치적 압력, 도덕적 곤경과 무거운 생활부담에 시달리는 일은 없게 할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¹⁷ John Fitzgerald, “Equality, Modernity, and Gender in Chinese Nationalism,” in Doris Croissant, Catherine Vance Yeh, and Joshua S. Mostow eds., *Performing 'Nation': Gender Politics in Literature, Theater, and the Visual Arts of China and Japan, 1880-1940*, Leiden; Boston: Brill, 2008, p. 24.

저자약력

미타니 히로시 / MITANI Hiroshi

1978 년 도쿄대학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국사학전문과정 박사과정 단위 취득 후 퇴학. 도쿄대학 문학부 조수, 가쿠슈인 여자단기대학 전임강사·조교수를 거쳐, 1988 년부터 도쿄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그 후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 등을 역임. 현재 아토미학원 여자대학 교수,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문학 박사(도쿄대학교). 전공분야는 19 세기 일본의 정치외교사, 동아시아지역사, 내셔널리즘·민주화·혁명의 비교사, 역사학 방법론. 주요 저작: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幕末の外交と政治変動』(山川出版社, 1997), 『明治維新を考える』(岩波書店, 2012), 『愛国・革命・民主』(筑摩書房, 2013) 등. 공저로는, 『国境を越える歴史認識—日中対話の試み』(劉傑・楊大慶과 공저, 東京大学出版会, 2006) 등 다수.

오쿠보 다케하루 / OKUBO Takeharu

게이오의숙대학 법학부 교수. 박사(정치학). 전문은 동양정치사상사, 비교정치사상. 특히, 18~19 세기 네덜란드와 일본의 교류에 주목하여 초기근대에서 근대로 도달하는 서양과 동아시아의 외교, 경제, 학술, 법을 둘러싼 교섭사를 문화 횡단적 시점에서 해명하려고 하고 있다. 도쿄도립대학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 전임 준교수, 네덜란드 라이덴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sian Studies 객원연구원, 게이오의숙대학 법학부 준교수 등을 역임한 후 2019 년부터 현직. 주요 저작으로는 『近代日本の政治構想とオランダ』(東京大学出版会, 2010 년), *The Quest for Civilization—Encounters with Dutch Jurisprudence, Political Economy and Statistics at the Dawn*

of Modern Japan—(translated by David Noble, Brill, 2014) 등이 있다.

한승훈 / HAN Seunghoon

한국 고려대학교 독일어권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19 세기 후반 조선의 대영정책연구(1874~1895): 조선의 군세정책과 영국의 간섭정책의 관계 정립과 균열」으로 박사 학위 취득. 주로 근대 시기 한국과 서양 열강의 관계 정립 및 전개 과정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글로벌화의 역사속에서의 한국인의 삶과 제적에 관심이 많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 체결 당시, 미국의 「공평함」이 갖는 함의, 「변경의 접촉지대, 그리고 거문도(巨文島)의 탄생」, 「1920 년 동아일보의 아일랜드 독립전쟁 보도태도와 그 의미」, 등의 논문과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공저), 『3.1 운동 100 년』(1·4)(공저) 등을 집필했다.

쑤 칭 / SUN Qing

복단대학 역사학과 준교수. 전문 분야는 중국 근현대사, 문화사, 교육사, 사학사, 중외문화교류, 지식과 근대사회, 제도개혁 등이다. 주요 저서는 『晚清之“西政”东渐与本土回应』(世纪出版集团上海书店出版社, 2009 년 10 월) 등이 있다.

오카와 마코토 / OKAWA Makoto

1974 년 군마현에서 태어남. 도호쿠대학 문학부 졸업. 동대학원 문학연구과 문화과학전공일본사상사전공분야 박사후기 과정 수료. 박사(문학). 동북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조교. 요시노사쿠조오(吉野作造) 기념관 관장을 역임했고, 현재 추오대학 문학부 인문사회학과 철학전공 준교수. 전공은 일본사상사, 문화사, 정신사, 일본정치사상사. 주요 저서 『근세왕권론과 ‘정명(正名)’의 전회사(転回史)』(御茶ノ水書房, 2012 년). 주요 논문 「사무라이의 나라에 들어온 ‘미국’: 일본의 데모크라시에 대해

생각한다」(『淡江日本論叢』32호, 淡江大学日本語文学系, 2015년), 「요시노 사쿠조오의 중국론: 대화 20 개조로부터 워싱턴회의까지」(『吉野作造研究』제 14호, 2018년) 등.

남기현 / NAM KiHyun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 박사 졸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한국학센터 방문학자. 가천대학교, 경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주요 논문으로는,

- 「일제하 조선토지조사사업 계획안의 변경 과정」, 『사림』 32, 2009.
- 「조선토지조사사업 진행방식의 다양성, 창원군과 마산부의 비교」, 『대동문화연구』 82, 2013.
- 「창원군 토지조사사업의 진행과정」, 『일제의 창원군 토지조사사업』, 선인, 2014.
- 「『경무대 앞 발포사건』 책임자 처벌 재판에 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22, 2016.
- 「1909년 국민대연설회 전후 대한협회의 행보」, 『인문과학연구』 24, 2017.

꾸어 웨이동 / GUO Weidong

중국 북경대학 역사학부 교수. 1986년 북경대학대학원 중국근현대사 전공 수료 후 북경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중국중외관계사연구회 이사, 북경시 역사학회 이사. 연구분야는 중외관계사, 중국근현대사, 주요 저서로는 『불평등조약과 근대중국』, 『중토기독(中土基督)』, 『전환—중기중영관계와 남경조약을 중심으로—』, 『중국근대특수교육사연구』, 『중외구약장 보편(清朝)』 등.

시오데 히로유키 / SHIODE Hiroyuki

1997년, 도쿄대학 교양학부 졸업. 2004년 도쿄대학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박사(학술). 현재 교토대학교 문학연구과 준교수. 연구분야는 일본근대사, 일본정치사. 주요

저서: 『岡倉天心と大川周明—「アジア」を考えた知識人たち』(山川出版社, 2011년), 『越境者の政治史—アジア太平洋における日本人の移民と植民—』(名古屋大学出版会, 2015년), 『公論と交際の東アジア近代』(編著, 東京大学出版会, 2016년)

한성민 / HAN Sungmin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 동국대학교 강사,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고, 현재 대전대학교 강사, 강의전담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로 재직 중. 주요 연구 논저로는 「개항 후 (1882~1894) 청국의 치외법권 행사와 조선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 12), 「을사조약 이후 한, 청 간 치외법권 연구 (1906~1910)」 『한국근현대사연구』 (2008. 9), 「일본정부의 안중근 재판 개입과 그 불법성」 『사학연구』 (2009. 12), 「구라치 테즈키치(倉知鐵吉)의 ‘韓國併合’ 계획 입안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010. 9), 「황실특파유학생의 동맹퇴교운동에 대한 일본의 대응」 『역사와 현실』 (2014. 9), 「제2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特使에 대한 일본의

대응」 『한일관계사연구』 (2015. 8), 「乙巳條約 이후 일본의 ‘韓國併合’ 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6. 8), 「일본정부의 ‘韓國併合’ 실행계획 수립 과정: 「구라치 案」과 「아키야마 案」의 비교를 중심으로」 『일본 역사연구』 (2018. 6), 「망명자 김옥균(金玉均)에 대한 일본 정부의 처우와 조선정책 (1884~1890)」 『역사와 현실』 (2018. 9) 등이 있다.

친 팡 / Qin Fang

수도사범대학역사학원준교수.

2005~2011, 미네소타대학, 박사 학위.

2002~2005, 남개대학 역사학원, 석사 학위.

1998~2002, 남개대학 역사학원, 학사 학위.

주요논문 :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 근대의 〈七出〉〈三不去〉 언론의 변천」 『婦女研究論叢』, 2018 년 12 월 제 6 호. (이 논문은 『人大複写新聞資料・婦女研究』 2019 년 제 2 호 에 전재.)

「만들어진 呂碧城: 청말 여성의 공중 이미지의 형성과 전파」 『南開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18 년 3 월제 2 호. (이 논문은 『歷史와 社會 (文摘)』 2018 년 6 월 제 2 호, 『人大複写新聞資料・婦女研究』 2018 년 8 월 제 4 호, 『新華文摘』 (인터넷版) 2018 년 제 14 호 등에 전재.) 「유포에서 가출로: 청말민초 여성의 궁경: 해방에 관한 언론의 형성과 실천」 『婦女研究論叢』, 2017 년 7 월 제 4 호. (이 논문은 『人大複写新聞資料・婦女研究』 2017 년 10 월 제 5 호, 『新華文摘』 (인터넷版) 2018 년 제 5 호, 남개부녀・성별사 학술포럼 (인터넷版) 에 전재.)

Co-authored with Emily Bruce, “Our Girls Have Grown Up in the Family”: Educating German and Chinese Girls in the Nineteenth Century, *Journal of Modern Chinese History*, vol. 1, 2016; Later the revised version was collected in *A History of the Girl: Formation, Education, and Identity*, edited by Mary O’Dowd and June Purvis, Palgrave Macmillan, 2018, pp. 103-122.

「근대 반전족 언론하의 시각과 차이: 19 세기 말 天津天足會를 중심으로」 『婦女研究論叢』, 2016 년 5 월 제 3 호. (이 논문은 『歷史記述에 있어서의 여성의 말 건축: 중국부녀/성별사연구발취』 (中國書籍出版社, 2017 년) 에 전재.)

成员名单

氏名 (ローマ字)	氏名 (日本語)	氏名 (韓国語)	氏名 (中国語)	所属 (韓国語)
発表者				
1 Okubo Takeharu	大久保 健晴	오쿠보 다케하루	大久保健晴	게이오의숙대학
2 Han Seunghoon	韓 承勳	한 승훈	韩承勳	고려대학교
3 Sun Qing	孫 青	쑤 청	孙青	북단대학
4 Okawa Makoto	大川 真	오카와 마코토	大川真	쥬오대학
5 Nam Kihyun	南 基玄	남 기현	南玄基	성균관대학교
6 Guo Weidong	郭 衛東	꾸어 웨이둥	郭卫东	북경대학
7 Shiode Hiroyuki	塩出 浩之	시오데 히로유키	盐出浩之	교토대학
8 Han Sungmin	韓 成敏	한 성민	韩成敏	대전대학교
8 Qin Fang	秦 方	친 팡	秦方	수도사범대학
実行委員/発表者				
10 Cho Kwang	趙 珧	조 광	赵 珧	국사편찬위원회
11 Mitani Hiroshi	三谷 博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피학원여자대학
12 Song Zhiyong	宋 志勇	송 지용	宋志勇	남개대학
実行委員				
13 Liu Jie	劉 傑	류 지에	刘杰	와세다대학
14 Mura Kazuaki	村 和明	무라 가즈아키	村和明	도쿄대학
15 Li Enmin	李 恩民	리 언민	李恩民	오비린대학
16 Xu Jingbo	徐 静波	쉬 징보	徐静波	북단대학
17 Peng Hao	彭 浩	펑 하오	彭浩	오사카시립대학
18 Kim Kyongtae	金 キョンテ	김 경태	金 Kyong tae	고려대학교
19 Kim Bumsu	金 範洙	김 범수	金范洙	도쿄학예대학
20 Nam Ki Jeong	南 基正	남 기정	南基正	서울대학교
21 Sun Junyue	孫 軍悦	쑤쑤위예	孙军悦	도쿄대학
22 Min Dongyup	閔 東晔	민 동엽	闵东晔	도쿄대학
23 Liang Yihua	梁 奕華	량 이후아	梁奕华	도쿄외국어대학
同時通訳				
24 Ding Li	丁 莉	정 리	丁莉	북경대학
25 Song Gang	宋 剛	송 강	宋刚	북경외국어대학
26 Jin Danshi	金 丹実	김 단실	金丹实	프리랜서
27 Lee Hyeri	李 恵利	이 헤리	李惠利	한국외국어대학
28 Ahn Younghee	安 ヨンヒ	안 영희	安暎姬	서울외국어대학대학원
29 Cai Lianchun	蔡 連春	차이 리엔춘	蔡连春	북경대학
招待討論者				
30 Aoyama Harutoshi	青山 治世	아오야마 하루토시	青山治世	아세아대학
31 Hirayama Noboru	平山 昇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升	규슈산업대학
32 Park Hanmin	朴 漢珉	박 한민	朴汉珉	동국대학교
33 Sun Weiguo	孫 衛国	쑤 웨이궈	孙卫国	남개대학
翻訳				
34 Piao Xian	朴 賢	박 현	朴贤	교토대학
35 Cho Guk	趙 国	조 국	赵国	서울대학교
36 Hong Yongil	洪 龍日	홍 용일	洪龙日	도쿄대학
37 Luo Feng	駱 豊	뤄 펑	骆丰	와세다대학
38 Hong Sungmin	洪 性珉	홍 성민	洪性珉	와세다대학
39 Cho Suil	趙 秀一	조 수일	赵秀一	동국대학교
40 Xie Fang	解 放	씨에 팡	解放	도쿄외국어대학
41 Li Kotetsu	李 鋼哲	리 코테츠	李刚哲	호쿠리쿠대학
42 Han Kyoungja	韓 京子	한 경자	韩京子	아오야마학원대학
レポート編集者				
43 Nagai Ayumi	長井 亜弓	나가이 아유미	长井亚弓	아쓰미재단
実行委員/スタッフ				
44 Imanishi Junko	今西 淳子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아쓰미재단
45 Tsunoda Eiichi	角田 英一	쓰노다 에이이치	角田英一	아쓰미재단
46 Honda Yasuko	本多 康子	혼다 야스코	本多康子	아쓰미재단

제 63 회 SGRA 포럼

제 4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예고집〉

편집·발행 (공익재단)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SGRA)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 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Email: aisf-office@aisf.or.jp

발행일: 2019 년 12 월 00 일

발행 책임자: 이마니시 준코(今西淳子)

한국어판 감수: 민동엽 (閔 東曄)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본지 기사에 대한 문의나 인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락주세요.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 Copying is Prohibited. For inquiries or quotes, please contact us.